

언론중재

2004년 봄호



특집

공인관련 보도의 법적 제문제

-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 연구
 -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판결의 경향
 - 공인의 반론권 행사에 관한 각국의 법제현황
- 판결동향/최근의 언론관계 판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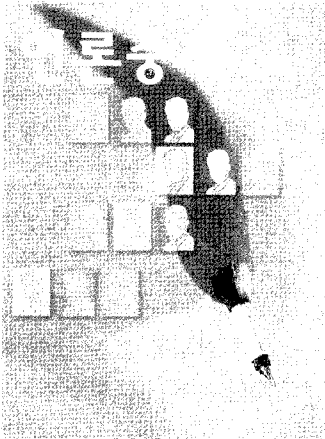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2004. 봄

차 례



계간/2004년 봄호 • 제24권 • 제1호/통권90호
 인쇄/2004년 3월 25일 • 발행/2004년 3월 30일
 등록/1981년10월14일 등록번호/바-692
 발행인/박영식 • 편집인/최정인
 인쇄인/이병식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397-3114, 3000, 3100
 FAX:397-3029, 3049, 3069
 www.pac.or.kr
 식자, 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주)제이디씨텍
 표지디자인/현춘수

특 집	공인관련 보도의 법적 제문제
	4 •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 연구 • 문재안
	22 •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판결의 경향 • 한위수
	40 • 공인의 반론권 행사에 관한 각국의 법제현황 • 박인수
판결동향	51 • 최근의 언론관계 판결 동향 • 성선제
기고논문/이론	63 •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장철익
통계보	76 • 2003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보도와 인권	102 • 언론보도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 김경호
위원칼럼	108 • 언론중재절차의 개선방안 • 조관형
해외동향	110
자 료	114 • 언론중재신청사례 126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146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156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고	160
위원의견	164
언론법제정현황	168
지상중	170 • On-Line 중재상담실

* 본지는 삼지윤리실정경쟁을 준수한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 연구

문 재 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
- 미국 인디애나 법대 박사(S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한국신문협회 정책기획자문위원
- 논문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간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 다수

1. 혼돈의 시대

최근 공인에 관한 명예훼손의 법리는 한마디로 혼돈이다. 법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현실을 먼저 살펴보자. 현직 대통령이 술선수범해서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데 대통령이라고 소송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한다.¹⁾ 정치인들은 비리 의혹이 터질 때마다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다. 기사 내용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오보라고 주장하고, 명예훼손소송을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언론에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큰 기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언론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현실의 혼란은 명예훼손 법리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명예훼손 법리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한 법리가 정착되어 있으면 소송을 줄이는 예방적 기능을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리는 기본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만, 그러한 보도가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위법성을 조각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²⁾

이러한 법리구조에 첫 번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즉 상당성을 고려하

1. 청와대 브리핑 제116호, "법 앞에 무엇이 두려운가", 2003. 8. 14. <<http://www.president.go.kr>> 참조.

2)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다. 또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제75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분상 형사상 위법성 조각사유는 진실성과 공익성이 분명한데, 민사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학설로는 언론보도에 진실성과 공공성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상 위법성 조각사유와 연계 보고 있다.

상당성이라는 기준이 존재하는 한
명예훼손 법리는 잠재적인 소송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해

기 시작한 때부터다. 대법원은 1988년 10월 11일 선고한 85다카29사건에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공공성(또는 공익성), 진실성 외에 상당성을 새로이 제시하고,³⁾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⁴⁾ 이 사건 이후 명예훼손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공공성, 진실성, 상당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⁵⁾

명예훼손적인 보도를 한 행위자에게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비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고하는 결과를 낳았다.⁶⁾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매체의 성격, 기사 성격, 정보원의 신뢰성, 진실확인의 용이성 및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⁷⁾ 결국 상당성이라는 기준이 존재하는 한 명예훼손 법리는 잠재적인 소송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며, 명예훼손의 시비는 법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1990년대 들어 명예훼손소송이 크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도 상당성

기준에 있다고 생각한다.

상당성 기준이 도입된 지 10년 정도 지난 1990년대 후반 명예훼손 법리는 또 한번의 변화를 맞게 된다. 소위 말하는 공인(公人)이론 논쟁이다. 이 이론은 설사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 보도의 피해자인 공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논리다. 공인이론은 상당성 논리와 궤를 달리하는 이론이다. 상당성 기준은 피고에게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접근하는데 반해 공인이론은 원고의 신분을 기준으로 공인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인의 소제기와 다르다는 접근방법을 취한다. 하지만 상당성 기준이나 공인이론은 모두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리지 말자는 생각에서는 같다. 즉, 일정한 허위 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격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사이에 조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법원은 공인이론을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차츰 태도의 변화를 보인다. 대법원은 1997년 9월 30일 선고한 97다24207 사건에서 처음 대법원에 제기된 공인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1998년 5월 8일 선고한 97다34563판결에서도 대법원은 “피

3) 이처럼 상당성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당성을 고의·과실을 조각하는 책임조각사유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박성영, <언론정보법연구>, 법문사, 2002, 238쪽 각주100. 이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견해이기도 하다. 最判 昭和 11(1936)년 6월 23일 판결.

4)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93.12),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3, 419-420쪽.

5) 전원열, <언론보도와 민사책임,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출판, 2002, 134쪽.

6) 공익성, 진실성 및 상당성의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박성영, 앞의 책, 242쪽; 한위수, 앞의 논문, 423, 431쪽.

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는 사정으로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드는 관례(96다36395; 98다24624; 2000다10208 등)가 많다. 하지만 상당성 기준은 피고가 진실성을 입증 못할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피해자(원고)의 사정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자가 공적(公的)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에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공인이론을 배척했다.

하지만 명예훼손소송에서 공인과 사인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 그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14일 선고한 96다17257 사건에서 범죄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가 공적인 인물이 아니면 그 신원을 명시하는 것이 공공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공인을 사인과 다르게 취급하기 시작했다. 소위 ‘범죄사건의 익명보도의 원칙’을 확립한 판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공인여부는 상당성의 고려대상이 아니라 공공성의 고려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공인에 대한 허위보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공인이론은 이 사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공인이론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6월 24일 선고된 97헌마265 사건에서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는 익명보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밖에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인이기 때문에

훼손되는 명예가 더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명예훼손소송에서 공직자의 승소율이 사인보다 월등히 높고, 인용되는 손해배상액도 사인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⁸⁾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한 공직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명예훼손소송에 의존하게 되고, 해당 언론사는 보도의 진실성 혹은 상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들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인에 관한 공적인 문제 제기가 공적인 공간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법정이라는 작은 공간으로 밀려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대법원도 뒤늦게나마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2년 1월 22일 이후 공인이론을 수용하는 듯한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다.⁹⁾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기에 이르렀다.¹⁰⁾

이러한 판결로 공인, 특히 그 중에서도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은 상당히 보호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혼돈의 시대는 마감하는 것일까. 이 논문은 미국에서 발달한 공인이론을 중심으로 왜 이러한 이론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같은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공인이론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은 공인의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지 비교 고찰함으로써 명예훼손 법리의

8)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의 승소율은 91.6%(12건 중 11건 승소)로 사인 75%, 유명인 67.6%, 기업체 66.6%, 일반단체 45.5%보다 높았다. 또 원고 1인당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도 공직자는 평균 약 5,400만원으로 일반 사인의 평균 1,613만원의 3배가 넘었다. 조준원, “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언론중재』, 2000년 가을, 47쪽.

9)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10)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 판결 참조.

뉴욕타임스 사건은 진실하지 않은 내용도
보호 받는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례라는데 의미가 있어

정착을 시도하고 있다.

II. 미국에서의 공인이론 발전

1. 뉴욕타임스 사건과 허위 보도의 보호

현행 미국 언론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잘못된 내용의 표현, 즉 허위 보도도 보호한다는 데 있다. 비록 표현된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이익이 그로 인한 개인의 명예 침해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보도는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그 시발점이 된 판결이 1964년에 선고된 뉴욕타임스 사건¹¹⁾이다.

뉴욕타임스 사건은 진실하지 않은 내용도 보호 받는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례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 사건에서 미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제1조를 명예훼손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미 대법원은 “자유롭게 토론하다 보면 잘못된 표현은 불가피하며, 표현의 자유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숨 고르는 공간(breathing space)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내용의 표현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¹²⁾

미 대법원의 주된 관심은 사람들에게 발언 내용의 진실을 입증하라고 강요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처벌이 두려워 발언을 스스로 자제(self-

control)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에 있었다. 사람들이 말을 아껴게 되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 대법원의 시각에서 보면, 잘못된 내용의 표현은 위축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불가피하게 참아야 할 대상인 것이다.

미 대법원은 “공직자가 자기 직무 행위와 관련된 명예훼손적인 허위보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보도가 현실적 악의에 기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헌법의 요구”라고 판시했다.¹³⁾ 여기서 현실적 악의란 잘못된 표현임을 알았거나, 잘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는데도 무분별하게 이를 무시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덧붙여 미 대법원은 원고에게 현실적 악의를 설득력 있게 명백히(with convincing clarity) 증명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뉴욕타임스 사건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공무원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절대적 면책을 주장하는 동조의견(concurring opinion)을 냈다.¹⁴⁾

하지만 현실적 악의 기준에서도 오보는 거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 그 후 미 대법원은 자기 보도 내용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정도(with the high degree of awareness of their probable falsity)라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¹⁵⁾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란 공표되는 내용의

11)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12) Id. at 271, 272.

13) Id. at 279, 280.

14) 블랙 대법관(Justice Black)과 더글러스 대법관(Justice Douglas)은 절대적인 언론의 자유 옹호론자로서 이번 사건에서도 절대적인 면책을 주장했다.

15) Garrison v. Louisiana, 379 U.S. 64 (1964).

진실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때(serious doubts as to the truth of his publication)라고 판시했다.¹⁶⁾

2. 유형별 접근방법과 공인 이론의 도입

가. 유형별 접근 방법과 이익의 비교형량 방법

공인 이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공인 이론과 그 모태인 현실적 악의 기준은 유형별 접근방법(categorical approach)에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사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이익의 비교형량(balancing) 분석이다.¹⁷⁾ 이 분석 방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서 얻는 사회적 이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방식이다. 명예훼손소송에서도 사안별로 비교형량(ad hoc balancing)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사용돼 왔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어떤 종류의 표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거부될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유형별 접근방법은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미 대법원은 이 방법도 자주 활용한다. 일정한 종류의 표현은 언론의 자유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채플린스키 판결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¹⁸⁾ 미 대법원은 “아주 한정적이지만 어떤 종류의 표현은 이를 억제하고 처벌하더라도 전혀 헌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음란(the lewd and

obscene), 신성모독(the profane), 명예훼손(the libelous), 모욕적 또는 도발적 언어(the insulting or ‘fighting’ words), 즉 말을 하기만 하면 바로 상해를 초래하거나 평화를 깨뜨리는 경향이 있는 표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종류의 표현은 사상을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가치도 질서와 도덕을 지키려는 사회적 이익과 비교하면 아주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뉴욕타임스 판결도 유형적 접근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명예훼손 사건은 원래 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판결로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보도에서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오보의 유형이 ‘모든 명예훼손사건’에서 ‘허위임을 알았거나 무모할 정도로 경시해서 발생한 명예훼손사건’으로 대폭 축소됐다.¹⁹⁾ 이 판결은 유형별 접근방법을 통해 헌법의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서 얻는 사회적 이익과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사안별로 비교형량(ad hoc balancing)하는 방법은 뉴욕타임스 사건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²⁰⁾ 뉴욕타임스 판결의 성과는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교형량 분석이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원칙 등의 중요성을 경감 또는 폐기시킨 데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²¹⁾

하지만 뉴욕타임스 판결도 언론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두 가지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정의적 비교형량(definitional balancing)을 한 경우라고 평가한 학자도 있다.²²⁾ 현

16) *St. Amant v. Thompson*, 390 U.S. 727 (1968).

17) Marc A. Franklin et al., *Mass Media Law Cases and Materials*, 57 (1987).

18) *Chaplinsky v. New Hampshire*, 315 U.S. 568 (1942).

19) Kathleen M. Sullivan & Gerald Gunther, *Constitutional Law*, 1032 (2001).

20) *Id.*

21) Harry Kalven, *The New York Times Case: A Note on ‘The Central Meaning of the First Amendment.’* 1964 *Sup. Ct. Rev.* 191.

22) Melville Nimmer, *‘The Right to Speak from Times to Time: First Amendment Theory Applied to Libel and Misapplied to Privacy.’* 56 *Calif. L.Rev.* 335 (1968).

미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적인 일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사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에도
현실적 악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형이란 것도 사실은 사안별 비교형량을 할 경우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한데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유형별 접근 방법이라 부르던, 정의적 비교형량 방법이라 부르던 간에 이런 방법은 사안별 비교형량 방법보다 예측가능성이 높다.

나. 공인 이론의 태동

뉴욕타임스 판결 이후 미 대법원은 그 적용범위를 놓고 한 동안 논쟁을 벌였다. 논쟁은 그 표현된 내용이 공공 이익(public interest) 또는 공적인 관심사(public concern)인지 여부로 정하자는 내용기준 접근방식(content-based approach)²³⁾과 원고의 신분을 기준으로 나누자는 신분기준 접근방식(status-based approach)으로 나타났다. 이 논의의 이면에는 비교형량 방법과 유형별 접근방법의 장단점 비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공공 이익 또는 공적인 관심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안별로 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되는 반면 신분을 기준으로 하면 유형화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 사건에서 미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범위를 '공무원이 자기의 공무에 대한 비판에 대항해서 낸 소송'(an action brought by a public official against critics of his official conduct)의 피고라고 분명히 밝혔다.²⁴⁾ 하지만 판결

문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자주 언급되면서 잘못된 내용의 표현이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공무에 대한 비판'이라는 내용보다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많았다.

뉴욕타임스 판결 후 8개월이 지났을 때쯤 선고된 제리슨 사건에서 미 대법원은 '공무에 대한 비판'이라는 요건을 사실상 제거했다. 미 대법원은 비판 내용이 공무원의 업무 적합성(fitness for office)에 관련된 것이면 아부 내용이나 편잡다고 본 것이다.²⁵⁾ 따라서 미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적인 일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사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에도 현실적 악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일반인에게는 사적인 문제로 간주될 만한 사안도 공무원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판결 이후 공무원에 관한 보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던 간에 그의 업무 적합성을 검증한다는 명분 아래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다. 공적인 관심사 기준과 공적인 인물 기준

(1) 로젠블롬 사건²⁶⁾

로젠블롬 사건에서 미 대법원은 또 한번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공인이론은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 원고 로젠블롬씨는 공무원도, 공인도 아닌 평범한 일반인이었다. 피고인 지역 라디오 방

23) 명예훼손소송에서 미 대법원은 '공공 이익'(public interest)과 '공적인 관심사'(public concern)를 의미 구별 없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로젠블롬 사건에서 복수 의견을 집필한 브래던 대법관이 삼은 면에서 두 단어를 병진할 수 있다. Rosenbloom v. Metromedia, Inc., 403 U.S. 29, 44 n. 12 (1971).

24) 376 U.S. at 256.

25) 376 U.S. at 256.

26) Rosenbloom v. Metromedia, Inc., 403 U.S. 29 (1971).

송국은 로젠블룸씨가 음란서적을 판매하다 체포됐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로젠블룸씨가 판매한 책은 음란물이 아니었다. 브레넨 대법관은 보도된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이기만 하면 원고가 저명한 사람이던 무명이던 상관없이 뉴욕타임스의 현실적 악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 대법원은 로젠블룸 사건에서 잘못된 표현의 보호대상을 판별하는 기준을 '원고의 신분'에서 '표현된 내용'으로 전환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하렌과 마샬 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마샬 대법관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하나는 사람의 일은 모두 잠재적으로 공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사용하면 사인의 명예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적인 관심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법원은 어떤 표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사건별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처럼 불명확한 기준은 위축효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브레넨 대법관과 마샬 대법관 모두 언론의 자유를 주창했지만 서로 강조하는 내용이 달랐다. 브레넨 대법관은 공적인 관심사라는 포괄적인 기준을 통해서 지금 발생한 오보로 인한 언론사의 책임을 경감시키는데 주력했다. 반면 마샬 대법관은 현재의 판결이 앞으로 언론의 자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을 더 기울였던 것이다.

(2) 거츠 사건²⁷⁾

로젠블룸 사건 3년 뒤, 마샬 대법관의 견해는 소수의견에서 다수의견으로 바뀌게 됐다. 거츠라는 변호사가 자기를 공산주의자라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동안

의 논쟁을 일단락 짓고,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훼손 사이의 새로운 조화점을 찾았다.

미 대법원은 오보가 모두 보호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잘못된 사상(false ideas)과 잘못된 표현(false statements)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대법원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는 잘못된 사상이란 없다. 의견(opinion)은 아무리 해롭더라도 다른 사상에 의해서 수정돼야지 법관이나 배심원의 양심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사실을 잘못 기술한 표현(false statements of fact)에는 헌법적 가치가 없다. 의도적인 거짓말이나 부주의한 실수는 공적인 문제(public issue)를 제지 받지 않고, 건전하고, 광범위하게 토론하는 데 있어서의 사회적 이익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²⁸⁾

그러나 미 대법원이 잘못된 표현을 모두 보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불가피한 잘못은 헌법의 보호 아래 둔 것이다. 그 기준으로 미 대법원은 로젠블룸 사건에서와 달리 공적인 관심사를 제시하지 않았다. 공적인 관심사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표현이 지나치게 보호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미 대법원은 그 대신 공무원이나 공적인 인물에 관련된 잘못된 표현만을 헌법의 보호 대상에 넣었다. 파웰 대법관이 쓴 다수의견은 로젠블룸 판결에서 마샬 대법관이 소수 의견으로 지적한 문제를 또 다시 언급했다. 공표된 내용이 공공 이익(public interest)²⁹⁾에 관련된 문제인지 아닌지를 사안에 따라(ad hoc basis) 결정하면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저해한다고 본 것이다.

파웰 대법관은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자력구제(self-help)의 유부다. 공무원이나 공인은 보통

27)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28) Id., at 339.

29) 미국 명예훼손 관례에서 공익(public interest)과 공적인 관심사(public concern)는 구별 없이 혼용되고 있다.

Copyright © 2014 by Korea Law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Korea Law Institute.

미 대법원은 거츠 판결로서 현실적 악의기준이 무한정 확장되는데 제동을 걸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사인보다 잘못된 보도에 대응하기 쉽다고 본 것이다. 둘째는 위험의 수용(assumption of risk)이다. 공인은 사인보다 공적인 관심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욕구가 더 크고 또 그럴 능력도 더 있기 때문에 공적인 비판을 더 받을 수밖에 없고 명예훼손에도 그만큼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 이 두 번째 정당성의 근거다. 공인은 자발적으로 공적인 관심사에 자기를 내놓은 만큼 그로 인해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역시 자기가 부담해야 하지만, 사인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공인보다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거츠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원고의 신분을 기준으로 현실적 악의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둘째, 거츠 판결로서 미 대법원은 현실적 악의기준이 무한정 확장되는데 제동을 걸었다. 앞서 본 것처럼 로젠블룸 사건에서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 낸 명예훼손소송에서 보도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라는 이유로 현실적 악의기준을 적용,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거츠 사건에서는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현실적 악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셋째, 미 대법원은 추정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presumed damages or punitive damages)가 배심원에 의해서 남용되는 데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그 전까지 배심원들은 구체적인 손해액수에 대한 입증 없이도 거액의 배상을 결정하는 일이 잦았다. 미 대법원은 거츠 사건에서 원고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피해액(actual injury)에 한정된다고 판결했다.

(3) 던앤브라스트리트 사건³⁰⁾

거츠 판결에서 폐기된 로젠블룸 판결은 11년 뒤 던앤브라스트리트 사건에서 그 의미가 다시 살아났다. 이 사건은 신용평가회사인 던앤브라스트리트가 한 건설회사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고객들에게 알려줘서 발생한 사건이다. 미 대법원은 여기에서 거츠 판결을 재해석하고 공적인 관심사(public concern) 기준을 다시 도입했다.

과웰 대법관은 거츠 사건이 공적인 관심사가 아닌 내용을 다룬 것은 아니라며, 공적인 관심사는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수정 헌법 제1조는 정치나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무제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과웰 대법관은 하지만 순수하게 사적인 문제를 언급한 보도는 수정 헌법 제1조가 것처럼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원고가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추정적 손해와 징벌적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던앤브라스트리트 판결의 요지다.

던앤브라스트리트 판결로 뉴욕타임스 판결 이후 발전해오던 공인 이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됐다.

첫째, 원고가 공무원 또는 공인이면 상대방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설득력 있게 명쾌하게(convincing clarity) 입증할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뉴욕타임스 및 거츠 판결). 공무원일 경우 업무 적

30)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 Inc., 472 U.S. 749 (1985).

합성과 관련된 내용이면 사적인 문제도 현실적 악의 기준이 적용된다(게리슨 판결). 결국 공무원에 관한 한 거의 모든 오보가 헌법적 보호를 받는 셈이다. 공인일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형에 따라 다르다.

둘째, 원고가 사인이고 보도된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일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원고는 상대방의 과실(negligence)을 입증하면 실제 피해액(actual injury)을 배상 받을 수 있다(거츠 판결 및 헵스 판결³¹). 하지만 원고가 추정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거츠 판결).

셋째, 원고가 사인이고 보도된 내용도 사적인 것에 불과할 경우, 원고는 상대방의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보상적 손해와 징벌적 손해(compensatory and punitive damages)를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다(던앤브라스트리트 판결). 따라서 보통법(common law)상의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 rule) 원칙이 적용된다.

III. 영미법계 국가에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1. 영국

가. 명예훼손 법리

영국은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로 분류되지만, 명예훼손에 있어서 미국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명예훼손 법리는 뉴욕타임스 판결 이전에 미국이 수용하고 있었던 보통법(common law)상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 rule)에 기초하고 있다. 즉, 원고는 피고가 자기에 대한(concerning the plaintiff) 명예훼손적인 표현(defamatory statement)을 공표하였다(publish)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피고의 과실(negligence)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원고는 또 표현이 거짓임을 입증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자기가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 손해의 발생은 추정된다.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자기의 발언이 면책특권(privilege)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결국 영국의 명예훼손 법리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명예의 보호를 더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 각국의 변호사들은 런던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를 선호하여 런던은 '세계 명예훼손소송의 수도(libel capital of the world)'라고 불리기도 한다.³²⁾

피고 측의 항변(defence)으로 진실(truth)의 입증이 있다. 여기서 진실이란 상당부분 진실(substantial truth)을 의미하며, 지적된 모든 사실이 각각 진실하지 않더라도 주된 내용이 진실하면 충분하다고 한다.³³⁾ 그러나 진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피고측 항변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정직한 논평(honest comment on a matter of public interest)'이다. 이는 흔히 '공정한 논평(fair

31) Philadelphia Newspapers, Inc. v. Hepps, 475 U.S. 767 (1986). 이 판결에서 미 대법원은 사인이 공적인 문제에 대한 신문 보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 보도가 잘못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사가 위촉돼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기를 꺼려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2) Sarah Lyall, A Libel Law That Usually Favors Plaintiffs Sends a Chill Through the British Press, N.Y. TIMES, July 7, 1997, at D7.

33) 홍임석, "영국에서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적 문제", 재판자료 제93집 외국사법연수논집[21], 법원도서관, 2001, 216-217쪽.

미국의 뉴욕타임스 판결은
영국 명예훼손 법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comment)'이라고도 불린다. 논평은 공평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공평성(fairness)은 어떤 사람이 문제의 의견을 정직하게 발표했느냐의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한다.³⁴⁾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악의(malice)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정직한 논평의 항변은 배척된다. 한편 정직한 논평의 항변은 의견(comment)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관한 주장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공표된 내용이 진실이 아닐 경우에도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당사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보다 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다. 영국에서는 그러한 예외로 크게 두 가지를 두고 있다. 하나는 절대적 면책특권(absolute privilege)이고 또 하나는 제한적 면책특권(qualified privilege)이다. 전자에 해당되는 경우 원고는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의 발언이 악의(malice)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입증하면 항변이 실패한다. 영국에서는 오랜 동안 판례가 축적되면서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유형(category)이 형성되었다. 또한 보통법상의 많은 면책특권은 성문화되기도 하였다.

전통적으로 영국에서 절대적 면책특권의 항변으로 인정되는 것은 (1)의회의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주장이나 진술 (2)사법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법관, 배심원, 변호인, 증인의 진술과 발언 (3)사법절차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동시 보도 (4)정부관리 상호

간에 의무수행의 하나로 이루어진 진술이나 의사표현 등이고, 제한적 면책특권의 항변으로 인정되는 것은 (1)사법절차의 보도에 관한 보통법상의 면책특권 (2)의회절차의 보도에 관한 보통법상의 면책특권 (3)공공의 관심사 보도에 관한 성문법상의 면책특권 (4)공격에 대한 반박의 권리 등이다.³⁵⁾

나. 정치적 발언(Political Speech)에 관한 면책특권의 인정 논쟁

미국의 뉴욕타임스 사건은 영국 명예훼손 법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직자가 자기 직무행위와 관련된 명예훼손적인 허위보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가 잘못된 보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무모하게 이를 무시하여 보도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명백히(with convincing clarity) 입증해야 한다는 뉴욕타임스 판결의 취지를 좇아 제한적 면책특권을 영국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었다. 1980년대 중반이후 원고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보편화되자 영국의 명예훼손 법리가 명예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쳐 정당한 탐사보도와 공공정책 및 공직자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뉴욕타임스 판결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³⁶⁾

하지만 1991년 닐(Neil L.J.)이 위원장인 대법원절차위원회(Supreme Court Procedure Committee)는

34) Reynolds v. Times Newspapers Limited and Others [1999] 3 W.L.R. 1010 (H. L.).

35) 홍입석, 앞의 논문, 225-234쪽.

36) Douglas W. Vick & Linda Macpherson, An Opportunity Lost: The United Kingdom's Failed Reform of Defamation Law, 19 Fed. Comm. L.J. 621, 622 (1997).

‘명예훼손의 실무와 절차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Practice and Procedure in Defamation)’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한적 면책특권을 도입하는데 반대했다.³⁷⁾ 또한 1952년 이후 42년만에 개정된 1996년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은 제한적 면책특권의 유형을 열거하였지만, 공인이론은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 판결 및 공인이론을 도입하여 제한적 면책특권의 항변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계속 이어진다. 1993년 *Derbyshire v. Times Newspapers Ltd.* 사건³⁸⁾은 명예훼손 법리의 최근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은 *Derbyshire*라는 영국 지방에서 시의회(municipal council)가 신분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영국의 최고법원인 귀족원(House of Lords)은 미국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기준을 영국법에 도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에서 현실적 악의기준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⁹⁾ 귀족원의 결론은 정부 및 행정기능에 비판적인 기사에 대하여 지방기관(local authority)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명예를 중시하던 영국 법원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축효과를 우려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뉴욕타임스 판결의 영향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⁴⁰⁾ 다만 공인이론과 같이 제한적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귀족원(House of Lords)이 1999년 내린 *Reynolds v. Times Newspapers* 판결은 영국 명예훼손 법리의 최근 동요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이 제정되면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영국의 명예훼손 법리는 종전의 엄격 책임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⁴¹⁾ 이는 명예훼손 법리에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고찰이 필요함을 인식한 것이라고 하겠다.⁴²⁾ 레이놀즈 판결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를 적절히 조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영국 법원이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난다.

레이놀즈 사건의 쟁점은 정치적 표현(political speech)이라는 제한적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 것이냐에 있었다. 아일랜드 수상이었던 레이놀즈(Albert Reynolds)는 1994년 11월 17일 사임을 발표한 후 “잘 가시오, 고리대금업자여(Goodbye gombeen man)”라는 제목으로 그의 사임을 둘러싼 이야기를 보도한 선데이 타임스(Sunday Times)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선데이타임스는 정부나 정치적 문제에 관한 보도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한적 면책특권(generic qualified privilege)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발언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만

37) *Reynolds v. Times Newspapers Ltd.*

38) [1993] A.C. 531.

39) Marie-France Major, *Comparative Analogies: Sullivan Visits the Commonwealth*, 10 *Ind. Int'l & Comp. L. Rev.* 17, 26 (1999).

40) *Id.* at 27.

41) Sasanna Frederick Fischer, *Rethinking Sullivan: New Approaches in Australia, New Zealand, and England*, 31 *Geo. Wash. Int'l L. Rev.* 101, 142 (2002).

42) 영국은 불분헌법국가이기 때문에 단일의 헌법질은 없지만,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는 헌법불로서 다그나 카르타(1215), 권리장전(1689) 등을 갖고 있다. 인권법도 헌법불에 속한다.

호주 대법원은 미국 뉴욕타임스 판결의 현실적 악의기준을 수용하지 않아

들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귀족원은 새로운 형태의 제한적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 비교형량 하는 접근방법(case-by-case balancing approach)을 지지하였다.

레이놀즈 판결이 정치적 발언에 대하여 제한적 면책특권을 전혀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정치적 발언이라는 유형에 해당되면 당연히 정치적 발언에 해당되어 제한적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유형적 접근방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을 뿐이다. 보통법상 제한적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보호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면 그 내용을 굳이 정치적 발언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영국 법원의 판단이다.⁴³⁾ 따라서 어떠한 발언이 공중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제한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가는 법원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 레이놀즈 판결의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명예훼손 법리는 (1)보통법상 엄격책임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2)뉴욕타임스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기준은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3)미국의 공인이론과 같은 유형적 접근도 채택되어 있지 않다. 다만,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발언 등 공공의 이익이 되는 표현에도 제한적 면책특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 호주, 뉴질랜드

호주와 뉴질랜드는 영국과 비슷한 명예훼손 법리를 갖고 있었다. 즉, 보통법상 엄격책임주의를 쫓아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면책특권과 제한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발언(political speech)은 제한적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포괄적 보호(blanket protection)를 하고 있지 않았다. 뉴질랜드의 경우 1977년 명예훼손법 개정에 관한 맥키 위원회(McKay Committee on Defamation)가 언론사에 대한 제한적 면책특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권고했으나 1992년 뉴질랜드 명예훼손법은 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다.⁴⁴⁾ 이 법안에서 인정된 제한적 면책특권의 내용은 1996년 영국의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명예훼손 법리에 헌법적 고찰, 즉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두 나라의 법원 관례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호주의 경우 1994년 Theophanous v. Herald & Weekly Times Ltd. 사건⁴⁵⁾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미국 뉴욕타임스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호주 대법원(High Court)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호주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피고에게 자기 행위의 합리성(reasonable)을 입증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43) Fischer, supra note 00, at 167.

44) Id. at 125.

45) 182 C.L.R. 101.

피고는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몰랐고,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은 채 무모하게 보도한 것이 아니며, 보도는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⁴⁶⁾

이어 1997년 호주 대법원은 *Lange v.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⁴⁷⁾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정부나 정치적 문제에 관한 정보, 의견, 논쟁의 확산은 제한적 면책특권의 대상이라고 판결하기에 이른다. 이 경우 피고는 자기 행동의 합리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뉴질랜드도 1990년대 들어 새로운 환경변화를 맞게 된다. 1990년 권리장전(*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이 제정되면서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성문화되고,⁴⁸⁾ 법원은 이 권리에 따라 명예훼손 법리를 어떻게 수정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뉴질랜드 항소법원(*Court of Appeal*)⁴⁹⁾은 1998년 *Lange v. Atkinson* 사건⁵⁰⁾에서 대표성과 책임성을 지닌 정부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발언(*statements that directly concern the functioning of representative and responsible government*)이 널리 퍼졌을 경우 제한적 면책특권의 항변을 인정했다. 이러한 면책특권의 항변은 남용될 경우에만 배척된다. 즉, 보통법상 원고가 피고의 악의(*malice*)를 입증하면 제한적 면책특권이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치적 발언에 대하여 제한적 면책특권을 인정하여 유형적 접근방식(*categorical*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보호 유형의 범위를 호주보다 좁게 인정하고 있으며, 호주와 달리 피고 행위의 합리성(*reasonable conduct*)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⁵¹⁾ 두 나라 모두 뉴욕타임스의 현실적 악의기준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3. 캐나다, 인도

캐나다 대법원은 1995년 *Hill v. Church of Scientology of Toronto* 사건⁵²⁾에서 현실적 악의기준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피고는 명예훼손에 관한 보통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악의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자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나다 대법원은 오히려 뉴욕타임스 사건이후 미국의 명예훼손법이 학계와 법조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인도 대법원은 1994년 *Rajagopal v. State of Tamil Nadu* 사건⁵³⁾에서 공직 활동에 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대하여 공무원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가 개인적 적대감(*personal animosity*)으로 또는 무모할 정도로 진실을 경시(*reckless disregard of the truth*)하여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국

46) *Id.* at 137.

47) 189 C.L.R. 520.

48) 권리장전 14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권리를 갖는다. 여기에는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형태의 정보 및 의견을 구하고, 수용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다(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th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opinions of any kind in any form)"라고 규정하고 있다.

49) 뉴질랜드의 최고법원은 형식상 추밀원(*Privy Council*)이다. 하지만 추밀원은 엄격하게 말하면 법원이 아니고, 여왕에 대한 자문기구이다. 항소법원의 관례는 하급법원을 기속한다.

50) 3 N.Z.L.R. 421.

51) Fischer, *supra* note 41, at 106.

52) 126 D.L.R. (4th) 129.

53) 6 S.C.C. 632, *Reynolds v. Times Newspapers Ltd.*에서 재인용.

최근 일본에서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소송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늘고 있어

뉴욕타임스 판결과 같은 내용이다.

IV. 대륙법계 국가에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1. 일본

가. 명예훼손 법리

일본의 명예훼손 법리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일본 형법 제230조의2 제1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형법이 제310조에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공공성과 진실성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그러나 진실성만을 강조하면 명예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1969년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잘못 믿고, 그렇게 잘못 믿은 것이 확실한 자료, 근거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의 고의가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⁵⁴⁾ 우리나라 대법원이 진실성 대신 상당성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법리는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에 관한 법리에 그대로 적용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민사상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있어서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후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결국 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⁵⁵⁾ 결국 일본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문제가 될 경우 피고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공익성, 진실성 내지 상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현실적 악의의 법리 도입 논쟁

최근 일본에서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소송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늘고 있다. 1995년까지 100만엔 정도, 1998년까지 150만엔 정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⁵⁶⁾ 최근에는 수백만엔에서 1,000만엔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다.⁵⁷⁾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언론사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한 비판 등이 손해배상 고액화의 원인으로 지적된다.⁵⁸⁾ 하지만 고액의 위자료를 받

54) 最大判 昭和44(1969)년 6월 25일 판결.

55) 最判 昭和41(1966)년 6월 23일 판결.

56) 이재진, “언론관련명예훼손소송 추이 비교”, 『언론중재』, 2002년 여름, 45쪽.

57) 石崎正博, “名譽毀損訴訟における損害賠償高額化と表現の自由”, 《法律時報》 74卷9号, 107.

58) 같은 논문.

는 원고가 정치가, 프로 야구선수, 여배우, 기타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유명인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액의 위자료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 사건의 현실적 악의기준은 이러한 손해배상 고액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원고가 공인일 경우에는 표현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다.⁵⁹⁾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소수설에 불과하다.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면책되는 기존의 명예훼손법리와 상충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택하고 있다. 일본 오오사카 고등법원은 1988년 현실적 악의이론을 도입하자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개인의 명예 보호를 소홀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간의 균형을 잃게 되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⁶⁰⁾ 도쿄 지방법원도 1996년 “보도내용의 진실성 또는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던 것에 대한 상당성은 위법성 내지 책임의 조각사유이며, 진실성 또는 상당성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최고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는 이유로 현실적 악의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⁶¹⁾

공인에게 고액의 위자료가 지급되면서 표현의 자

유가 위축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적인 존재 또는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표현이거나 보도의 경우에는 진실성 또는 상당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⁶²⁾ 판례상으로도 형법 제230조의2 제1항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을 매개로 하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보다 면책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⁶³⁾ 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기본적으로 사안별 접근방법이기 때문에 공인을 하나의 유형으로 보아 사인과 달리 취급하는 법리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2. 독일

가. 명예훼손 범위

전통적으로 독일은 인격의 보호를 공법, 그 중에서도 형법의 문제로 보았다.⁶⁴⁾ 독일 형법 제186조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187조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87a조는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그의 공적 생활상의 지위와 관련된 동지에서 행해지고 그의 공적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기에 충분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행위자가 표현이 진실임을 입증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⁶⁵⁾ 이 밖에 형법 제193조는 ‘정당한 이익의 옹호’⁶⁶⁾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익의 옹호’는

59) 松井茂記, “變貌する名譽毀損法と表現の自由”, 『スリスト』 1222호 (2002.5.), 92쪽.

60) 大阪高裁 平成1(1988)년 5월 26일 판결.

61) 東京地裁 平成8(1996)년 1월 31일 판결.

62) 石崎出博, 앞의 논문, 112쪽.

63) 한위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현실적 악의 원칙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창간호(한국언론법학회, 2002), 172쪽.

64) 독일의 명예훼손 범리에 대하여는 주로 손원선, “한국 독일 민법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한독법학』 11권(한독법학회, 2003), 433쪽 이하를 참조하였다.

65) 형법 제186조는 공표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처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6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문적 예술적 영업적 업적에 대한 비판, 권리의 행사나 방위 또는 정당한 이익의 옹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판적 의견의 발표,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징계 및 견책, 공무원의 업무상 고발 또는 비평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의견발표의 형식이나 의견발표가 행하여진 상황에 비추어 모욕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독일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할 때 미국 법원과 달리 이익형량을 해

옹호하려는 정당한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이익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법익 내지 이익형량의 문제가 된다.⁶⁷⁾ 한편, 독일 민법의 불법행위 중심조항인 제 823조 제1항은 인격적 보호법익으로 생명, 신체, 건강, 자유만 언급하고 명예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형벌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⁶⁸⁾ 형법상 정당한 이익옹호의 원칙은 민사상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⁶⁹⁾

한편 1949년 제정된 독일 기본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자유로운 의견발표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이러한 권리가 일반법률의 조항,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의 규정,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독일 법원은 명예권을 헌법질서의 최고가치규정인 제1조(인간의 존엄성 보호)에서 도출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은 헌법이 보호하는 두 개의 법익이 충돌하는 것이 된다.

나. 이익형량과 공인의 문제

독일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련의 원칙을 발전시켰으나, 그 방식은 미국 법원과 확연히 다르다.⁷⁰⁾ 독일 법원은 이익형량(Güterabwägung)을 하며, 이 때 표현의 내용을 평가한다. 문제의 표현이 공적이고, 공적 대화(public discourse)에 기여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그 만큼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받는다. 독일 법원은 또 표현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기를 따진다. 문제의 표현이 객관적으로 대중이 크게 관심을 갖는 문제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이익형량에 관건이 된다.⁷¹⁾

반면 미국 법원은 이익형량의 방법이 위축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이익형량은 포기한 상태다.⁷²⁾ 그 대신 공인이론과 같은 유형적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또 표현 내용이나, 행위자의 표현 동기에 따라 보호범위를 달리하지 않는다.

독일 법원이 이익형량을 할 때 고려하는 원칙으로 미국의 공인이론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반격의 원칙(Gegenschlag)'이 있다. 이는 Schmid/Spiegel 판결⁷³⁾에서 형성된 것으로, 가치를 저하하는 평가에 대하여 스스로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그것에 대한 신랄한 반격이 그의 명예를 저하시킨 경우에도 그 신랄한 반격을 원칙적으로 인용하여야만 한다는 내용이다.⁷⁴⁾ 미국에서 공인은 스스로 공적 논쟁의 장

67) 윤철홍,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연구 -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2년 여름호, 54쪽.

68) 손원선, 앞의 논문, 449쪽.

69) 윤철홍, 앞의 논문, 54쪽.

70) 독일 법원과 미국 법원의 차이에 대하여는 Edward J. Eberle, "Public Discourse in Contemporary Germany", 47 Case W. Res. 797 (1997) 참조.

71) BVerfGE 12, 113, 129 (v. 25. 01. 1961). (손원선, 앞의 논문, 458쪽에서 재인용).

72) Eberle, supra note 103, at 825.

73) BVerfGE 12, 113.

74) BVerfGE, 12, 113, 129f. (v. 25. 01. 1961). (손원선, 앞의 논문, 459쪽에서 재인용).

으로 뛰어 들었으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예훼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격의 원칙은 공인을 사인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독일에서도 정치적 논쟁에 참여하고 이로써 일반의 주의를 끈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는 비판을 감수하여야 하며, 이는 정치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⁷⁵⁾

그러나 독일에서 공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이익형량의 한 고려요소로 보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달한 공인이론과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 독일과 미국, 두 나라 모두 공적 논쟁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권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데 있어서는 같으나, 독일은 사안별로 이익형량을 하는 방법을 고수하는데 반해 미국은 이익형량이 위축효과를 초래할 위험성 때문에 공인이론이라는 유형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V. 예측가능성 높은 판결을 위하여

미국에서 발달한 공인 이론은 분명 세계 각국의 명예훼손 법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순수한 사법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명예훼손법이 헌법의 틀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뉴욕타임스 판례와 그 후 전개된 공인 이론의 영향이라고

하겠다. 또 공인(public figure)에 대하여, 또는 그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로 인하여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킨 것도 공인 이론의 공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공인 이론은 문제가 많은 이론이다. 영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현실적 악의 기준과 공인 이론을 도입하려고 검토하였다가 포기한 것이 이론이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명예훼손법 개정을 논의할 때면 그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공인 이론이다. 실패작이라는 혹평도 나온다.⁷⁶⁾ 공인을 기준으로 현실적 악의를 적용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⁷⁷⁾

그 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공인에 대한 오보가 지나치게 보호되면서 개인의 명예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 언론법은 명예가 훼손된 사람보다 훼손한 사람의 권리를 더 보호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⁷⁸⁾ 둘째로는 거짓 정보가 판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일반인에게도 손해라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공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공적인 관심사를 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한 판사는 "공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해파리를 벽에 못 박는 것과 같다."고 평가할 정도로 공인은 정형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⁷⁹⁾

하지만 공인 이론이 누구나 알기 쉽게 유형별로

75) 송원선, 앞의 논문, 100쪽.

76) Edward T. Ferno, Public Figure Libel: The Premium on Ignorance and the Race to the Bottom, 4 S. Cal. Interdis. L.J. 253 (1993).

77) David A. Anderson, Is Libel Law Worth Reforming?, 140 U. Pa. L. Rev. 487 (1991).

78) Oscar S. Gray,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As it Affects Defamation Law, 38 Am. J. Comp. L. 463, 465 (1990).

79) *Rosinova v. Playboy Enterprise, Inc.*, 411 F. Supp. 410, 443 (S.D. Ga. 1976), aff'd, 580 F.2d 859 (5th Cir. 1978).

Copyright © 2011 by the Korea Institute of Law and Society, Inc.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Korea Institute of Law and Society, Inc.

개인의 명예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보장 사이의
균형을 위해서는 예측가능성 있는
명예훼손 법리의 확립이 필요

오보의 보호 범위를 정하려고 한 본래 취지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법계 국가들이 뉴욕타임스 판례의 도입을 놓고 고심했던 근본 이유는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 것인가에 있었다. 영국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치적 발언에 대하여 제한적 면책특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신분을 중심으로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유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공인 이론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반면 일본과 독일의 명예훼손 법리는 아직도 관사들의 이익형량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를 저울질할 경우 개별적인 재판 결과는 정의에 부합할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보호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사회에 확산된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이런 위축현상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 기능을 약화시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장애가 된다. 개인의 명예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통해서보다는 예측가능성 있는 명예훼손 법리의 확립을 통해서 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판결의 경향

한 위 수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법학석사) 졸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법대(LL.M) 졸
-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 논문: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 "판결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 등 다수

I. 서론

근래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등 공인¹⁾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언론기관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부정확한 보도를 하는 데도 그 원인의 하나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인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훼손소송을 이용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²⁾

그리하여, 종래의 명예훼손 법리로는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공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새로이 정립함으로써 공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을 종래보다 훨씬 더 엄격히 하는 듯한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 그 구체적 내용과 의미, 나아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의 전개

1. 개 관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형법과 민법에 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의 처벌 및 민사상

1) 공인(public person)이란 그 개념이나 범위가 명확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공직자(public officer)와 공적 인물(public figure) 즉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유하거나 어떤 공적인 논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논쟁의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자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2) 한국에서 권력과 특권, 명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판자나 반대파를 침묵시키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소송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으로는, Youm,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Law: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South Korea", 38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23, 125 (2002) 참조.

명예훼손 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가 급격히 진전된
1980년대 중반 이후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 그러나 실무상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 특히 언론의 보도가 문제되어 명예훼손 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유신 등 이른바 권위주의 통치체제가 약화되고 민주화가 급격히 진전된 198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사인들 간의 감정적 언사가 형사고소로 이어져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으나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특히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하거나 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 내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책임 여부가 논란된 적은 거의 없었다.

이는 권위주의 통치 아래서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되어 언론기관으로서도 정부 내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문제가 된 경우에도 명예훼손소송 등 법률적으로 대처하기보다 1970년대의 이른바 '동아일보광고사태'나 1980년대의 '보도지침사건'에서 보듯 비법률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명예훼손의 법리가 본격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상황도 성숙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형법 및 민법의 관련 규정과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가.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이란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³⁾

한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

나. 그러므로,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는 "공연(公然)히 사실(事實)을 적시(揭示)하여 사람의 명예(名譽)를 훼손(毀損)"함으로써 성립한다(위 형법 제307조 제1항 참조). 민사상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함으로써 성립된다(민법 제750조 참조).

한편,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표제 아래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표자가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공표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이하, 이러한 법리를 '진실증명의 법리'라 한다).

3) 또한, 제308조는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이란 표제 아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제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표제 아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또한,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위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즉,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란 사실의 적시 및 이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고, 적시되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은 과실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과실은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인데도 진실이라고 잘못 믿은 과실 또는 공표한 사실의 진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아니라, 예컨대 어떤 사람이 형사재판에서 '부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오기(誤記)하는 등 표시상의 과실이나, 예컨대 종업원의 비리나 불륜관계에 대한 허위제보서 등을 잘못 보관하여 타인에게 누출되는 경우 등 공표과정상의 과실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3.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장 - 이른바 '상당성의 법리'의 전개

그런데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 '진실증명의 법리'는 불명확하고 또한 불충분하였다. 즉 형법에 규정된 이 법리가 민사상의 명예훼손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지가 불분명하였고, 나아가 공표

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은 아니지만 행위자는 이를 진실이라고 잘못 알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즉 허위의 사실을 진실이라고 잘못 알고 공표한 경우도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것인가, 허위사실을 진실하다고 안 것은 행위자의 잘못이므로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울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만일 전자에 의한다면 허위사실의 공표로 명예를 훼손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명예훼손이 횡행할 우려가 있고 후자를 따른다면 진실하다고 믿고 이를 공표한 행위자에게 너무 가혹하며 진실한 사실조차 진실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이를 공표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사항에 대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988. 10. 11. 선고 85다카21 판결⁵⁾에서, "형사상으로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밑줄은 필자 첨가)고 판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⁶⁾

즉 위 판결은 진실증명의 법리가 민사상의 명예훼손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진실증명의 법리를 확장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실하다고 잘못 알고 공표한 경우에 단순히 진실하다고 믿은 것만으로

5) 집합판결, 1: 81188, 132. 이 판결은 절간잡지를 발간하는 피고가 변호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목자 수기를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문장의 일부만을 수정하여 그대로 게재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6) 위 판결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우리가 민주정치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각급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권을 침해할 경우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이러한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헌법 제9조 후단)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헌법 제21조 제1항)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목과 방법을 성해야 할 것이다."

**'상당성의 법리'는 특히 언론기관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를 지녀**

는 면책되지 아니하지만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상의 처벌이나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그 후 수차례의 대법원 판결⁷⁾에서 확인되어 현재는 확립된 판례이론이 되었다.⁸⁾

이처럼,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판례이론(이하, '상당성의 법리'라 한다)은 특히 언론기관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즉 형법상으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만이 있을 뿐인데 대법원은 판례이론으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면하는 범위를 확장한 것인바, 언론기관은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성질상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기사를 실게 되기 마련이고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거나 본인을 취재하기보다 제3자를 취재한 결과를 기사로 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인데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면하게 되고 따라서 그만큼 언론의 활동공간이 넓어지는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4.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에 대한
수용 논의**

상당성의 법리가 언론기관의 공인에 대한 비판의 폭을 대폭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역시 충분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대법원판례에서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면책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았다.

먼저, 위 상당성의 법리는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행위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⁹⁾ 상당성이 인정되는

7) 대법원 196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 (공1964. 194); 대법원 1966. 5. 28. 선고 91다3328 판결 (공1966하. 3153); 대법원 1969. 8. 20. 선고 91다29228 판결 (공1969하. 2776); 대법원 1967. 8. 29. 선고 97다19755 판결 (공1967하. 2882); 대법원 1967. 9. 30. 선고 97다21207 판결 (공1967하. 3279);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1,37531 판결 (집5011민. 13; 공2002상. 522) 등.
8) 한편,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아니라 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공1998상. 1572; 대법원 1995. 6. 15. 선고 91다35718 판결, 공1995. 2496 등)가 있으나,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은 공표되는 사실의 진실 여부에 대한 고의, 과실이 아니라 사실의 공표 및 그로 인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에 대한 고의, 과실이므로 이를 위법성 조각의 문제로 보는 다수판례의 입장이 옳다고 보여진다.
9)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공1998하. 2766);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6208 판결 (공2001상. 167) 특히 언론기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하여 보도할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기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언론기관으로서의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63.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공1963상. 330).

범위를 좁게 보았다.¹⁰⁾

이러한 판례경향에 따라 공인에 대한 비판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1964년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¹¹⁾ 이래 확립된 이른바 '현실적 악의의 법리'(actual malice rule), 즉 '公人이 명예훼손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인지의 여부를 무분별하게 무시하고(with knowledge that it is false or with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it was false or not) 이를 공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위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실무상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먼저,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¹²⁾은, 한 지방 일간지에서 부면장인 원고가 그 소유 감나무 밑에 있는 창고를 공장으로 임대하면서 적법한 신고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사슴 축사를 지어 사용함에 있어 역시 적법한 신고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위 창고는 공장으로 쓰이지는 않았고 위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에 건축법 소정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측 기자가 그 진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면사무소 직원의 제보만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사안에서, "언론의 특성상 공직자의 윤리 및

비위 사실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특별히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거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¹³⁾은, 국내 각 일간지와 방송사인 피고의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고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 언론활동을 하여 원고에 대하여 방송드라마에서 비판적으로 묘사하였으나 위 방송대본의 근거가 된 각 자료는 내용의 진실함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드라마의 방송에 앞서 원고나 위 저서의 저자들을 만나 의견을 묻거나 달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아니한 사안에서, 원고가 공적인 인물로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방어할 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드라마 방송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고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하여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하였음을 원고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언론기관에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현실적인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명예에 대한 관념이 미국과는 달라 명예훼손에 대한 감수의 정도를 달리하고,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언론자유에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언

10) 대법원 판결로 상당성이 인정된 사례로는, 수사검사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요약 정리한 자료에 기하여 보도한 사안(대법원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공1999상, 330),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보도로서 여러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소위원회 조사보고서, 그동안의 언론보도 등에 기초하여 '백범 김구 암살사건'에 관련한 방송드라마(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공1998상, 865), 모 대학 총학생회장의 변호사사건에 국가정보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는 기사(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등 몇 건에 불과하였다.

11) 376 U.S. 254 (1964).

12) 공1997하, 3279.

13) 공1998상, 1575.

1997년을 기점으로 공인에 의한 제소가
전체 명예훼손소송의 3분의 2를 차지해

론의 자유가 명예 등 인격권과 대등한 지위로서 이익형량에 의하여 허용여부가 결정되며,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이른바 '증거개시(discovery)' 제도가 없어 원고측에서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실적 악의의 법리'는 미국 자체에서도 비판이 있어 개혁논의가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채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공인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부터 구제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인에 대한 무책임한 보도를 부추겨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¹⁴⁾ 위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론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공인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의 제기를 더욱 고무시킨 결과가 되었다. 즉 1997년을 기점으로 공인에 의한 제소가 전체 명예훼손소송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원고의 신분도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검사, 군 장성, 도지사, 전직 국가정보원장, 전직 장관, 경찰관 등 거의 모든 공직자를 망라하고 있고,¹⁵⁾ 심지어는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기관까지 명예훼손소송을 제기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¹⁶⁾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¹⁷⁾

III. 공인관련 명예훼손에 대한 최근 판례의 검토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대법원은 2002년부터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분야에서 새로운 법리를 전개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으므로 대표적 판결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1. 민노총 사건¹⁸⁾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¹⁹⁾

가. 사실의 개요²⁰⁾

피고가 발행하는 월간 한국노동단 1997년 2월호에는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라는 제목 아래 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불법단체, 불법불순세력으로서 계급투쟁으로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를 전복하는 활동을

1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위수,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문제제기와 명예훼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1권(2002), 636-639면 참조.

15)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II> (법문사, 2002), 140-141면; 배금자,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언론중재』 2002년 여름호, 22-23면 참조.

16)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일보사가 대한매일신보사의 기사를 문제삼은 서울지방법원 2001. 4. 11. 선고 99가합90928 판결, 중앙일보가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문제삼은, 서울고등법원 2002. 10. 10. 선고 2001나49885 판결이다.

17) 대표적인 것으로, 김민중,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언론중재』 2000년 여름호, 32면. 한편,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명예훼손법리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현실적 악의의 법리'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松井茂記, "變貌する名譽毀損法と表現の自由", 『ズリスト』 1222호 (2002, 5), 92면 참조.

18) 사건의 이름은 필자가 편의상 붙인 것이다. 이하 다른 사건의 이름도 마찬가지다.

19) 공2002상, 522.

20) 판시사항에 관련된 부분만 요약정리 한다. 이하 다른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하여 북한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위 기사의 근거로 든 모 수사기관의 정보도 그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명칭, 취재경위, 이 사건 각 기사와 관련된 해당 수사자료를 피고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다.

나. 판시내용

(1) 대법원은 먼저 공적인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의 일반론으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²¹⁾

(나)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²²⁾

(2) 이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위 기사 중 원고 민노총의 투쟁 방법을 “공산계릴라식 빨치산 전투”라고 표현한 부분²³⁾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가) 원고 민노총이 벌인 총파업투쟁의 양태 및 강도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체제를 유지 수호하려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원고 민노총의 현실투쟁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체제를 존중·유지하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 원고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원고가 노동운동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정치투쟁에 뛰어 들으로써 정치적 논평을 자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

21) 나아가 대법원은,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협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2) 대법원은, 그 이유로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23) 이 부분은 원고 민노총의 투쟁방법, 투쟁과정에서 나온 과격한 구호 등을 참작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그 비유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여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

고 민노총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위와 같은 의혹의 제기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한다.

(나) “북한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 민노총의 그와 같은 노동운동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익 되게 하는 운동이라는 주관적인 평가를 ‘노동당운동’에 비유한 과장표현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정도의 과장표현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다. 판결의 의의²⁴⁾

(1) 이 판결의 큰 의의는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있어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의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는 데 있다.²⁵⁾

즉, 그동안 대법원은 원고가 공인인가 사인인가 여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에 있어 ‘공익에 관한 것’ 또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에 있어서의 하나의 고려요소로 참작해왔을 뿐이지만, 이 판결을 계기로 공인인가 사인인가의 여부는 공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별개의, 대등한 고려요소로서 그 지위가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대법원이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

유 원칙상 공공의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하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또한 이 판결은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의혹제기에 있어서는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사인과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즉, 공인에 대하여는 사인과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처럼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한다거나 입증책임 자체를 원고측에게 전환시키지는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입증해야 할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의 부담만을 완화하는 것으로 공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와 공인의 명예보호라는 충돌되는 두 이익의 조화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결국 우리 대법원이 ‘현실적 악의의 법리’의 수용을 다시금 거부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적어도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의혹제기’라는 분야에서만큼은 자유로운 비판의 영역이 훨씬 넓어졌고, 나아가 앞으로 공적 존재에 관한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입증의 부담을 완화

24)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김병준, “공적 존재·공적 관계와 명예훼손책임”, 『저스티스』 75호(2003. 10), 145면 이하; 문재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법조』 551호(2002. 8), 210면 이하; 차형근, “공적 인물과 명예훼손”, 『관례연구』 16집(상)(2002), 89면 이하; 한위수,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문제제기와 명예훼손”, 『법사재판의 쟁문제』 제11권(2002), 611-643면 등 참조.

25) 이러한 취지는 굳이여 나온 대법원 2003. 1. 21. 선고 2000다37617 판결(공2003상, 688)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판결 역시 원간 한국노동단체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 단체가 전체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공헌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위협을 주며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고소 등 폭력적인 위협을 하고 있으며 재벌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약점을 미끼로 해서 돈을 끌어 쓴다는 말도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한 것이다(다만, 내용의 공공성은 인정되거나 진실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함으로써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KBS프로듀서 사건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²⁶⁾

가. 사실의 개요

KBS는 1993. 5.부터 68회에 걸쳐 “다큐멘터리극장”을 방영하였는데 원고는 1994. 1. 28.자 “대통령에 도전한다”와 1994. 6. 11.자 “한국전쟁 누가 일으켰는가”를 포함한 위 다큐멘터리 극장의 책임 프로듀서로서 그 제작을 총괄 지휘하였다. 피고가 발행하는 한국논단 1998년 3월호는 “빨갱이는 선. 경찰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 및 “누가 움직이는가. 빨갱이는 선. 경찰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좌익세력이 점차 확산되어 나가면서 TV에까지 침투하여 TV가 좌익세력의 선전도구가 되었다고 개탄하고, 공영방송인 KBS는 그 제작 방영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며 이북의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극장’에 대하여, ‘주사파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이라는 소제목으로 “김일성의 정치행태로 볼 때 이 증언(여운형의 암살범은 김일성이 직접 보냈다는 내용의 증언)은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정반대로 왜곡하여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여운

형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하는 말도 되지 않는 저질의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내보냈다. 한 때 1TV의 다큐멘터리극장을 통해 시청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것이 당시 이 프로를 연출했던 남○○ PD의 자의적 해석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주사파이다. 또 남○○ PD는 이 프로를 통해 동학란을 북한의 혁명 사관에 입각하여 분석하기도 했고, 해방 후의 대구 10·1폭동, 제주 4·3폭동 등 남로당이 주도한 폭동들을 인민항쟁으로 미화시켰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심은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자²⁷⁾, 피고가 상고하였다.

나. 판시내용

(1) 대법원은 먼저, 일반론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가)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정치적 이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위장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

26) 광2003상. 425.

27) 원심은,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위법성조각 항변에 대하여 위 기사의 내용과 목적에 공공성이 있음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작한 위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충분한 고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역사를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사파의 역사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Copyright © 2013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ll rights reserved. http://www.snulaw.com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의 제기에 있어서는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

(나)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나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나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론을 봉쇄하여서는 안된다.

(2) 나아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가) 위 프로그램의 내용과 위 기사 중 프로그램 내용의 분석부분을 대비해보면, 그 중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 및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음은 사실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역사해석이 종래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그 방영 당시로 보아 진보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보수우파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절대적 수호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혹시나 그 가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앞에서 본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취지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이념논쟁에 있어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볼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정도의 허물을 들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다만, 위 프로그램의 내용에 나타난 원고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과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원고를 주사과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고 그 부분이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성에 관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 사실적지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결의 의의²⁸⁾

이 판결은 앞서본 민노총 판결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좌와 우의 이념문제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참언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이념문제의 공방에 있어서는 오신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진실성의 판단에 있어서는도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한 표현의

28)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박철, "표현의 자유에 의한 명예훼손의 제한과 관용", 『언론과 법』 제2호(2003), 333면 이하 참조.

특 집 / 공인관련 보도의 법적 제문제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허용되는 오류나 과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단순히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이라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아쉬우나 그 내용은 앞으로의 관례의 집적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3. 전북도지사 사건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²⁹⁾

가. 사실의 개요

전라북도 도지사인 원고는 1999. 3. 7. 사택에 있던 금품을 도난당한 뒤 다음날 양천경찰서에 현금 3,500만원, 보석류 5점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 후 검거된 위 금품의 절도범인은 수감 중이던 1999. 4. 8.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에게 원고의 사택에서 현금, 보석류뿐만 아니라 미화 12만 달러도 훔쳤는데 수사과정에서 위 사실이 축소, 은폐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진상조사를 위하여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구치소로 파견하여 그를 면담하도록 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나라당은 1999. 4. 15. 위 절도범인을 면담한 직후 대변인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고의 사택에서 현금, 보석류 외에 미화 12만 달러를 절취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12만 달러는 절취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내용의 자백을

강요하여 수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였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한나라당 대변인인 피고는 1999. 4. 16. 대변인 브리핑 형식으로, "부패의 현장을 더 이상 은폐, 축소하지 마라"는 제목 아래 "범인은 대통령의 경제특보인 전북지사의 서울 아파트를 도둑질 해 거액의 현금과 미화만 12만 달러를 훔쳤다. 도덕성이 완전파괴된 정권은 국민 앞에 이 사건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검찰 또한 절도범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사택에 미화 12만 달러를 보관하다가 도난당하였음에도 수사관서에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³⁰⁾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자, 피고가 상고하였다.

나. 판시내용

(1) 대법원은 먼저 일반론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29) 공2003하, 1683.

30) 원심은 그 이유로서, 위 절도범인이 원고의 사택에서 미화 12만 달러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진술의 배경이나 동기가 불분명하며 기타 진술의 주제, 경위나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의심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나 언론기관의 취재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진위 여부가 드러나기를 기다리거나 피고 스스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진실성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위 성명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돼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된다.

(나) 피고의 성명은 정당 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바,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도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나아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피고는 위 절도범인이 한나라당 지구당으로 보낸 진정서의 내용만을 믿고서 위 성명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소속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들이 구치소에서 그를 만나서 그가 진술하는 내용을 직접 듣고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서 위 성명을 발표하였고, 비록 원고가 미화 12만 달러를 도난당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절도범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단정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 사안에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위 성명의 발표에 위법성을 선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

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앞서본 민노총 사건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공적 존재인 경우에는 사적 존재인 경우와는 명예훼손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재확인하면서도,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기본원칙을 새롭게 제시하고, 나아가 정당대변인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의 보장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이 판결은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사적인 영역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할 부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되며, 나아가 정당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밝힌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민노총 사건이나 KBS프로듀서 사건의 판결이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하여 심사기준의 차이를 이른바 상당성의 법리와 연결을 시킨 반면, 이 판결은 상당성의 법리와 관련성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거나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실시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별개의 면책요건으로 볼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판결은 결국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의혹의 제기에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를 위법성판단의 고려요소로 보고 있는 점에서³¹⁾,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의 제기 및 정당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파악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은 ‘악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나쁜 의도’ 또는 ‘해치려는 의도’ 등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미국의 뉴욕타임즈 판결에서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와는 그 의미가 다르므로 이를 들어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범리를 도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정치보복기소주장 사건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³²⁾

가. 사실의 개요

한나라당의 ‘4·13부정선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변호사로서 한나라당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 특위의 특별위원으로 2000. 4. 13에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한나라당이 제기한 20건에 가까운 선거소송과 재정신청 등을 맡아 소송 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는 2000. 7. 3. 10:30경 한나라당사의 3층 기자실에서 ‘검찰이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구로을구에서 당선된 장○○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의 담당변호사인 자신을 전격기소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정치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에 피고를 기소한 부장검사인 원고는 위 회견 내용 중 ‘공안전담 검사인 원고가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재정신청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미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던 횡령고소 사건을 즉시 재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정치적 보복기소를 하였다’는 부분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의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사실은 진실이지만, 원고의 위 횡령고소사건에 관한 기소가 이른바 전격기소라거나 정치적 보복기소라는 증거가 없고, 피고는 법률가로서 자신에 대한 위 횡령고소 사건과 관련한 항고사건과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처리과정 및 수사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왜곡된 평가를 하여 기자회견을 한 이상 위 기자회견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자. 피고가 상고하였다.

나. 판시내용

(1) 대법원은 일반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31) 이 판결의 끝부분에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 사안에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 성명의 발표에 위법성을 선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2) 공2003하, 1770.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사적인 영역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나) 또한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선거법위반 사건 등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2)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는 2000. 6. 12.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한 직후인 같은 달 17. 경부터 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는 1999. 1.경에도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고 그 세무조사도 위 피고가 그 당시의 정치적 사건을 변론한 직후에 실시되었고, 피고가 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한 직후부터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다시 시기적으로 근접한 2000. 6. 28. 원고에 의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위 기자회견에서 적시한 내용은 그 기초적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데다가 공직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를 기소한 것이 위 재정신청을 제기한 데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위 민노총 사건의 판시를 그대로 이어

받아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원칙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사적인 영역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할 부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판결은 위 전북도지사 사건의 판결에 이어 보호되지 아니하는 표현의 유형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들고 있어 앞으로 이에의 해당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할 것이다.

5. 대전법조비리보도 사건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³³⁾

가. 사실의 개요

‘피고 문화방송’은 1999. 1. 7. 21:00경 방송된 ‘MBC

33) 공2003하, 1770.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대전 이○○ 변호사 수입상부 폭로'를 처음 보도한 이래 같은 해 2. 7.경까지 매일 21:00경에 방송되는 같은 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칭 '대전 이○○ 변호사 수입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대전 지역 검사들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보도 당시 대전 지역에 근무하거나 직전에 근무한 검사들이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심은, 위 방송 중 대전 지역 검사들이 이○○ 변호사의 불법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떡값 명목으로 한번에 천만원이 건네졌다는 부분 등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책임을 인정하자 피고가 상고하였다.

나. 판시내용

(1) 대법원은 먼저 일반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나)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정령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

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2) 나아가 대법원은 문제된 방송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① 대전 지역 검사들이 이○○ 변호사의 불법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떡값 명목으로 한번에 천만원이 건네졌다는 부분은, 대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대전 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검사들이 이○○ 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혹의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②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검사들 중에는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과연 그러한 경우에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대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건을 소개한 검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방송에 적시된 사실은 그 주요 부분이 진실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③ 이○○ 변호사가 전관예우의 풍토에서 학맥을 동원하여 검찰을 상대로 집요하게 청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었다는 내용의 방송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 전관예우나 이○○ 변호사의 청탁에 영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암시나 의혹의 제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국민과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암시나 의혹의 제기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

우리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면책되는 범위를 훨씬 넓게 인정하려는
추세에 있어

④ 이○○ 변호사가 매달 수천만원씩 인출하여 대전 지역의 현직 검사와 판사들 중 일부에게 송금하거나 떡값 명목으로 건네주고 수시로 향응을 베풀었다는 방송과 이○○ 변호사가 대전 지역의 검사들에게 유명 화가의 미술작품을 선물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방송부분은 위 대검찰청의 수사결과 발표문에도 이○○ 변호사가 검사들 일부에게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허구의 사실이라 할 수는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을 참작하면 위 방송 역시 위법성이 없다.

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위 빈노총 사건의 판시를 그대로 이어 받아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하고, 또한 위 전북도지사 사건이나 정치보복기소 주장 사건의 판시와 같이 공직자의 도덕성·정령성이나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그것이 악의적

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이 판결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위 ① 금품수수의혹 부분)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피고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거나(위 ③ 사건의 부당처리 의혹 부분) 완전히 허구라고 할 수 없으나 과장이 있는 경우(위 ④ 금품수수의혹 부분)에도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을 참작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한 부분은 종래 위법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실시해오던 관례태도에 비교해보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 과연 상당성의 법리와 별개의 면책사유로 발전해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³¹⁾

IV. 최근 판례의 평가와 전망

1. 새로운 판례에 대한 평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31) 그밖에도 이 판결은 “이러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상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복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한위수, “집단명예훼손소송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1998년 여름호, 57면 이하 참조.

손에서 면책되는 범위를 훨씬 넓게 인정하려는 추세에 있다.

비록,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처럼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전반에 적용되는 성립요건의 강화나 입증책임의 전환에는 이르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특별한 유형의 표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어 종전보다 훨씬 넓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즉, (1)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의 제기 에 있어서는 상당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주어야 하고(위 민노총 사건), (2) 특히 좌와 우의 이념문제에 관하여는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선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며(KBS프로듀서사건), (3) 정당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되어야 하고(전북도지사 사건), (4)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또는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전북도지사 사건, 정치보복기소주장 사건, 대전법조비리보도 사건)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1) 공인의 정치적 이념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위장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2) 좌와 우의 이념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며, (3)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또는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4)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도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종전의 명예훼손 법리가 공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위축시킨 점이 없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³⁵⁾ 또한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법원의 판결을 전부 파기하면서 새로운 심사기준을 제시한 점에서도 공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폭을 확대하려는 대법원의 강한 의지와 선도성이 돋보인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이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의 제기라는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전형적인 정치적 언론의 유형에서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하여 공직자의 도덕성 그리고 공직자의 업무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제기라는 유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심사기준의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온 점도 흥미롭다.

다만, 대법원의 새로운 심사기준으로서 예컨대 "타방의 기본입장 왜곡", "어느 정도 수사적인 과장표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등으로 지극히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할 뿐이어서 언론종사자에게 현실적인 지침으로 작용하기에는 어

35) 한편,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자유로운 표현과 공개된 공적 토론에 대한 가치를 공감하고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소통과정 속에서 진실과 도덕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위 KBS프로듀서사건의 판결은 "법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고 이성이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이상과 노력이 반영된 판결이라는 평가(박철, 앞의 글, 379면)가 있다.

정치적 언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소송으로서가
아니라 또다른 정치적 언론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려운 점이 아쉽다고 할 것이나 이는 앞으로 판례의 집적으로 구체화되리라 기대된다.

2. 앞으로의 전망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앞으로도 새로운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적용할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나아가 대전법조비리사건 판결처럼 앞에서 제시된 새로운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사례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정치적 이념논쟁이나 정당 대변인의 논평 등 정치적 표현은 최대한 보장되고 이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언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소송으로서가 아니라 또다른 정치적 언론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일 것이다.

또한 공인의 도덕성이나 업무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하여는 그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진실성의 확인을 위한 노력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만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³⁶⁾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위 전복도지사 사건의 판결³⁷⁾에서 한 다음과 같은 판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종래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그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의혹의 전위를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도 수사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짐으로써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 아쉬움이 있었던 일이 없지 않았고 바로 이러한 경우에 정당이나 언론의 역할이 필요함은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다. □

36) 일본에서도, 縣議員이 시효를 이용하여 탈세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그 보도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완전한 증거가 없지만 의혹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새로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호소하기 위하여 이를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 표명한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한 판례(東京高裁 2002. 5. 23. 판결, 判例時報 1798호 81면)가 있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和田眞一의 평석(判例評論 534호 19면, 判例時報 1821호 181면)을 참조.

37)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공2003하, 1683).

공인의 반론권 행사에 관한 각국의 법제현황

박 인 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영남대학교 법대 졸, 대학원(법학석사) 졸
- 프랑스Paris2대학(법학박사) 졸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프랑스 Paris1대학 초빙교수
- 논문: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와 문제점" 외 다수

1. 서론

반론권의 개념은 1995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가 반론보도청구권을 명시하기 이전에도 학설·판례를 통하여 정정보도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동 법률에 의한 반론권의 법률적 차원에서 구명은 향후 반론권 행사의 활성화를 예견하는 것이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건수 중 반론보도청구건수가 40% 정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

또한 1995년 정간행물법 제16조를 개정하면서 제7항을 신설하여 반론보도청구권자의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인반론권을 명시하고, 중재의 이들 주체에 의한 반론권 행사에서의 실무상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반론권의 주체가 국가기관 등의 공인으로 확대된 이

후, 1995년까지는 매년 2 내지 3건 정도에 불과하던 국가기관에 의한 중재신청건수도 1996년 이후에는 괄목할만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2001년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2003년에는 무려 164건 정도에 달하여 가히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²⁾

2003년에 나타난 국가기관에 의한 중재신청건수의 폭발적 증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오보와의 전쟁' 선포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부의 '언론불신'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언론불신이 배경이 되어 정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중재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공인의 중재신청 남발은 일반시민이 보다 손쉽게 특정보도에 대한 반론과 정정보도를 청구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배려한 언론중재의 기본취지를 훨씬 넘어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등 국

1) 언론중재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 511건의 중재신청건수 중 반론보도청구건수가 201건으로 전체의 39.3%에 해당하며, 정정보도청구건수는 307건으로 60.1%에 달한다.

2) 1996년 이후 2003년까지의 국가기관에 의한 중재신청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각각 13건·4건·18건·12건·17건이었으나, 2001년에는 18건 2002년에는 22건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프랑스에서 적용되고 있는
반론권은 1881년 '출판자유법' 제13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

가기관이 반론권을 남용한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기관 등과 같은 공인이 반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게 된다.

따라서 공인의 반론권 행사와 관련한 프랑스·독일·미국의 법제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공인반론권 제도가 가지는 법적 의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프랑스의 반론권과 공인정정권

프랑스는 반론권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제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론권의 주체와 내용 등의 면에서도 다른 외국의 제도와 뚜렷이 구별된다.³⁾

프랑스는 1822년 3월 25일 출판자유법 제11조에서 모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소유자 또는 편집자는 피해자로부터 반론이 있을 때에는 반론의 수리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만일 3일 이내에 발행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호에 무료로 반론을 게재할 것을 규정하여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하였다. 1822년 프랑스 출판자유법은 프랑스 혁명기의 국민의회의원이었던 뉘로르(Dulaure)가 1800년에 제안하였던 반론권법안을 토대로 하여 제정한 것이었으며, 뉘로르 법안은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에 의하여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제가 폐지되자 언론이 무절제한 비방과 개인적 인신공격의 도구로 남용되었기 때문에, 사상과 의견의 다양성을 회복하고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에 의해 공격대상이 된 자에게 개인적 권리로서 반론권(droit de réponse)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었다. 즉, 프랑스의 반론권 개념의 발생은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반론권 이외에도 국가기관 등의 공인에 의한 정정권을 인정하여 정부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불식하고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증대하고자 공인정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프랑스 법제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1822년 제정된 프랑스 출판자유법에 의한 반론권은 반론의 대상이 되는 보도기사의 종류와 피해발생의 유무, 반론으로부터의 이익에 제한 없이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지명 또는 지시된 자에게 인정하는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반론권의 이러한 성격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반론권은 1881년 7월 29일의 출판자유법(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제13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1881년의 출판자유법은 1822년 출판자유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게재방법과 제재형식이 부가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 2000년 9월 19일 법률명령(ordonnance) 2000-916에 의해 1881년 출판자유법 규정이 다소 개정되었으나, 개정 내용은 벌칙규정에서의 벌금화폐 단위가 프랑에서 유로로 변경된 정도이므로 반론권의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

3) 프랑스의 반론권에 대하여는 J.J. Biolay, Droit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J.Delmas et Cie, 1989, pp.89-93 ; E. Derieux, Le droit de réponse dans les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 Petites Affiches, 18 mai 1988 p. 4 ; C. Goude, Le droit de réponse à la radio et à la télévision : D.S. 1975, chr.XXXIII ; 박윤희, 『프랑스에 있어서의 반론권』, 『언론중재』 1995, 봄, pp. 47-70 ; 언론중재위원회, 『프랑스반론권해설 1, 2, 3』, 『언론중재』 1989, 겨울-1990, 여름호 참조.

4) 줄고,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와 문제점』, 『형평과 정의』 제11집, 1997, 1, 대구지방변호사회, pp. 45-46.

다고 할 것이다.

프랑스 반론권의 내용은 반론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반론청구인의 범위가 대단히 광범하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반론권의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문이나 방송의 사실적 주장에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논평이나 의견, 학술, 서평 등 모든 가치판단 기사나 영상에 대하여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 반론권의 주체와 공인

프랑스의 경우 신문과 정기간행물 등과 같은 인쇄매체에 대한 반론권의 주체와 방송에 대한 반론권의 주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공인에 대하여서도 개인으로서의 반론권 주체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공인반론권으로 부르기로 한다.

1) 신문 등에서의 반론권 주체

프랑스에서는 반론권의 주체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출판자유법 제13조 제1항이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서 지명 또는 지시된 자로 규정함으로써 본인의 성명이나 상호·명칭 등이 명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제나 본문 또는 문맥을 통하여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자이면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명 또는 지시된 자로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자연인⁵⁾

· 법인⁶⁾· 공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⁷⁾

기사에서 지명되거나 지시되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반론을 제기해 놓은 자가 절차진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확실상 대립이 있어 왔으나, 판례의 축적에 의하여 현재는 상속인의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단순한 역사적 평가에 대하여는 직접관계인의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⁸⁾ 또한 일반적으로 의사와 경찰의 반론권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⁹⁾

공인반론권은 공무원,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등 공인으로서의 직책을 가진 자연인에 의해 행사되어지는 반론권을 말하며, 이 경우 사적 개인으로 거명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공인으로서의 직책이 보도대상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¹⁰⁾ 반론권에서는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인보다 더 많은 권리를 부여받고 있지 않으며, 사인과 동등한 차원에서의 권리만 보장받고 있다. 이는 반론권은 단지 사적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공인의 명성이나 업무·직책에 의한 권한은 출판자유법 제12조의 공인정정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방송반론권의 주체

인쇄매체에 대한 반론권은 1822년 출판자유법에 의해 폭넓게 인정되어 왔으나, 방송에 대한 반론권은 프랑스에서도 1972년 7월 3일 프랑스방송협회법(loi du Office de Radio et Télévision Française :

5) 자연인 동명이인의 경우에도 독자들이 보아 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본인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6) 법인의 경우, 법인격의 유무는 문제되지 아니하나 반론권의 목적이 영리적·상업적인 경우는 반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닌 생산품의 경우에도 반론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8) Cass. crim. 28 decembre 1933, 1933 Bull. crim. n° 251, p.479.

9) 박운희, 전계논문, p. 49.

10) H. Bin 외, 『프랑스 반론권 해설 1』, 『언론중재』 제9권 제4호, 1989. 12. 언론중재위원회, p. 102.

프랑스 법제는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여 공인에게만 정정권을 규정하고 있어

ORTF)의 개정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고 있다.¹¹⁾ 동 법 제8조에서 반론권의 주체를 '방송내용으로 인하여 명예와 명성을 침해받은 자연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법인은 방송반론권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수 차례에 걸친 법규의 개정과 판례의 집적을 통하여 법인의 경우에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조합과 협회, 각종 단체 등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도 방송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방송에 의하여 명예나 명성이 훼손된 자는 반론권을 행사할 경우, 반론권과는 별도로 명예훼손 소송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방송에서의 반론권은 인쇄매체에 있어서 보다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¹²⁾

2. 공인정정권의 근거

1881년 출판자유법 제13조가 반론권의 주체를 공인과 사인·자연인과 법인 등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 법 제12조는 정정권의 주체를 공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12조는 정정청구권(droit de rectification)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정청구권으로 부르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정정보도청구권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공인정정권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공인정정권은 공인반론권의 변형으로서, 프랑스 법제가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여 공인에게만 정정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법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¹³⁾

동 법 제12조에 의한 공인정정권도 1822년 3월 25일 출판자유법 제10조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공인의 개념을 공권의 수탁자(un depositaire de l'autorite publique)로 규정하고 있다. 공권의 수탁자인 공인에게 별도의 정정권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행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지식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3. 공인정정권의 주체

출판자유법 제12조는 공권의 수탁자를 공인정정권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의 수탁자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 행정법상 공권의 수탁자는 공권력을 부여받은 모든 공무원수행자이며, 이는 광의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하며, 위로는 국가의 최고기관구성자인 대통령·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아래로는 사법상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기관을 구성하여 한정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까지 모두 포함된다.¹⁴⁾ 이러한 광의의 공무원은 공무원관계의 발생원인도 대단히 다양하여 선거에 의한 경우, 임명

11) 판례에서도 1960년대까지는 방송은 전파가 공중에 흩어져 버리므로 증거채집과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입증이 되더라도 반론 방법이 기술적으로 까다로우므로 반론방송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12) 박운희, 전계논문, pp. 55-56.

13) 김재협, "언론보도와 공적기관의 반론권: 프랑스, '매체접근이용권' 등 특별한 반론권 인정", 『신문과 방송』 통권 391호, 한국언론재단, 2003, 7, 참조.

14) 김철용, 『행정법2』, 2003, 박영사, pp. 147-148.

권자의 임명에 의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행정계약에 의한 경우, 사무위임 또는 위탁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공인정정권은 장관, 도지사, 시장, 구청장, 행정관, 경찰서장 등 주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관 등이 주로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정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공무원 또는 대리인 직급의 고하는 중요하지 아니하며, 이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의 이해에 관계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만 있으면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¹⁵⁾ 따라서 소송대리인이나 공증인, 시청서기 등은 공인정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겠다.¹⁶⁾

공무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인정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는 빈번하게 행사되었으나, 1958년 제5공화국의 헌법이 제정되고 196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인하여 정부가 안정된 이후에는 거의 행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공인정정권의 대상

출판자유법 제13조의 반론권은 그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제12조에 의한 공인정정권은 그 대상을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의해 부정확하게 보도된 공권력 작용의 행위(des actes de sa fonction qui auront ete inexactement rapportes par ledit journal ou ecrit periodique)'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정정권의 대상요건을 분설하여 보면 첫째 공인정정권은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기사에

한정된다는 요건이다. 사인반론권의 경우는 출판자유법 제13조 제1항에서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기사에 대하여 동 조 제2항에서 비정기간행물 기사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있으나, 공인정정권의 경우에는 비정기간행물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반론권은 라디오나 TV 등 방송에 있어서도 1972년 7월 3일 프랑송방송협회법의 개정 이후에는 인정되고 있으나, 공인정정권은 방송에 대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째, 공인정정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권력 수탁자의 업무범위 이내의 행위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자신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정부활동에 대한 단순한 비평기사나 논평을 대상으로 하여 공인정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비평이나 논평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권력 수탁자의 업무상 행위가 부정확하게 보도된 경우 사회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공의 정신과 공적 진실을 중요시하는 프랑스의 전통을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셋째 부정확하게 보도되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공무원행위 '부정확하게 보도'된 예로는 명백한 허위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소개되거나 제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된 경우, 또는 기만이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부정확하게 보도되었으면 공인정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확'의 개념은 상당히 넓게 해석되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활동의 내용 그 자체에 관한 허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무원활동이 이루어진 배경까지도 포

15) 박윤희, 전제논문, p.59.

16) B. Miollet, Le droit de reponse en matiere de press, these, paris, 1963, p.126.

17) 따라서 공인정정권은 행정책임자에게 방어수단(moyen de defense)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는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정문의 게재를 요구한 공무원은
별도로 반론권도 행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

합된다. 동 규정은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아니라 정부가 자신의 행위를 국민에게 사실대로 인지시키기 위하여 만든 일종의 권위 있는 수단일 뿐 공무원이나 정부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¹⁸⁾

5. 공인정정권의 행사

정정문은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이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후 가장 가까운 다음 발행호의 1면 머리기사에 무료로 게재되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다음 발행호란 정정문이 도착할 때까지 아직 인쇄에 들어가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를 말한다. 즉, 정정문 도착 이전에 이미 인쇄가 시작된 발행호가 있으면, 그 다음 발행호가 가장 가까운 발행호가 된다. 가장 가까운 발행호에 게재한다는 점에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 반론문의 경우보다 강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정문의 게재 위치는 원문기사와 동일한 위치가 아니라, 해당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1면 머리기사로 규정하고 있다. 원문기사가 어느 지면에 실렸든 공인정정문은 1면 머리기사로 게재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독자들에게 정정기사의 내용을 각별히 주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인정정권이 반론권보다 강한 보호를 받는 정부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정문도 반론문과 같이 발행인에 의한 침삭이

금지되나, 그에 관한 설명문이나 논평은 정정문의 앞뒤로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이 설명이나 논평이 정부 활동에 관한 '부정확한 내용'일 경우 재정정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¹⁹⁾

정정문은 원문기사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원문기사의 2배란 문제된 기사의 전체분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 가운데 문제된 정부 당국 또는 공무원의 활동이나 정책이 언급된 부분의 2배까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정보도문이 원문기사의 2배를 넘을 경우 발행인은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 한도 내에서 정정문을 재작성하여 게재를 청구할 수는 있다. 발행은 무료이므로 발행인이 초과되는 분량에 대한 게재료 지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²⁰⁾

1881년 출판자유법 제12조 2항은 공인정정문의 분량만 정하고 있으며 공인정정권의 행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례를 통하여 반론권의 행사방법과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 또는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발행인이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음²¹⁾은 반론권의 경우와 같다.²²⁾ 정정문의 게재를 요구한 공무원은 공인정정권과는 별도로 반론권도 행사할 수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 제도가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활동에 관한 정확한 보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

18) 박윤희, 전제논문, p. 30.

19) 상계논문, p. 61.

20) 상계논문, p. 60.

21) 정정보도문 게재거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

22) 박윤희, 전제논문, p. 60.

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라 하겠다.²³⁾

발행인이 공인정정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3,750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III. 독일의 반론권 법제와 공인

1. 독일법 체계에서의 반론권 법제

연방정부인 독일의 경우는 단일정부인 프랑스의 법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방국가의 특성에 의하여 독일은 입법권을 연방과 지방정부가 함께 행사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연방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기본법 제70조 제1항은 “지방은 이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연방입법권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영역을 전속적 입법영역과 경합적 입법영역으로 나누어, 지방도 연방의 전속적 입법영역 중 연방법률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가지게 된다.²⁴⁾ 또한 연방과 지방의 경합적 입법에 있어서는 연방이 법률에 의하여 그 입법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그러한 한에서 지방이 입법권을 가진다.²⁵⁾ 또한 경합적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연방은 대강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며, 연방이 대강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 지방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적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지방법률을 제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²⁶⁾

이러한 독일의 연방과 지방국가간의 입법권을 토대로 하여 독일의 반론권을 살펴보면, 현재 독일에는 연방차원에서의 통일적인 반론권법은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며, 신문의 일반적 법률관계를 연방의 대강규정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 기본법 제75조 제1항 2호와 연방의 대강규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방법률 제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정부인 각 주마다 별도로 반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²⁷⁾ 이러한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정부별로 반론권에 관한 입법례를 다소 상이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프랑스와 같은 일관된 입법에 의한 반론권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겠다.

각 지방정부별로 반론권의 인정범위·반론권의 행사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면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으나, 각 지방정부들은 반론권을 규정할 개별법규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다. 주로 출판법(Presserecht)에서 반론권 규정을 두는 입법례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1980년대 이후에는 출판법과 방송법을 통합하여 매체법(Medienrecht)으로 확대하여 반론권을 규정하는 지방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²⁸⁾

각 지방정부들의 출판법 또는 매체법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독일 반론권의 내용은 프랑스의 반론권에 비하여 반론권 청구의 대상과 공인정정권의 면에서 기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는

23) 상계논문, p. 61.

24) 독일기본법 제71조

25) 독일기본법 제72조 제1항

26) 독일기본법 제75조 제3항

27) 바이에른(Bayern) 주에서 1919년 가장 먼저 출판법을 제정하여 반론권을 규정하였으며, 이어서 1958년 헤센(Hessen)주, 1964년과 1965년 거의 모든 주에서, 1966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가 마지막으로 반론권을 규정할 개별법규를 제정하였다.

28) 1981년 니더작센주·1985년 마덴비르템베르크주에서 주 매체법을 제정하였다.

독일의 경우 국가기관 등 공인이
반론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반론권에 의하여 행사

반론권을 일반적·절대적 권리로 보고 그 청구대상을 사실보도 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논평 등에도 인정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는 반론권을 제한적인 권리로 파악하여 사실주장에 한하여서만 반론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에 따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프랑스식 반론권 제도와 독일식 반론권 제도로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식 반론권 제도를 취하여 반론권의 대상을 사실보도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공인정정권을 규정하여 됴으로써 공권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는 공인정정권과 같은 공무원의 특권조항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독일의 경우는 국가기관 등과 같은 공인이 반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반론권에 의하여 행사하게 된다.

2. 반론권의 주체와 공인

프랑스의 반론권 제도를 처음으로 계수하였던 1831년 바덴(Baden)주 출판법에서는 1822년 프랑스 출판법상의 공인정정권도 수용하여 관청에 의한 정정강제제도(동법 제10조)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통일 독일 후 1874년 제정한 제국출판법 제11조에서도 개인뿐만 아니라 관청에게도 정정보도문 게재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인정정권을 인정하고 있었다.²⁹⁾ 국가기관의 정정권을 더욱 중시하였던 이러한 입법례

는 1949년 바이에른(Bayern)주의 출판법이 중립적인 반론권을 보장함으로써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³⁰⁾ 따라서 오늘날 독일의 경우에는 공인의 정정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으나, 1831년 바덴주의 출판법과 1874년의 제국출판법 전통에 기인하여 일반적인 반론권의 주체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과 같은 공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반론권이 인정되는 공인의 예로는 연방 및 주정부, 각 행정관서, 법원, 검찰청, 연방 및 주의회, 교회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에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에는 공인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의 사실주장에 관련된 자연인, 공·사법상의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³¹⁾, 조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에게도 반론권 주체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외국인 개인과 외국관청 나아가 국제기구의 구성원과 그 기관에게도 주체성을 긍정하고 있다.

반론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원문기사에 반드시 성명이 특정화되어 있을 필요가 없으며 문맥이나 표제 또는 그림 등을 통하여 특정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문기사와 동명이인인 자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일반독자에게 특정인이 언급되었다는 인식을 심어 주면 그것으로 반론청구권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와는 달리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반론권을 인정하지 아

29) 제국출판법 제11조 1항에서는 “정기간행물의 책임편집인과 발행인은 그 간행물에 게재된 사실에 의하여 피해받은 개인 또는 기관의 반문문을 게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0) 김병국, “한국과 주요국가의 반론권 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2권 제3호, 2002, 12, p.51.

31)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는 설립중인 법인, 정당, 상인단체, 지역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니하며 따라서 사자의 상속인이나 배우자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론문에 대한 제3자의 재반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³²⁾

Ⅳ. 미국의 공인반론권

1. 인쇄매체에 대한 반론권

미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연방국가이므로, 입법권은 연방의회와 지방의회가 균점하고 있다. 인쇄매체에 대한 반론권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의 법률은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며, 지방의 경우에도 플로리다주와 미시시피주에서만 반론권 규정을 두고 있다.

1913년에 제정된 플로리다주의 반론권 규정은 104.3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³³⁾: 어떠한 신문이라 할지라도 그 난에 있어서 지명후보자나 선거후보자의 인격을 공격하고, 또는 공직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내지는 실당행위를 갖고 당해 후보자를 고발하거나 후보자의 공직상의 혹은 이력을 공격하고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자유로운 지면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신문은 당해 후보자의 청구에 의해 후보자가 그곳에 행한 반론을 반론의 원인이 된 기사만큼 눈에 띄는 장소에 같은 활자 크기로 즉시 무료로 공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 반론의 원인이 된 기사의 길이를 초과할 수는 없다.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또는 단체는 제1

급의 경죄로서 775·082조 또는 775·083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미시시피주에서는 반론권 규정 제3175조에서 “동주에 있어서 발행되고 판매되는 신문이 공직후보자의 성실, 품위, 인격을 비난하는 해설 또는 뉴스 보도를 게재하였을 경우 당해 신문은 반론수령 후 지체 없이 다음 다음호에 그 반론을 게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송부된 반론은 변경될 수 없다. 반론은 가능한 한 원문기사와 같은 장소에, 같은 활자로, 또한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신문이 그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임무를 지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플로리다주의 반론권 규정과 대동소이하게 정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와 미시시피주 모두 공직후보자에 한해서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론권의 내용을 정정과 의견 두가지를 포함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³⁴⁾ 플로리다주와 미시시피주의 입법례에 의하면 공직후보자가 된 공인의 반론권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인정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1973년 마이애미 헤럴드 출판회사와 토닐로 간의 소송사건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³⁵⁾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플로리다주의 반론권법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³⁶⁾, 미국 내에서는 인쇄매체에 대한 공인의 반론권을 실정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방송에 대한 반론권

인쇄매체의 경우와 달리 방송의 경우에는 연방차

32) 박운희, “독일의 반론권 (상)”, 『언론중재』, 1965 여름, 1965, 6, 언론중재위원회, p. 12.

33) 한병구, “세계 각국의 반론권법제현황”, 『언론중재』 제2권 제2호, 1982, 6, 언론중재위원회, p. 25.

34) 플로리다주와 미시시피주는 1822년 프랑스 출판자유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35) 418 U.S. 241, 258 (1974).

36) J.A. Barron, “미국에서의 언론매체에 대한 반론권”, 『언론중재』 제14권 제1호, 1994, 3, 언론중재위원회, pp. 63-64.

인쇄매체의 경우와 달리 방송의 경우에
연방차원에서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이
미국 반론권제도의 특색

원에서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이 인쇄매체에 대한 반론권에 대하여는 적극적이며 방송에 대한 반론권에 대하여는 소극적이란 점과 대비하여 보면 미국 반론권 제도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1934년에 제정된 연방통신법(Federal Communication Act) 제315조는 공직에 출마한 어떤 후보자가 방송을 이용할 때 다른 입후보자도 방송을 이용할 같은 기회가 있음을 규정한 조항³⁷⁾이 간접적으로 반론의 기회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규정은 반론과 액세스권을 규정한 것으로 반론권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1959년 연방통신법 개정에 따라 균등시간 조항에 행정방침으로서 추인된 공평의 원칙(fairness doctrine)에서는 반론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였다.³⁸⁾ 즉, 방송에 대한 규제 권한의 집행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공평의 원칙의 내용으로서 공격·정치논설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 공적으로 중요한 논쟁사항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동안 특정개인 또는 단체의 성실·성격·품위 내지는 같은 개인적 자질에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 피면허자는 1주일 이내에 공격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a. 그 방송의 일시 및 방송내용의 통지, b. 그 공격의 대본 또는 테이프와 c. 피면허자의 시설에 의한 반론의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방송에 대한 반론권의 주체는 공적 논쟁 중에 개인적 공격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이므로, 공인의 경우에도 당연히 반론권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의한 언론의 자유 보장과 언론자유 우월적 지위에 기인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반론권의 보장에는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실정권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며, 대체적인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반론권 행사에 못지 아니한 피해회복 효과를 부여하여 주는 것으로 법적 구제를 행하고 있다.

V. 결 론

국가기관 등의 공인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제는 프랑스·독일·미국이 서로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독일의 법제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공인의 반론권 법제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각 국가에서의 언론의 자유의 구현 정도와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는 공공성의 요구 정도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연방헌법 수정 제1조와 제14조에 근거한 언론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언론사를 제약하거나 언론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권은 공인이건 사인이건 인정되기 어려웠으며, 사인의 경우에는 반론권의 개념 대신에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도로 발전하였다. 또한, 공인의 경우에도 일부 주에서는 실정법을 통

37) 이상희, 《방송론-정치방송의 균형과 접근의 권리》, 1982, 법문사, p.110.

38) 한병구, 전계논문, p. 26.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반론권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연방대법원에서 이를 위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인반론권도 제도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하여 방송에 대하여는 연방차원에서의 반론권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반론권 보장에 있어서 고무적인 변화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와 달리, 언론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입법례가 프랑스의 경우이며, 프랑스에서는 반론권 이외에도 공인정정권을 출판자유법을 통하여 보장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이나 업무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건전한 여론형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인정정권은 정부가 안정된 1960년대 이후에는 거의 행사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프랑스의 공인정정권은 정부의 불안정시에 그 제도적 취지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와 달리 독일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조화적 견지에서 고려하여, 개인과 국가기관 등에게 반론권을 부여하되 그 대상을 사실보도에 한정하고 주체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로 구체화함으로써 프랑스와 독일의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간법 제16조를 통하여 반론권을 보장하고, 제7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의 공인에게도 반론권을 인

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독일의 입법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제16조 7항의 공인 반론권은 1995년 정간물법의 개정에 의하여 동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이미 학설과 판례 등을 통하여 보장되어 오던 것이었으며, 동 법 개정 조항의 신설은 이러한 학설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인반론권은 프랑스의 공인정정권과는 기본적으로 제도적 취지가 서로 상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공인정정권이 정부가 안정된 1960년대 이후에는 거의 행사되고 있지 아니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공인반론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인반론권이건 공인정정권이건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제도적 장치는 정부의 불안과 언론에 대한 불신 등이 배경이 될 때 청구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반론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의견과 가치판단·논평 등에 대하여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도상으로는 프랑스에 비하여 독일언론이 '여론형성에 기여' 한다는 점에서는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³⁹⁾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반론권 청구대상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39) 김병국, 전계논문, 2002, 12, p. 53.

최근의 언론관계 판결 동향

I. 들어가는 말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민주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체제에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한편,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로부터 파생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기본권으로 향유하며, 이러한 기본권 향유를 위하여 국가가 국가안전을 보장하며,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할 책무를 지게 된다고 하겠다.

문제는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자유가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호 충돌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제3자가 향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우선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성 선 제

가톨릭대 법학부 교수

- 고려대학교 법대 및 동 대학원 졸업
- 인디애나대 로스쿨 법학석사
- 위스콘신대 로스쿨 법학박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 저술: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 언론의 자유의 사상적 기초』
- 논문: "언론의 자유의 사상적 기초", "명예의 사회적 기초" 외 다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에 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형법 제307조 이하의 명예에 관한 죄 등은 위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 검양을 미덕으로 공개적인 표현을 삼가하는 전통적 사회에서 상대주의를 기본으로 개방적인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현대 서구식 민주주의사회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출판에 관한 법이론과 실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2003년도에 우리 사법부가 형성한 언론관계 주요 판례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언론관계 판례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03년의 언론관계 판결을 개관하고, 주요 언론관계 판결을 공인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언론사간의 명예훼손 소송,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소송으로 나누어 법원의 판단과 이에 대한 적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2003년 언론관계 판결 개관

2003년의 언론관계 판결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전에 형성된 이론적 기초와 판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과 판례를 형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에 무게를 두는 내용의 풍부한 판례를 다량 생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언론관계 판결의 주요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의

언론 오보 및 과장보도에 대한 강경하고도 적극적인 입장 천명의 일환으로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법원은 공직자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대부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중시하여 공직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고 언론을 보호하는 진일보한 자세를 보였으나 일부의 사건에서는 충분한 취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미진하고 일방적 보도를 이유로 공직자의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둘째,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 내지는 제약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간의 경쟁의 심화로 언론사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언론사간의 소송에서 법원은 언론기관의 상호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결하였다.

셋째, 인터넷과 관련된 언론 판결이 새롭게 등장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법원은 인터넷이 일정 부분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판결하였다.

III.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1. 공인 패소 판결

공인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대부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중시하여 공인 패소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법은 민주당 김홍일 의원 등이 “LA 호화 빌라 구입설”을 유포,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나라당이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LA소재 호화

빌라를 대통령 처남 이○○ 씨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자 “문제의 빌라는 이씨가 자비 및 은행대출로 산 것으로 나오는 부관하다”며 이씨와 함께 한나라당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나라당이 ‘김 의원이 대통령 처남 명의로 LA에 호화빌라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같은 의혹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진실확인 노력을 한나라당이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다”면서 “그러나 의혹을 최초 제기한 LA소재 한인 언론사들의 보도가 취재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점, 특히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 정황에 따른 개연성이 있다면 정확한 논증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문제제기를 해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소 과장·비약이 포함돼 있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취 용인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한나라당이 “허위 칼럼으로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를 비방했다”며 한겨레신문 칼럼니스트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선후보 비판칼럼은 공익목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나라당은 정씨가 2002년 6월 3일자 한겨레 ‘죽비소리’ 칼럼에서 “언론이 국세청 모금사건, 언론사 탈세 비호 등 이 후보의 잘못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정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대선 이전 자신의 칼럼에서 이 후보와 한나라당에 대해 국세청 모금사건, 빌라 사건 등을 거론한 것은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되나 이는 국가적 영향력이 큰 정당과 대선후보에 관련된 것으로 게재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

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모 인천지검 차장검사가 “‘○○○게이트’ 당시 나를 이씨의 검찰 내 비호세력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차장검사는 동아일보가 2001년 9월 ‘이○○ 게이트’와 관련, ‘이씨, 권력층과 수시통화’라는 기사에서 99년 4~6월 이씨의 전화손님 명단에 대검 중수부 과장이던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3억원의 손해배상을 냈고 1심 재판부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씨와 통화를 시도한 사실에 근거,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의 추측 및 의혹제기는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취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지법은 이른바 ‘대전법조비리’를 보도했던 전·현직 대전MBC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현직 기자 김 모(30)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전·현직 기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999년 1월 대전법조비리를 보도, 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3년 6월 1심에서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1999년 1월 7일 보도내용이 이○○ 변호사가 판·검사들에게 대가성 소개비를 건네고 사건처리에 있어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변호사의 뇌물죄가 확정된 만큼 검찰과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므로 이날 보도내

용에 관련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월 9일 '대전지역 검사와 판사들이 이 변호사와 어떤 형태로든 뒷거래를 했거나'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보도이며 피고인들도 사전에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목적은 없었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고 유죄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언론의 감시비판기능과 이 사건 보도로 법조계가 반성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됐으며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이 해소된 점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법은 2001년 언론개혁 워크숍에서 '윤전기에 타격을 가하는 강패방식의 언론운동'을 주장한 성공회대 김○○ 교수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패소판결했다.

한국언론재단은 2001년 6월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언론단체 간사 연수회를 열었다. 같은 해 9월 조선일보는 국회에 제출된 연수회 보고서를 근거로 연수회에 초청강사로 참석한 김씨가 언론운동의 방향을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강패들에게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 충격을 주는 것. 강패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화로 분노를 표출하고 윤전기에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씨는 허위사실 보도라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강연내용이 강패방식 언론운동을 지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속기록과 국회에 제출한 문서를 종합할 때 김씨는 전화로 분노를 표

출하고 윤전기에 타격을 가하는 언론운동 방식이 필요함을 주장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의 강연 취지에 비취봤을 때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김씨의 강연내용과 객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합치되는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언론탄압을 위한 흉위병으로 묘사,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은 정치적 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공개토론에 부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며 "당시 언론사주 사법처리와 비판언론 죽이기에 시민단체가 흉위병식으로 동원됐다는 한나라당의 기자회견이 진실이라는 증명은 없지만 조선일보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선일보 반대시민연대는 2001년 7월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한나라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을 '검찰, 친여매체, 외곽단체는 한통속', '흉위병식으로 비판언론 죽이기에 동원' 등으로 표현하고 이를 조선일보가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을 발표, 보도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서모 씨와 2개 통조림 제조사가 국가와 2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서씨 등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되 언론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당시 수사발표는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발표 전 조사와 확인이 부족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언론사들은 검찰 측 발표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검찰이 지난 98년 7월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를 했다’고 발표한 직후 언론사들이 ‘통조림에 발암물질’ 등의 기사를 보도하자 2000년 9월 국가와 11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언론사를 피고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고법은 동국대 황○○ 교수가 “6·25전쟁과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등에 대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과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보도한 동아일보 등 8개 언론사와 한나라당, 자민련 당직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5전쟁 등에 대한 김정일의 모든 책임을 부정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황 교수 발제문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만큼 왜곡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2001년 2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 또는 논평한 것을 문제삼아 8개 언론사와 정당 당직자들을 상대로 27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고법은 울산시청 내 기자실을 폐쇄했다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강모(43), 김모(27) 씨 등 울산시청 공무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백만~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울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인 강씨 등은 2002년 8월 12일 기자실 폐쇄 투쟁다짐대회를 연 뒤 울산시청 본관의 중앙지 기자실로 몰려가 기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기자실을 폐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

시 울산시청을 출입하던 중앙지와 경제지 출입기자 10여 명은 이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대다수 중앙지 기자는 시청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 사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실 폐쇄 권한이 없는 공무원 1백여 명이 기사작성 중인 기자 10여 명을 기자실 밖으로 몰아내고 출입문을 폐쇄한 것은 위력으로 기자들의 기사검색 및 취재, 기사 작성과 송고 등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2. 공인 승소 판결

공인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이 취재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미진하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경우 공인에게 승소판결을 하였다.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법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옥두, 김홍일 민주당 의원이 동아일보 2000년 11월 1일자의 “정○○이 만든 사설펀드에 여권 실세가 가입했다”는 요지의 기사에서 영어대문자 케이(K)로 여권실세가 지칭되고 다음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의원에 의해 자신들의 실명이 거론되자 “정○○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동아일보사와 기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아일보사 등은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동교동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보도된 상황에서 기사 속 이니셜 표현만으로도 권 전 고문 등을 특정했다고 할 수 있다”며 “검찰 쪽에 공식적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고위공직자인 여권 실세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너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한 것

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서울지법은 한나라당과 이재오 의원이 2002년 12월 “한나라당이 김○○ 테이프가 조작이라는 양심선언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대표와 취재기자 및 거짓 진술자 금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기사는 한나라당이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병풍 확산을 막기 위해 금씨에게 기자회견을 강요하고 거짓 증언 대가로 3,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공작정치를 했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표명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거짓 진술자와 언론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언론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 1993년 김○○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관선이사장이 파견되면서 몇 년 동안 학내 갈등을 겪었던 상지대학교에 대해 월간조선이 2000년 5월호에서 ‘상지대학교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학생운동을 비호하면서 학교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자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학교를 비방하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월간조선사는 상지학원에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간조선은 4~9년 전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썼으며 비리 혐의로 물러난 김○○ 전 이사장의 학교운영 문제점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이사장 퇴임 이후의 문제점만을 중점적으로 과장보도했다”며 “이 사건 기사는 공익 목적보다 김 전 이사장 쪽의 일방적 입장만을 대변해 상지대학교를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충분한 취재

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일방적 취재를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지법은 대통령 비서실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2003년 8월 14일자 주간조선의 “향응과문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제하 기사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부속실 직원이 늘어나 보안사고 우려가 높으며 양○○ 향응 과문이 엉성하게 마무리된 것은 부속실장의 막강한 파워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에 대하여 반론보도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제1부속실장의 전횡에 의해 좌우된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 면담 등의 업무는 의견비서관을 거쳐 합리적으로 처리된다는 등의 반론보도 청구는 보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지엽말단적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기사 내용에 대한 반박을 넘어 신청인의 의견 내지 가치 평가를 제시하거나 사실에 대한 반박을 넘는 보충적·추가적 진술은 반론보도 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보도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타당한 결정이다.

서울지법은 G&G그룹 이○○ 회장 수사 시 주임 검사를 맡았던 당시 서울지검 김모 검사가 모 일간지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근거가 부족한 의혹보도에 대하여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기사는 정. 관계 인사가 이○○ 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물증인 비망록의 존재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기사가 진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진실을 담보할만한 구

체적 정황 하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도 없어 손배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2001년 9월 해당 일간지가 “검찰이 2000년 이씨 수사당시 정치인과 검찰간부 등 명단이 담긴 비망록을 입수하고도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검사와 기자 사이에서 기사의 진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IV. 언론사간 명예훼손 소송

언론사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새로운 유행으로 등장하였다. 법원은 언론사간의 상호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법은 MBC와 김○○ 전 MBC 사장이 박관용 의원의 2001년 3월 월간조선 기고문과 월간조선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신문개혁에 방송을 이용하려 한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가 자신들이 정권의 언론계 장악정책에 동조하는 친정부 인사 내지는 정치적 하수인이라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조선과 박관용 의원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MBC 김 전 사장 등에게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여권이 언론장악 기도를 하였는지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한창이었던 점, MBC가 공영방송사로서 국민의 여론형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 MBC의 대표이사에 대한 자질 평가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간조선 등 보도는 언론자유 범주에 포함되는 정당한 비판에 해당한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또 “언론이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간 갈등구조를 없애고 통합을 이뤄야 할 정권이 언론계 인사에 개입해 특정지역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하는 것에 대한 언론기관의 비판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매체간 비판의 자유를 폭 넓게 인정한 것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지법은 “한겨레신문이 조선일보가 근거 없는 의혹을 키운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가 한겨레신문과 강보 기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미 의회조사국 래리 너시 선임연구원은 2002년 3월 조선일보 등을 인용해 현대가 북한에 비밀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한미관계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월간조선이 2002년 5월호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북비밀송금 의혹을 제기한 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2002년 9월 국감에서 같은 의혹을 주장하자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가 평풍식으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출처 인용으로 의혹이 커져 가는 경우 언론사 상호간에 기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비록 그 의혹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특별히 악의가 없는 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겨레 기사 중 일부 문구가 잘못 표현됐지만 대체로 진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동아일보가 “자사의 주식투자에 대해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싼 이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표현으로 동아일보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

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공적인 역할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언론사의 특수성에 비춰 언론사 주식투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언론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 범위 안에서의 정당한 보도”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사는 지난 2001년 문화방송이 <9시 뉴스 데스크>에서 ‘싼 이자 재테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동아일보가 지난 1996년 언론사라는 힘을 이용해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였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문화방송은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정보도를 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정○○ 시민의 신문 취재부장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정 부장은 월간 말 기자로 있던 1998년 12월, 월간조선 11월호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장이던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한 논문을 트집잡아 ‘마녀사냥식 사상검증’을 벌이자 월간말에 조선일보의 행태를 비판하는 특집을 실었다. 문제가 된 기사는 ‘병리학적 심리분석-조선일보 왜 극우반공 집착하나’와 ‘집중해부/조선일보의 친일행각’ 등이었으며 “조선일보의 친일행적이 해방 이후 반공콤플렉스로 이어졌다”는 것이 기사의 뼈대다. 그러자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기자 세 명은 정 부장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서울지법은 MBC가 “지난해 서해교전 보도와 관련해 왜곡된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간조선이 MBC의 서해교

전 보도 태도에 대해 쓴 기사는 ‘원고가 서해교전에 대한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월간조선의 보도는 언론 매체 상호간의 정당한 ‘비평’의 범위 내에 속한 만큼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영방송이 국민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의 보도 태도의 정당성, 객관성에 대한 자유롭고 폭넓은 비평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해 10월 “월간조선 8월호가 ‘MBC 뉴스데스크가 서해교전의 본질을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꽃게잡이 어선들의 월선조업이라고 호도함으로써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편파 보도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은 “서울·경기지방에 집중폭우가 쏟아진 지난 2001년 7월 조선일보 진모 기자가 ‘잠깐 재해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사의 재해방송 보도를 비판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K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해방송의 비판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기사는 KBS가 재해의 위험을 미리 알려 국민들이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고 신속히 재해방송을 실시하지 못한 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므로 이것이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어 원고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서울·경기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2001년 7월 14~15일 재해방송을 담당한 KBS와 MBC가 재해상황에 비춰 적절히 보도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실었고 이에 KBS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최장집 교수 사상논쟁과 관련, 본인을 비하하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

간조선 우모 기자가 월간 말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도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시 조선일보의 편향성이 사회적 논쟁대상이 됐었고 ‘말’ 지는 조선일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우 기자는 ‘말’ 지가 지난 98년 12월호 “‘진보인사 죽이기’ 뿌리는 친일 콤플렉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던 최장집 교수에 대한 사상 논쟁과 관련, ‘우 기자에게서 새디즘적 병리현상이 느껴지며 우 기자의 글에서 살의가 느껴진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KBS ‘다큐멘터리 극장’ 연출 PD 남○○ 씨가 자신을 ‘주사파’로 비방한 월간지 한국논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연출한 프로그램의 역사해석이 종래의 전통적 입장에서 벗어나 방영 당시(94년)로 봐 진보적 시각에서 분석한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피고가 보수우파 입장에서 ‘KBS가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념논쟁에 있어 언론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역사해석을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전체 기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 위자료 배상을 명한 것은 잘못된 판단인 만큼 원고를 주사

파로 지목해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 액수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한국논단이 98년 3월호에 자신이 연출한 다큐멘터리극장이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여론형을 민족주의자로 묘사하고 동학란을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해 분석했다’는 내용을 담은 ‘빨갱이는 선, 경찰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는 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V. 인터넷 관련 소송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은 인터넷에 지방의회 의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면장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게시물 내용이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된 어떤 표현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 게시물 내용과 어휘, 게시물의 전체적 흐름, 사회적 배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고,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제작년 9월 강원도의 한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군의회 의장이 안하무인으로 마을 대표들을 유치원생 다루는 식으로 연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홍보성 글을 대량으로 자동 게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철폐’가 내려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다음카페의 게시판에 대량의

스팸글을 자동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제조·유통한 업체 4곳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다음은 해당 프로그램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게시판 스팸 프로그램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측은 고소장에서 “4개 업체는 다음카페의 수많은 게시판에 똑같은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여 카페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약관을 어기고 시스템 과부하를 일으켜 업무방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프로그램으로 게시판에 오르는 글은 “꼭 보세요”, “이 사이트에 들러보세요” 등의 제목으로 불법 피라미드 판매나 음란사이트의 방문을 유도한다. 다음은 2002년 5월 대량의 스팸메일을 보낸 업체 3곳에 대해 800~2,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가 “정간법과 방송법상 허가받은 보도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대선예비후보들의 인터뷰를 금지한 행위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인터뷰 중지촉구 공문을 보낸 것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고 인터뷰 현장을 저지한 행위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2002년 2월 대선 출마의사가 있는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 7명을 대상으로 연쇄 인터뷰를 기획했으나 서울시 선관위가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했다며 인터뷰 중지촉구 공문을 보내고 선관위 직원을 보내 인터뷰를 저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지법은 대통령 선거기간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오마이뉴스 대표 오○○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회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선 여론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지 않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는 기소되지 않은 채 홀로 기소된 점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작년 12월 9일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인용, ‘노무현-이회창 격차 더 벌어져’라는 제목으로 당시 민주당 노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영남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모 피고인은 한나라당 사이버대의원으로 활동하던 2002년 9월 18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집에서 모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주당 천용택 의원이 김○○ 씨와 공모해 거짓 병역비리를 폭로했다’는 글을 게재, 천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대전지법은 ‘젓소나 수입소 사골을 한우 사골로 속여 팔았다’는 내용의 글을 대전양돈축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대전양돈축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이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종합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자사 기사를 무단 도용해온 미계약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사불법도용 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자사 기사 무단 도용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된 경기 부천의 시대일보, 경북 포항의 경상매일, 경남 진주의 신경남매일 등 3개 미계약 지방신문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이들 3개사와 광주광역시와 전남

매일을 관찰지 검찰청에 별도 고발조치했다. 연합뉴스가 자사 기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손해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이번 법적 대응은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언론사를 겨냥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단전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그동안 전재료를 내고 기사를 이용해온 계약사를 보호해 건전 언론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소송의 대상이 된 언론사들은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는 물론 외신, 사진, 북한 중앙통신기사 같은 출처가 확실한 기사까지 무단전재하면서 버젓이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사용하는 등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양식마저도 저버리는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연합 측은 2000년 이후에만 미계약 기사도용 언론사들에 자사 기사 무단전재 금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6차례 보내고 계약 체결을 종용했으나 이들 언론사는 상호(제호) 변경 등의 수법으로 계약을 기피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합 측은 작년 하반기 지적재산권위원회를 발족, 기사도용 실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해왔으며 이번 법적 대응을 앞두고 주요 로펌과 법률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로펌 측은 ‘연합 기사는 저작물로 보호돼야 하며 전계약 없이 기사를 무단도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연합뉴스는 지적재산권위를 당분간 상시기구로 운영하면서 미계약 오프라인 매체 외에 온라인 매체의 기사도용 실태도 조사해 자사 기사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주력키로 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이모 씨가 “허위사실로 나를 비방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방

영을 막아 달라”며 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프로그램이 이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이씨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SBS측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이날 방영예정이었으나 법원 결정이 내려지자 SBS측은 급하게 프로그램을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다른 편으로 대체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한쪽 당사자의 제보에 의한 편파적 취재활동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이 주도하는 서울시내 한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SBS가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VI. 맺는 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003년의 언론관계 판결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전에 형성된 이론적 기초와 판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과 판례를 형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두텁게 보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언론관계 판결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노부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의 언론 오보 및 과장보도에 대한 강경하고도 적극적인 입장 천명의 일환으로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법원은 공직자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대부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중시하여 공직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고 언론

을 보호하는 진일보한 자세를 보였으나 일부의 사건에서는 충분한 취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미진하고 일방적 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둘째,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 내지는 제약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간의 경쟁의 심화로 언론사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언론사간의 소송에서 법원은 언론기관의 상호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결하였다.

셋째, 인터넷과 관련된 언론 판결이 새롭게 등장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등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인터넷이 일정 부분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전제위에서 판결하고 있다.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은 한편으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양자가 충돌할 때 법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공인이나 공적인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서 어느 정도의 부정확성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위하여 명예훼손의 인정은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의 2003년 언론관계 판결을 검토해 본 결과 공인과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의 감시 및 비판기능을 중시하는 판결이 다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추상적으로 충분한 취재의 기회를 전제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을 경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의 격언을 되새기며 이 글을 맺는다. “공공의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제한 없이, 활발하고 널리 개방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따갑고 때로는 불유쾌한 날카로운 공격을 포함할 수 있다.” □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장 철 익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목 차

사실의 개요	4. E U
소송의 경과	5. 일 본
Ⅰ. 서	Ⅲ. 우리나라의 경우
Ⅱ.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및 판례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여부
1. 미 국	2. 법적 구성
2. 영 국	3. 판례
3. 독 일	Ⅳ.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V. 결

이 논문은 필자가 2002년 11월 방문 내 (언론법연구회) 세미나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 책임과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 판례, 우리나라의 현실 등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2회에 걸쳐 게재 한다. 편집자주

대상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판례공보 2003. 8. 1.(183), 1613]¹⁾

[사실의 개요]

1. 피고 경상북도 청도군은 자신의 군(郡)에 대한 홍보와 안내,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2. 2001. 4. 23. 12:14경 A1 명의로 위 홈페이지의 '방명록'란에 '○○○(원고) 씨에게 묻고 싶다'는 제목으로 원고의 공직생활 중 심추행 사건, 의

1) 대상판결에 대한 최근의 정식으로 김기섭,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법률신문 제3221호(2003. 11. 21.자) 참조

기고논문

성군 부군수 재직시 금품수수, 감사 명목의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의 글이, 2001. 4. 24. 20:56경 A2 명의로 위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란에 '○○○ 씨의 성추행에 대한 진실을 말한다'는 제목으로 원고의 성추행 및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글이, 같은 날 21:25경 B²⁾ 명의로 위 '칭찬합시다'란에 '○씨 성추행관련 신문보도'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성추행 및 금품수수 사실과 관련한 1992. 10. 21자 경북일보, 1992. 10. 25자 매일신문,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이 각 게시되었다.

3. 원고는 2001. 4. 24. 08:24경 위 '방명록'란에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A1이 질문한 성추행 의혹 및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해명하는 내용의 글을, 2001. 4. 27. 00:58경 위 '칭찬합시다'란에 '부책임한 명예훼손에 경악'이라는 제목으로 A2 명의의 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게재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4. 2001. 5. 7. 14:30경 답답해 명의로 위 '칭찬합시다'란에 '정보군의 자질문제'라는 제목으로 개인 사생활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에 대해 삭제할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2001. 5. 8. 11:01경 대박 명의로 위 '칭찬합시다'란에 '○씨 성추행관련 신문보도'라는 제목으로 B 명의의 글을 비난하는 글이, 그 무렵 청사인 명의로 위 '방명록'란에 'A1님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A1 명의의 글을 비난하는 글이 각 게시되었다.

5. 피고의 전산관리 담당직원인 C는 2001. 4. 23. 오후 위 홈페이지에 A1 명의의 글이 게시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날 이러한 사실을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였다.

6. 원고는 2001. 6. 9경 피고 앞으로 A1, A2 명의의 글들을 삭제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2. 이를 수령하고 피고의 전산관리 담당자인 B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같은 달 13. 09:40경 원고가 요구하는 A1, A2 명의의 글을 비롯하여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소송의 경과]

1. 제1심 판결³⁾ 및 제2심 판결⁴⁾의 요지

가.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A1, A2 명의의 글 등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 할 것이며, A1 명의의 글이 게시된 당일 C가 이러한 사실을 군의 총무과장에게 전달한 점, A1, A2 명의의 글들과 관련하여 이를 비난하거나 그 삭제를 요구하는 위 홈페이지 사용자의 글이 게시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의 내용증명에 의한 명시적인 삭제요구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이러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원고와 그 글들의 처리에 대한 의논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52일 가량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고 따라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자게시판 관리의부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아래 대법원 판결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A1, A2, B는 가명인 듯하다.

3) 대구지법 2002. 6. 25. 선고 2001가단(2531) 판결.

4) 대구지법 2002. 11. 13. 선고 2002나(4163) 판결(원용 판결). 다만, 위자료 액수는 제1심 판결보다 증액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파기환송)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비영리 군정(郡政) 홍보사이트의 게시판에 익명의 이용자가 임의로 게시한 게시물에 관하여 게시된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원고가 반론까지 게시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그 게시물의 삭제를 공식 요청하자 즉시 피고측 담당자가 그를 삭제하기에 이르렀던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서는 앞서 본 관련 사항들을 모두 심리한

다음 거기서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에게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었고 그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그 게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에 치중한 나머지 전자게시판 관리자로서 게시물의 즉시 삭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앞서 본 관련 사항들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연 구]

I. 서

1. '명예훼손'은 일찍이 인터넷 문화의 시작과 더불어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주제이다. 이는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전의 초기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욕설에 가까운 이른바 flaming까지도 인터넷 문화의 하나로 인식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만연했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⁵⁾ 그 후 인터넷 이용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⁶⁾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더더욱 중요한 법적 논점으로 되었다.

2. 인터넷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의 신문.

5) Lilian Edwards, "Defamation and the Internet", 『Law and the Internet : A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erce』, Hart(2002), pp. 254-255.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은 인터넷이 구현하는 이른바 cyberspace가 현실 사회의 법이 침투해서는 안되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한다. 대표적으로 John Perry Barlow, "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at <http://www.eff.org/barlow>(Feb. 9, 1996). 위 선언은 미국 Clinton 정부에 의한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 밖에 Amy Lynne Borse, "The dependence of cyberspace", Duke law Journal vol. 50(2001),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http://www.questia.com>에서 검색)도 참조.

6) 1995년에 2천6백만명이던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 인구는 2002. 9.에는 6억5백6십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2002. 7. 현재 인터넷 이용인구는 2천5백6십만명에 이른다. <http://www.nua.com/surveys/how-many-online/> 참조.

방송 등 매체에 비하여 명예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⁷⁾ 첫째, 인터넷에서는 누구나라도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용이하게 정보를 발신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발신이 쉬어진 만큼 사람들은 머릿속에 든 생각을 어떠한 음미 과정 없이 그대로 발신하고 마는 경향이 강해진다. 둘째, 인터넷에 접속된 상대방의 반응이 발신자의 오감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표현 내용에 대한 발신자의 자기규제의 동기도 희박해진다. 셋째, 종래의 신문, 방송 등 대규모 미디어에서는 편집자나 법률전문가 등의 제3자에 의한 점검 과정이 존재하지만, 인터넷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발신자가 인터넷의 익명성이란 방패 뒤에 쉽게 숨어버릴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상에 게재된 명예훼손 표현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따라 간편하고 용이하게 복제되어 순식간에 대량으로 전세계에 전파됨으로써 그 피해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도 크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말미암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특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가해자로부터는 피해자가 입을 막대한 손

해를 회복시켜줄 자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법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다수가 접속, 사용하는 온라인통신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주체,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하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많은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쉽게 특정할 수 있고, 또 자력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나아가 문제되는 표현을 비교적 용이하게 방지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수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에 대한 접근을 매개하거나, 위 통신망 내에서 또는 다른 통신망과의 사이에서 디지털화된 내용의 송·수신, 제공, 연결매개 등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체"라고 정의함이 일반적이다.⁸⁾⁹⁾ 위 개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¹⁰⁾나 전자게시판운영자(BBS Operator)¹¹⁾보다는 넓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법'으로 약칭한다)에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¹²⁾보다는 좁은 개념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7) 황찬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인터넷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저스티스』 34권 1호(2001. 2.), 9-10면 : 潮見直之, 「情報社会と名誉毀損」, 『新・裁判実務大系(9) : 名誉・プライバシー 保護係訴訟法』(2001.01), 青林書院, 63면 참조.
 8) 권영준,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터넷과 법률> (남효순·정상조 共編), 법문사(2002), 541면 : 이인석,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사책임", 『저스티스』 67호(2002. 6.), 179면.
 9) 2003. 5. 27. 개정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을 채택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0) 인터넷(내부전산망)과 같은 인터넷 이외의 다수인이 접속, 사용하는 온라인통신망을 포괄하지 못하는 개념이다.
 11) 전자게시판에서의 불법적인 명예훼손 이외의 다른 가상공간에서 예컨대, 게시판 아닌 홈페이지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동영상을 상영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지 못하는 개념이다.
 12) 정보통신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에 관한 논의는, 통상은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더불어 e-mail, 뉴스그룹, 전자게시판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상용서비스제공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¹³⁾ 그런데 이 사건 피고는 인터넷상에 비영리 군정(郡政) 홍보용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곳에 전자게시판을 두고 운영·관리한 경우이어서 통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곧바로 피고에게도 적용이 될 것인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전자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피고도 '통신망 내에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상용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피고 역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상판결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점을 전제로 하여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추어 볼 때, 이들에 대한 규제와 책임추궁은 곧바로 인터넷의 장래 환경을 좌우할 만한 중대성을 지닌 문제이므로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이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¹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강화는 곧 그들에 대한 주의의무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곧바로 검열, 삭제, 내용규제 등 표현

의 자유나 자유로운 정보유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행해질 것이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사전통제작업을 하게 될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에 대한 비용상승으로 이어져 업체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거나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반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관련업체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 개인이 속수무책이 되어 온라인을 통한 인격권 침해를 저지할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론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상충되는 가치의 조화라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논점 외에도 인터넷 전반을 관통하는 특수한 가치체계들을 충실히 고려하여 논의해야 할 주제이다.

5.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과 같은 명예훼손의 사안을 중심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검토한 다음, 대상판결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¹⁵⁾

II.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및 판례¹⁶⁾

1. 미국

13) 황찬현, 앞의 글, 7-8면.

14) 권영준, 앞의 글, 544면 ; 이인석, 앞의 글, 180면.

15)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법 제61조로 형법에 대한 특별조항으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신설되어(2001. 7. 1. 시행),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검찰에 적발된 온라인 명예훼손 사범은 2000년 97명(구속 27명)에서 2001년 231명(31명), 2002년 273명(18명)으로 늘어났고, 경찰에서는 2003년 상반기에 355명(12명)의 네티즌이 명예훼손으로 적발되었다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소송, 피의자가 발뺌고 산다?", 인터넷한겨레 2003. 9. 29.자 참조.

16) 황찬현, 앞의 글, 10-20면 ; 권영준, 앞의 글, 557-568면 ; 이인석, 앞의 글, 181-188면 ; 김재형,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침해", <인터넷과 법률>(남효순·정상조 共編), 법률사(2002), 526-531면. ; 한상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언론중재』(2001년 겨울) 참조. 각 입법례의 원문은 별첨 [1] - [5]에 덧붙였다.

기고논문

(1) 표현매체에 따른 책임 형태¹⁷⁾

common law가 미국으로 수입되면서 명예훼손은 제3의 불법행위 영역을 구축하였다. 그 객관적 요건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제3자에게 진술(publication)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이고, 주관적 요건은 허위에 관하여 진술자에게 어떠한 귀책성(fault)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진술의 의미는 넓게 해석되어 지고 있고, 원래의 발언자가 매체를 개재시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경우 그 매체를 통한 행위 또한 진술에 해당한다.

그리고 타인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중개한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중개자의 속성에 따라 구분하는 3분법이 존재한다.

첫째, 서적·잡지·신문 등의 출판자 또는 발행자(publisher)는 발행하는 내용에 대하여 그 저자와 마찬가지로의 책임을 지게 된다. common law상 저자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이른바 엄격책임을 지고, 저자로서는 진실이라는 항변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출판자가 저자와 마찬가지로의 책임을 지게되는 근거는 출판자는 편집 및 출판의 과정에서 출판물의 내용에 대한 편집 및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점·도서관 등 제3자에 의하여 발행, 출판된 것을 배포하기만 하는 배포자(distributor)는 자신이 배포하는 서적 등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knew) 알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had reason to know)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위 요건은 저작권의 기여책임(contributory

infringement)의 주관적 요건과 동일하고, 과실(negligence)과는 다른 개념이다. 배포자는 자기가 취급하는 출판물 중에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는지를 상시 조사할 의무는 없다.

셋째, 전화회사와 같은 공중통신업자(common carrier)의 경우에는 비록 그 역무를 통하여 명예훼손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공중통신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이용자에 대하여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2) 판례¹⁸⁾

(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시행전의 판례

1) Cubby, Inc. v. CompuServe Inc. 사건¹⁹⁾

피고 CompuServe사는 CompuServe Information Service(이하 CIS라 한다)라는 일반적 온라인정보서비스 또는 전자도서관서비스를 포함하는 컴퓨터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있었다. CIS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하나로서 저널리즘 회의실(Journalism Forum)이 있었다. 한편, Cameron Communications Inc.(이하 CCI라 한다)는 피고와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CompuServe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편집·기술수준 및 문체상의 관습에 따라' 저널리즘 회의실의 '내용을 관리·열람·제작·삭제·편집 또는 관리' 하는 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계약관계에 있었다.

피고는 피고의 컴퓨터 메모리에 투고(upload)되기 이전에는 그 내용을 열람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용자격을 가진 CIS의 회원은 이것을 투고와 동시

17) 황찬원, 앞의 글, 10-13면; Madeleine Schachter, 「Law of Internet Speech」(2nd ed.), Carolina Academic Press(2002), pp. 273-276; 山口勝之, 「ネット・ビジネス・プロバイダーの法的責任(下)」, NBL 643호(1998, 4, 15), 41면 참조.

18) 아래 판례들의 사실관계와 논점 및 그에 대한 평가는 Madeleine Schachter, 앞의 책, pp. 276-301이 자세하다.

19) 776 F. Supp. 135, (S.D.N.Y. 1991, 10, 29).

에 열람할 수 있었다.

위 투고된 내용 중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ompuServe사를 배포자로 보고, 피고가 그 전자게시판의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임하였고, 그 뉴스서비스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검열·삭제권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적 표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 Co. 사건²⁰⁾

원고 Stratton Oakmont사는 투자회사이고, 피고 Prodigy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Money Talk'라는 전자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전자게시판에 익명의 투고자가 Stratton Oakmont사와 그 회장이 증권과 관련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비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출판한 출판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들의 법적 지위는 출판자가 아닌 배포자에 해당할 뿐이므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아울러 문제의 글에 대하여는 몇 차례에 걸쳐 게재를 거절하다가 비교적 문제가 적은 부분의 범위에서 게재를 허용함으로써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 Prodigy사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 편집권을 행사할 것임을 광고하였고, 전자게시판에 적합한 내용에 관하여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글들을 삭제하는 등 편집권을 실제로 행사한

바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배포자가 아닌 출판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통신품위법의 시행

위에서 본 판결들에 의하면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통제권을 행사한 양심적인 서비스제공자가 오히려 자신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지고, 의도적으로 감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인식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있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편집권이 있음을 전제로 책임을 인정한 Stratton 판결을 입법적으로 뒤집기 위하여 1996년 제정된 것이 통신품위법 제230조 (c)(1)의 선한 사마리안(Good Samaritan) 조항으로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는 제3의 정보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어떤 정보에 관하여도 그 정보의 출판자 또는 발언자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목적은 아래에서 보는 Zeran 사건의 판결 이유에 나타나 있듯이 ① 서비스제공자에게 대량의 메시지의 선별책임을 과한다면 그는 스스로 정보의 양과 종류를 제한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② 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유해한 메시지의 선별, 편집을 행하는 경우 출판자로서의 책임을 묻게 된다면 결국 서비스제공자는 자주적 규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보장과 자주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 통신품위법 시행 이후의 판례

1) Kenneth M. Zeran v. American Online, Inc. 사건²¹⁾

피고 AOL은 미국 최대의 컴퓨터 통신서비스업체

20) 63 U.S.L.W. 2765, 1985 WL 323710, 23 Media L. Rptr. (BNA) 1794 (N. Y. Sup. May 24, 1985).

21) 129 F. 3d 327 (1th Cir. 1997).

인데, AOL에서 운영하는 전자게시판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이용자가, 오클라호마 연방정부건물의 폭파범을 칭송하는 내용의 티셔츠를 광고,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광고에는 위 티셔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 Zerani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가 실려 있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영문도 모른 채 위와 같은 광고, 판매에 항의하며 협박하는 전화에 시달려야만 했다.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그 내용물을 삭제하고 당해 온라인 계정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원고는 이와 같은 내용물로 인하여 계속적인 항의전화를 받는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결국, 원고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위 제230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조항의 '출판자'의 개념 속에 '배포자'도 포함된다고 본 점이다. 이러한 해석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 출판자뿐만 아니라 배포자로서도 취급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어서, 사실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완전면책을 선언한 것이다.

2) Sidney & Jacqueline Blumenthal v. Matt Drudge and America Online Inc, 사건²²⁾

인터넷 칼럼리스트인 피고 Drudge는 1997년 피고 AOL과 사이에 피고의 회원들에게 그의 칼럼인 'Drudge Report'를 제공하는 대신 AOL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는 Drudge가 AOL의 서비스표준기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AOL이 게시물을 삭제

할 권한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Drudge는 1997. 8. 10. 그 다음날 백악관의 보좌관으로 임명될 예정이었던 Sidney Blumenthal이 자신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여 왔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시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달리 가해자가 분명히 특정되어 있는데다가 AOL은 가해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의한 면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영국

(1)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

영국은 1996년 기존의 명예훼손법의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같은 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였다. 위 규정은 common law에 있어서 배포자(subordinate disseminator /distributor)의 innocent dissemination 항변²³⁾을 현대화한 것이라고 평가된다.²⁴⁾

위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배포에 종사한 사람이라도, 그가 ① 저작자(author), 편집자(editor) 또는 출판자(publisher)가 아니고, ② 정보의 공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며, ③ 그가 명예훼손적 진술의 공표를 야기하였거나 그 공표에 기여한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이유도 없었던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누구라도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statement)의 저작자, 편집자 또는 출판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2) 992 F. Supp. 44, 52(D.D.C. 1998).

23) 앞서 본 미국의 표현매체에 따른 책임 형태 중 배포자에 대한 설명 부분 참조.

24) Graham J H Smith, 『Internet Law and Regulation』(3rd, ed), Sweet & Maxwell(2002), p.174 ; Matthew Collins, 『The Law of Defamation and The Internet』, Oxford University Press(2001), p.199.

고 규정하였다.

i) 당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인쇄물의 인쇄, 제작, 배포, 판매에만 관여한 경우

ii) 당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적 매체의 처리, 복제, 배포, 전시 및 판매에만 관여한 경우 또는 당해 내용의 검색, 복제, 배포 및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장비,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만 관여한 경우

iii) 접속 제공자 등의 효과적인 통제하에 있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당해 내용이 전송되거나 이용되는 통신시스템에 대한 접속 제공자 및 운영자인 경우

(2) 판례

영국의 고등법원은 Laurence Godfrey v. Demon Internet Limited 사건²⁵⁾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긍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Laurence Godfrey는 영국 런던 소재의 물리학, 수학, 컴퓨터공학 강사이고, 피고 Demon Internet 사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데, 원고는 1997. 1. 13.경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글이 인터넷 뉴스그룹("soc.culture.thai")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1997. 1. 17. 팩스로 피고에게 해당 게시물은 위조된 것으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뉴스서버에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997. 1. 27. 까지 삭제되지 않고 방치되었고(피고는 기술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은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용자가 뉴스서버에 접근하여 당해 게시물을 읽어볼 때마다 그 게시물의 이용자에게 대한 공표가 있었다고 전제한 후 피고는 당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

를 삭제하지 않았으므로 위 명예훼손법 제1조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서 법원은, 피고가 같은 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조 제1호 소정의 발행자 등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원고로부터 명예훼손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바 있는 이상 같은 조항 제2호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사건은 결국 피해자가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 표현의 공표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위에서 본 미국의 판례의 입장과 상치된다. 영국의 법원에서도 이 점과 관련하여 영국의 명예훼손법과 미국의 통신법 위법은 서로 다른 접근방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독일

독일은 1997. 8. 1.부터 시행한 연방정보통신사업법(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ngesetz, IuKDG으로 약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1)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음란물유통 등 불법행위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 조항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미국, 영국의 입법례와 구별되고, 2) 타인의 정보에 관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고의 행위로 한정하였으므로, 서비스 제공자가 개별적, 구체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 경우에만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위 법 제1장 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25) (Case No: 1998-G-No 30) in the High Court of Justice, Queen's Bench Division, (Handed Down at Leicester Crown Court), before Mr. Justice Morland, 26 March, 1999).

다.

① 서비스제공자는 그들이 스스로 이용에 제공한 내용물에 관하여 일반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그들이 이용가능하게 한 제3자 제공의 내용물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내용물을 인식하고, 또 그 내용물에 대한 이용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조치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③ 서비스제공자는 제3자의 내용물에 대한 단순한 접속매개사실만으로는 그 내용물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제3자의 내용물의 자동적이며 일시적인 저장은 접속매개로 간주된다.

④ 서비스제공자가 연방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제85조의 통신비밀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물을 인식하고, 그 내용물을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또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내용물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일반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4. E U

EU의 “역내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정 법률분제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의 최종권고안”(The Directive²⁶⁾ on Electronic Commerce로 약칭)²⁷⁾ 제2장 4절은 정보소통을 매개하는 자(intermediaries)나 cache하는 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권고안은 1)서비스제공자가 단순한 통로(mere

conduit)로서만 기능하는 경우와 caching, hosting의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한 점, 2)독일과 같이 명예훼손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상 불법행위를 포괄하여 규율한 점, 3)상용인터넷서비스제공자만을 규율 대상으로 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²⁸⁾

그 중 제12조(Mere Conduit)는 서비스제공자가 단순한 통로로서만 행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매개기능(intermediary)을 수행하는 자 즉, 단순한 통로(conduit)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세 가지를 든다. ① 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전송을 촉발(initiate)하지 않았을 것(이용자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송수신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② 서비스제공자가 전송되는 정보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송수신을 촉발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수신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면책된다). ③ 서비스제공자가 송수신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그에 수정을 가하지 않았을 것. 같은 조 제2항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있음에 그칠 때에도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제13조는 일시적 저장 즉, caching의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정보가 최초로 만들어진 온라인상의 장소와 최종적으로 이용되는 장소를 증개하는 기술적 자동적 과정에 불과한 만큼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서비스제공자가 Hosting에 임할 때, 즉 웹사이트나 뉴스그룹 등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들이 생산한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조항이 적용되어 행위태양별로 다른 책임을 지게 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① 서

26) “directive”는 EU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제정하는 법규의 일종으로, 각 회원국들은 이에 구속되어 결과를 달성해야 하지만, 그 방법 및 수단은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EC 재판소는 회원국이 directive의 실시를 태만히 한 경우, 개인이 그 directive의 규정을 직접 원용하여 회원국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Matthew Collins, 앞의 책, 210면. 『英米法辭典』(編集代表 田中英夫), 東京大學出版會(1991)

27) EU의 각 회원국들은 2002. 2. 17.까지 위 권고안을 각국의 국내법으로 전환시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진행상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28) Matthew Collins, 앞의 책, 211면.

비스제공자가 이용자가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때(actual knowledge)와 불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불만한 사실이나 정황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책임을 지나. ② 불법적인 활동에 관한 인식이 있었거나 그러한 활동이 있다고 불만한 사건이나 정황을 알고 있었다라도,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행동을 취하였을 때에는 면책된다. 다만,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의 통제나 권한 아래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조에 의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감시(screen or monitor)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다. 단지 법원이나 법집행기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일시적인 감시의무가 발생하게 될 뿐이다.

5. 일본

(1) 판례

(가) 니프티 사건

PC통신 내에 개설된 포럼(토론방)에서 행해진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하여 그 포럼의 시삽(sysop)²⁹⁾ 및 PC통신회사의 책임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제1심 법원은 시삽이 게시판의 발언들을 항상 감시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명예훼손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인정된다면 그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삽의 행위는 위 작위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하였다. 또한, PC통신회사에 대하여는 내부규약상 시삽에 대한 지시권 및 해임권을 가진 이상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³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인 동경고등법원에서는 2001. 9. 5. 제1심 판결 중 시삽 및 PC통신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³¹⁾ 즉 동경고등법원은 직접 침해자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자신을 구제할 수단을 가지지 않고, 회원 등으로부터 지적 등에 의해 대책을 강구하여도 효과적이지 않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관리자에게 삭제의무가 발생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 사건의 경우 삭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제1심 판결은 명예훼손 발언을 인식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조리상 작위의무가 발생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위의무 위반이 된다고 판단한 것에 비해, 항소심 판결은 명예훼손 발언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삭제하여야 할 조리상 의무는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삭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상 발언의 삭제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항소심 판결에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① 일정한 방침을 갖고 포럼을 운영하였고, ② 시삽이 지체 없이 문제의 발언을 한 발언자의 주의를 환기하였고, ③ 표적이 된 사람으로부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받고 삭제의 절차에 관한 양해를 구하고, ④ 그 후 원고 소송

29) system operator의 합성어이다.

30) 東京地裁 平成 9. 5. 26. 판결, 判夕 947호, 125면.

31) 東京高裁 平成 13. 9. 5. 판결, 判夕 1068호, 91면, 判時 1786호, 80면(상고되지 않아 확정되었다).

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으로 삭제요구가 있어 삭제하였고, ⑤ 민사소송 제기 후 새롭게 명시된 발언에 대하여도 삭제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허용한도를 넘어 지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나) 동경도립대 사건³²⁾

대학의 전산시스템 내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목적과 내용을 가진 홈페이지가 개설되었고, 피해자인 원고들로부터 그 홈페이지의 제거에 대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거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은 사례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들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명예훼손행위의 피해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사법상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당한 것은 아니고, 네트워크 관리자가 명예훼손 문서가 발신된 것을 사실로 인식한 경우에 있어서 위 발신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진다고 하려면, 명예훼손문서에 해당하는가, 가해행위의 태양이 심히 악질적인 것인가와 피해의 정도도 심대한가 등이 일견 명백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점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니프티 사건과는 달리 일회적인 명예훼손문서의 홈페이지 게재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니프티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 있다. 다만, 네트워크 관리자의 책임문제에 대하여는 판결 문안으로 볼 때, 니프티 사건의 항소심 판결보다도 더 책임을 한

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 동물병원 사건³³⁾

인터넷 공개게시판에서 비판, 비난을 받은 동물병원이 게시판을 운영·관리하는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당해 발언의 삭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네트워크 운영·관리자는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행하여진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곧바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발언에 공공성·공익목적·진실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삭제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니프티 사건의 제1심 판결보다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넓게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³⁴⁾

위 판결들의 결론에 위와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①니프티 사건에서는 영리목적의 상용서비스제공자인에 반하여, 동경도립대 사건에서는 대학이라는 교육의 장에서의 무상서비스이기 때문이라는 견해,³⁵⁾ ②시삽과 같은 존재가 개재한 형태(니프티 사건)와 일방적 정보발신형태(동경도립대 사건)의 차이 때문이라는 견해,³⁶⁾ ③논의의 참가가 요구되는 포럼관리자(니프티 사건)와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정비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는 네트워크관리자(동경도립대 사건)의 실태에 따른 차이라는 견해³⁷⁾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특정전기통신업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

32) 東京地裁 平成 11. 9. 24. 판결, 判時 1707호, 139면.

33) 東京地裁 平成 14. 6. 26. 판결, 判タ 1110호, 92면. 이에 대한 항소심인 東京高裁 平成 14. 12. 25. 판결(미공간)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34) 町村泰貴, "인터넷의公開掲示板で批判・非難を受けた動物病院が, 掲示板を運営している個人に対して名誉毀損に基づく損害賠償および当該発言の削除を求め, これが認められた事例", 判タ 53권 32호(2002. 12.), 82면.

35) 松本恒雄, "違法情報についてのフロバイダの民事責任", JURIST 1215호(2002. 1.), 111면.

36) 丸橋透, "フロバイダ責任の制限と発信者情報の開示: フロバイダの視点を中心とした,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の解説", 判タ 53권 13호(1085호), 61면.

37) 福島力洋, "インターネット上の名誉侵害", 法学セミナー 47권 1호(565호)(2002. 1.), 13면.

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³⁸⁾

최근에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입법조치로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2. 4. 1. 부터 시행되었다. 위 법은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명예훼손과 저작권침해의 경우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위 법 제3조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①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권리 침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가 아닌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② 침해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부당한 권리침해를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침해권리자로부터 송신방지신청이 있고 이에 대해 침해자가 7일 내에 부동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대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예를 들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시삽이 문제된 발언을 인식하였지만, 그 재량으로 발언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서 곧바로 책임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되고 있다. □

38) 이 법에 대한 해설로는 丸橋透, 앞의 글 ; 大村真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の概要”, 金融法務事情 1638호(2002. 3.) 참조.

2003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03년도 한 해 동안 총 724건의 중재신청사건을 접수·처리, 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기록했다.

2003년도 중재신청사건 처리결과, 합의율은 39.6%(287건)로 전년도 35.6%(182건)보다 4% 증가한 반면 취하율은 38.1%(276건)를 나타내 전년의 43.6%(223건)에 비해 5.5% 감소했다.

또 중재불성립결정률은 14.0%(101건)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반면 중재결정률은 4.1%(30건)로 2.8% 감소했다.

이러한 처리결과 중 40%에 육박하는 합의율은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것으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위원회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실질적 피해구제율은 68.0%로 전년의 62.4%에 비해 5.6% 증가했는데 이는 신청사건 10건 중 약 7건에서 피해가 구제되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2003년 한 해 동안 98개 매체의 보도내용을 심의, 237건의 심의기준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 중재신청처리현황 ◇

1. 중재처리결과현황

중재처리결과에 합의 287건(39.6%), 중재결정 30건(4.1%), 중재불성립결정 101건(14.0%), 기각 27건(3.7%), 각하 3건(0.4%), 취하 276건(38.1%)으로 나타났다.

신청사건의 중재처리결과별 피해구제보도율은 합의 98.3%, 중재결정 53.3%, 중재불성립결정 10.9%, 취

하 57.2%로 전체 피해구제보도율은 65.1%였다.

이는 전년도 전체 피해구제보도율 61.1%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이다.

중재신청사건 청구사건별 신청건수는 신청사건 총 724건 중 반론보도청구 216건(29.8%), 정정보도청구 503(69.5%), 추후보도청구 5건(0.7%)으로 정정보도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반론보도청구에 비해 2.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정정보도청구가 반론보도청구에 비해 1.5배 정도 많았던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 선호경향이 예년보다 더 한층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청구사건별 피해구제보도율에 있어서는 반론보도청구가 71.8%, 정정보도청구가 61.8%, 추후보도청구가 100.0%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해구제측면에서는 반론보도청구가 약 10.0% 앞섰다.

청구사건별 합의율은 반론보도청구사건이 46.8%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36.8%보다 10.0% 높게 나타났다. 또 청구별 취하율은 정정보도청구사건이 40.1%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31.9%보다 8.5% 높은 반면, 취하후 피해구제보도율은 반론보도청구사건이 60.9%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55.7%보다 5.2% 높게 나타났다.

중재결정은 총 30건으로 청구권별로는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11건,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19건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론보도청구보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중재결정권 행사가 다소 앞섰고, 중재부별로는 서울이 27건, 지방이 3건으로 서울중재부에서 중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의 경우 전년 대비 3건 증가한 것이지만 지방은 오히려 8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재결정사건 30건 중 15건에 대해서 이의신청

청이 있었고 이의신청된 반론보도청구사건 5건 중 2건이 법원에 제소되었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II. 중재신청인 유형별 현황

중재신청인 유형으로는 개인신청사건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247건(34.1%)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이 신청한 사건이 164건(22.7%), 일반단체와 기업체가 신청한 사건이 각각 71건(9.8%), 조합·협회가 신청한 사건이 60건(8.3%),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건이 43건(5.9%), 공공단체가 신청한 사건이 17건(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국가기관 신청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18.4% 증가한 반면 개인과 기업체 신청비율이 전년 대비 각각 8.2%, 7.8% 감소했다.

개인이 신청한 사건 247건을 개인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이 53건(21.5%)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개인사업가 51건(20.7%), 회사원이 27건(10.9%), 국회의원, 군인·경찰, 자치단체장·의회의원이 각각 12건(4.9%), 교육자와 학생이 각 11건(4.5%) 등의 순이었다.

전체 중재신청사건에서 개인신청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반면 공무원의 신청비율은 오히려 전년의 6.9%에 비해 14.6% 증가한 점이 다소 두드러진다.

회사원과 군인·경찰의 신청비율은 전년에 비해 각각 3.9%씩 감소했다. 국회의원 신청사건의 경우 36건이 신청돼 신청비율로 10.6%를 차지했던 2000년을 정점으로 2001년에는 8건(2.6%), 2002년에는 5건(2.3%)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2003년 들어 12건(4.9%)을 보여 소폭 증가했다.

그 외 개인 신청사건의 직업별 분포는 예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신청인별 피해구제보도율은 개인의 경우 63.2%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고 기관·단체의 경우 66.0%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신청인이 주장한 언론침해의 유형으로는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698건(96.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용훼손이 10건(1.4%), 기타 16건(2.2%)으로 나타났다.

III. 중재대상 매체별 현황

매체의 유형별로 중재신청사건을 분류해 보면 신문매체 545건(75.3%), 방송매체 133건(18.4%), 잡지매체 32건(4.4%), 통신 13건(1.8%), 기타 1건(0.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신문매체를 상대로 한 신청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각 매체별로는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한 중재신청사건이 303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방일간지 172건(23.8%), TV 118건(16.3%), 주간신문 60건(8.3%)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전체신청건수 중 중앙일간지 상대 신청비율은 전년도 30.5%(156건)에 비해 11.4% 증가하였고, 반대로 지방일간지 상대 신청비율은 전년도 27.2%(139건)에 비해 3.4% 감소하였다. 주간신문 상대 신청비율 또한 전년도 17.4%(80건)보다 9.1% 줄어들었다.

방송매체 상대 신청비율은 전년도 17.6%(90건)에 비해 0.8% 증가하였는데 이 비율은 2000년 20.6%, 2001년 17.3%로 두 해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들어서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매체 내에서 중앙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55.6%로 전년에 비해 15.8% 증가했다. 중앙일간지 다음으로는 지방일간지 31.6%, 주간신문이 11.0% 순이었다.

방송매체 내에서는 TV가 차지하는 비율이 88.7%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매체유형별 피해구제보도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중재신청사건을 차지하는 중앙일간지의 경우 72.9%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앙일간지의 피해구제보도율의 상승이 전체 실질적

피해구제율의 상승을 직접적으로 견인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방일간지의 피해구제보도율도 63.4%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다.

주간신문의 피해구제보도율은 73.3%로 전년대비 2.0% 감소하였지만 매체유형 중에서는 여전히 피해구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체이다.

방송매체의 피해구제보도율은 43.0%로 전년 대비 5.8% 감소, 매체 중 피해구제보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중재대상기사 현황

중재대상기사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건·사고 등 사회문제 관련 기사가 368건(50.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정치관련 기사 188건(26.0%), 경제관련 기사 72건(9.9%), 의료·건강 관련 기사 23건(3.2%), 언론 관련 기사 14건(1.9%), 기타 59건(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대상기사의 종류는 일간신문·통신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가 425건(85.3%), 논단 및 칼럼 23건(4.6%), 사설 18건(3.6%), 심층조사기사가 13건(2.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에는 뉴스·해설 프로그램이 89건(66.9%), 시사교양 프로그램 21건(15.8%), 교양·정보 프로그램이 20건(15.0%)의 순이다.

사설기사와 교양·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중재신청이 전체신청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각각 3.3%, 6.1%의 증가를 보였다.

기사의 취재원을 살펴보면 민원 및 제보가 33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직접 인지하여 취재한 경우가 145건(20.0%), 보도자료발표에 근거해 기사화한 경우가 127건(17.5%) 등으로 나타났다.

Ⅴ. 중재부별 처리현황

중재부별 처리결과는 서울의 5개 중재부가 496건

(68.5%), 지방 10개 중재부가 228건(31.5%)을 처리하여 여전히 서울중재부에서 처리한 사건이 지방 보다 많았다. 지방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 64건(8.8%), 광주중재부 40건(5.5%), 전북중재부 25건(3.5%), 대구중재부와 대전중재부가 각각 20건(2.8%), 부산중재부가 18건(2.5%) 등의 순서로 신청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부별 피해구제보도율은 서울중재부가 65.9%, 지방중재부가 63.2%로 서울중재부가 지방중재부보다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Ⅵ. 법원제소 현황

반론보도청구사건 중 법원제소건수는 총 10건으로 전년도 12건에 비해 감소했다.

중재불성립결정된 반론보도청구사건 30건 중 8건, 중재결정 후 이의신청된 반론보도청구사건 5건 중 2건이 법원에 제소되었다.

법원제소결과, 총 10건 중 6건이 인용판결을 받았고 기각과 취하된 사건이 각 1건씩이며 나머지 2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법원제소건수는 2001년에 37건을 기록한 이후 2002년 12건, 2003년 10건 등 비교적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시정권고현황 ◇

2003년에는 일간지 85종, 주간지 6종, 주간신문 2종, 월간지 4종, 통신 1종 등 총 98개 매체를 심의한 결과 237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침해유형별로는 목격자·신고자·피해자의 신원 공표기사가 153건(64.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표기사가 41건(17.3%), 향정신성의약품 용량·용법·효능 공표기사가 20건(8.4%), 성폭행 피해자 신원 공표기사가 13건(5.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중재신청처리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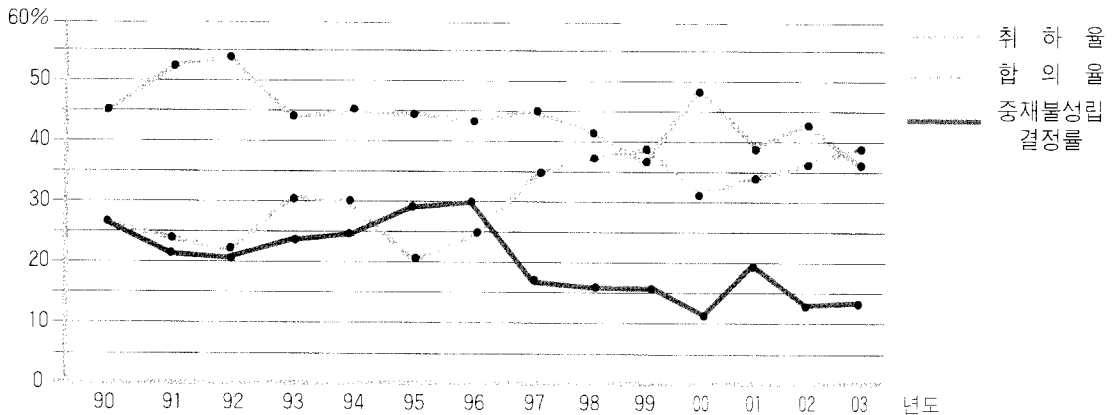
1. 중재신청처리현황

중재신청사건 처리결과

()안은 %

구 분	처 리 결 과						
	합 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신청건수	724	287 (39.6)	30 (4.1)	101 (14.0)	27 (3.7)	3 (0.4)	276 (38.1)

1990년 이후 합의율 · 취하율 · 중재불성립결정률 추이비교



중재처리결과별 피해구제보도 현황

()안은 %

구 분	처리 건수	보도 건수 (보도율)	피 해 구 제 보 도 내 용							
			반 론 보 도	반 론 및 PR 보 도	정 정 보 도	정 정 및 사 과 보 도	정 정 및 PR 보 도	정 정 및 반 론 보 도	추 후 보 도	P R 보 도
합의	287	282 (98.3)	178		75	2	1	20	1	5
중재결정	30	16 (53.3)	13		3					
중재불성립 결정	101	11 (10.9)	10		1					
기각	27	1 (14.8)			1					
각하	3	0								
취하	276	158 (57.2)	71	6	63	4		1	4	9
계	724	471 (65.1)	272	6	146	6	1	21	5	14

중재신청사건청구별 처리결과

(단위: %)

청구명	처리결과 신청건수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반론보도청구	216	101 (46.8)	11 (5.1)	30 (13.9)	4 (1.9)	1 (0.5)	69 (31.9)
정정보도청구	503	185 (36.8)	19 (3.8)	71 (14.1)	23 (4.6)	2 (0.4)	203 (40.4)
추후보도청구	5	1 (20.0)					4 (80.0)
계	724	287 (39.6)	30 (4.1)	101 (14.0)	27 (3.7)	3 (0.4)	276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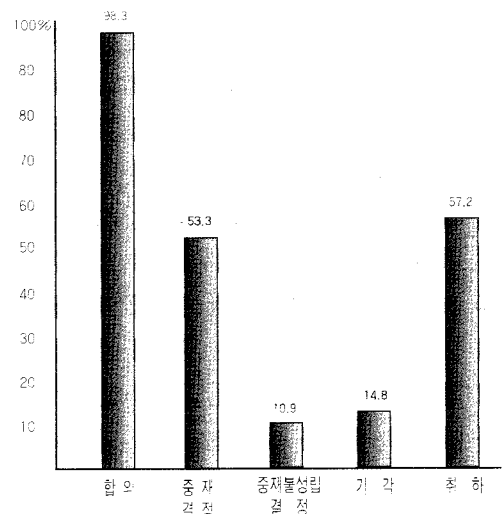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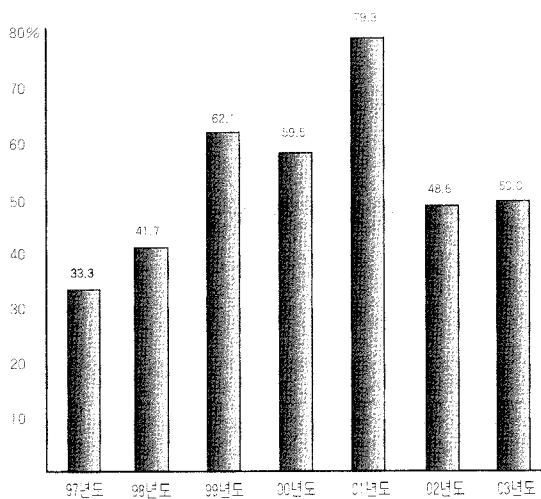
중재신청사건청구별 피해구제보도 현황

(단위: %)

청구명	신청건수	피해구제 보도건수 (보도율)	피해구제보도내용							
			반론 보도	반론 및 PR보도	정정 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 후 보 도	P R 보 도
반론보도청구	216	155 (71.8)	129	2	14			5		5
정정보도청구	503	311 (61.8)	141	4	132	6	1	16	2	9
추후보도청구	5	5 (100)	2						3	
계	724	471 (65.1)	272	6	146	6	1	21	5	14

중재결정 이의신청률 추이

중재결과별 피해구제보도율



II. 중재신청인 유형별 현황

신청인별 침해유형 및 중재처리결과

()안은 %

신청인 유형	구 분	신청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신용훼손	기타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개인		217 (31.1)	233	2	12	85	8	28	10	1	115
국가기관		164 (22.7)	164			77	14	19	3		51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43 (5.9)	43			12	1	3	10		17
공공단체		17 (2.4)	16		1	8	2	4			3
정당		1 (0.1)	1								1
의료기관		9 (1.2)	9			3					6
조합 및 협회		60 (8.3)	60			39	1	4	1	2	13
일반단체		71 (9.8)	70		1	23	2	18	3		25
종교단체		16 (2.2)	16			4		5			7
기업체		71 (9.8)	61	8	2	24	1	16			30
언론사		10 (1.4)	10			7	1	1			1
금융기관		1 (0.1)	1					1			
교육기관		14 (1.9)	14			5		2			7
계		724 (96.4)	698 (1.4)	10 (2.2)	16 (2.2)	287 (39.6)	30 (4.1)	101 (14.0)	27 (3.7)	3 (0.4)	276 (38.1)

신청인별 피해구제보도의 내용

()안은 %

신청인 유형	구 분	신청 건수	보도 건수 (보도율)	반론 보도	반론 PR보도	정정보도	정정보도 사과보도	정정보도 PR보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 보도	PR 보도
국가기관	164	123 (75.0)	75		43			2		3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43	20 (46.5)	12		4			3		1	
공공단체	17	10 (58.8)	5		4					1	
정당	1	0									
의료기관	9	5 (55.6)	4	1							
조합 및 협회	60	50 (83.3)	38		3			6		3	
일반단체	71	41 (57.8)	24	4	11			1		1	
종교단체	16	9 (56.3)	6		3						
기업체	71	38 (53.5)	22		14			1		1	
언론사	10	9 (90.0)	7		2						
금융기관	1	1 (100.0)	1								
교육기관	14	9 (64.3)	4		3				2		
계	724	471 (65.1)	272	6	146	6	1	21	5	14	

신청인(개인의 경우) 직업별 침해유형 및 중재처리결과

()안은 %

구분 신청인 직업	신청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중재 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국회의원	12 (4.9)	12			2		3			7
법조인	2 (0.8)	2					2			
공무원	53 (21.5)	53			24	1	8	1		19
군인/경찰	12 (4.9)	12			2		2			8
기초·광역 단체장/의원	12 (4.9)	12			4					8
정당/정치인	9 (3.6)	9			2	1	1			5
의료인	4 (1.6)	4								4
문화예술인	5 (2.0)	5			3		1			1
종교인	3 (1.2)	3			1		1			1
회사원	27 (10.9)	17		10	6		3	4		14
언론인	5 (2.0)	5			3	1				1
교육자	11 (4.5)	11			6	2				3
개인사업가	51 (20.7)	49	2		17	3	6	3	1	21
세차사업 종사자	3 (1.2)	3			1					2
연예인	8 (3.2)	8			2					6
학생	11 (4.5)	9		2	3					8
금융인	3 (1.2)	3			1					2
조합대표 협회장	3 (1.2)	3			2					1
주부	6 (2.4)	6			5		1			
부직	2 (0.8)	2			1					1
기타	5 (2.0)	5						2		3
계	247	233 (94.3)	2 (0.8)	12 (4.9)	85 (34.4)	8 (3.2)	28 (11.3)	10 (4.1)	1 (0.4)	115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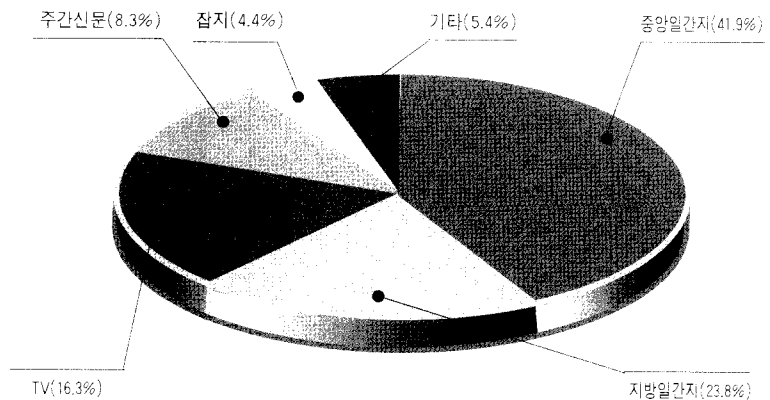
Ⅲ. 중재대상 매체유형별 현황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안은 %

매체유형		처리결과	신청 건 수	합 의	중 재 결 정	중재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신	분	중앙일간지	303	130 (42.9)	21 (6.9)	31 (10.2)	18 (5.9)		103 (34.0)
		지방일간지	172	69 (40.1)	3 (1.7)	23 (13.4)	1 (0.6)	2 (1.2)	74 (43.0)
방	송	주간신문	60	32 (53.3)	1 (1.7)	7 (11.7)			20 (33.3)
		기타신문	10	3 (30.0)					7 (70.0)
방	송	TV	118	29 (24.6)	2 (1.7)	31 (26.3)	4 (3.4)	1 (0.9)	51 (43.2)
		라디오	3	2 (66.7)		1 (33.3)			
		CATV	12	4 (33.3)	2 (16.7)	1 (8.3)			5 (41.7)
		잡지	32	13 (40.6)	1 (3.1)	5 (15.6)	3 (9.4)		10 (31.3)
		통신	13	4 (30.8)		2 (15.4)	1 (7.7)		6 (46.2)
		기타	1	1 (100)					
		계	724	287 (39.6)	30 (4.1)	101 (14.0)	27 (3.7)	3 (0.4)	276 (38.1)

매체유형별 중재신청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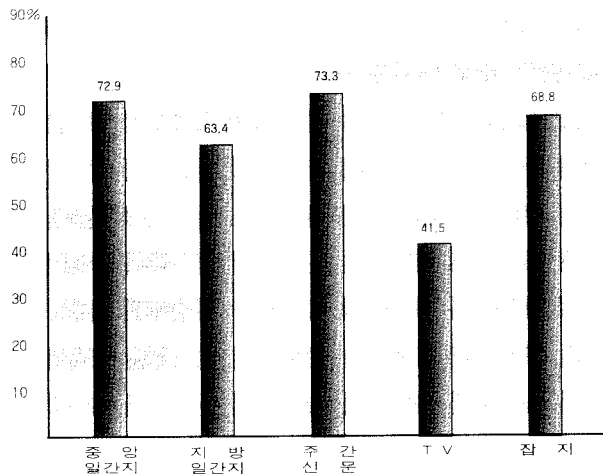


매체유형별 피해구제보도의 내용

()안은 %

구분 매체유형	신청 건수	보도 건수 (보도율)	피해구제보도내용							
			반론 보도	반론및 PR보도	정정 보도	정정및 사과보도	정정및 PR보도	정정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PR 보도
신 분										
중앙일간지	303	221 (72.9)	124	2	73	4	1	12	2	3
지방일간지	172	109 (63.4)	65	4	30	1		3	2	4
주간신문	60	44 (73.3)	22		15			5		2
기타신문	10	9 (90.0)	4		5					
방 송										
TV	118	49 (41.5)	29		15	1			1	3
라디오	3	2 (66.7)	1							1
CATV	12	7 (58.3)	7							
잡 지	32	22 (68.8)	15		7					
통 신	13	7 (53.9)	5					1		1
기 타	1	1 (100)			1					
계	724	471 (65.1)	272	6	146	6	1	21	5	14

매체유형별 피해구제보도율 비교



언론사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신청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중재 결정	중불성 결	재립 정	기각	각하	취하
중앙 일간 지	경향신문	12	11		1	8		1	1		2	
	국민일보	6	6			3			1		2	
	내일신문	6	5		1	1			1		1	
	노동일보	1	1								1	
	동아일보	43	43			18	1	9			15	
	문화일보	35	35			13	1	4	2		12	
	서울신문	12	11		1	6	2		2		2	
	세계일보	18	17		1	8	1		1		8	
	신아일보	4	3	1		3					1	
	조선일보	34	34			8	5	7	3		11	
	중앙일보	33	33			20	1	1	1		10	
	한겨레	17	17			4	2	4	1		6	
	한국일보	14	13		1	4		3	2		5	
	소계	235	229	1	5	96	16	29	15	0	79	
지방 일간 지	서울 시민일보	2	2			2						
	부산 국제신문	8	8			3		1			4	
	부산 부산일보	3	3								3	
	대구· 경북	경북매일	3	2	1				2			1
		경북일보	5	5			3					2
		대구신문	4	4			3					1
		매일신문	3	3					1			2
	영남	영남일보	3	3			1					2
		광주매일	2	2			2					
		광주타임스	5	5			3					2
		대한일보	2	2			2					
	광주· 전남	부등일보	5	5					2			3
		전광일보	4	4					2			2
		전남매일	3	3			1		2			
전남일보		3	3								3	
호남	호남매일	2	2					2				
	호남신문	3	3					2			1	
	호남일보	2	2			1					1	
	대전매일	3	3			2					1	
대전· 충남	대전일보	4	4			2		1			1	
	충남일보	3	3			2					1	
	충청매일	3	3			1		1		1		
인천· 경기	경기매일	2	2			2						
	경기신문	2	2			1					1	
	경기일보	7	6		1	2					5	
경인매일	2	2								2		

매채 유형	구분	신청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손	신용손	기타	합의	중재 결정	중재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특수 일간지	환경일보	1	1								1
	소계	10	9	0	1	3	0	0	0	0	7
중앙 방송	KBS-1TV	33	33			7	1	6	2	1	16
	KBS-2TV	8	7	1		4		4			
	MBC-TV	30	27	1	2	8	1	6			15
	SBS-TV	21	20	1		4		9	1		7
	MBC-R	1	1			1					
	CBS-R	2	2			1		1			
	소계	95	90	3	2	25	2	26	3	1	38
지방 방송	대전KBS-1TV	1	1								1
	부산KBS-1TV	1	1			1					
	원주KBS-1TV	1	1								1
송	창원KBS-1TV	2	2					1	1		
	강릉MBC-TV	1	1			1					
	광주MBC-TV	1	1								1
	대전MBC-TV	3	3					1			2
	부산MBC-TV	1	1								1
	원주MBC-TV	2	2			2					
	해주MBC-TV	2	2					1			1
	진주MBC-TV	2	2					2			
	소계	17	17	0	0	4	0	5	1	0	7
	지역 민방	i-TV	3	2	1		2				
JIBS-TV		1	1								1
PSB-TV		2	2					1			1
TBC-TV		1	1								1
TJB-TV		1	1								1
UBC		1	1								1
케이블 TV	소계	9	8	1	0	2	0	1	0	0	6
	기독교TV	1	1								1
	ABN	1	1			1	1				
	MBN	1	1								
	YBN-TV	1	1			1	1				
	YTN	8	8			2	2	1			4
통신	소계	12	12	0	0	4	4	1	0	0	5
	뉴스스	3	3			2	2		1		
	연합뉴스	10	10			2	2	2			6
	소계	13	13	0	0	4	4	2	1	0	6
	뉴스위크	1	1			1	1				
주간지	주간동아	2	2			2	2				
	주간조선	3	3					1			2
	한겨레21	4	4			1			3		1
	소계	10	10	0	0	4	3	1	3	0	3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신청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중재 결정	중재 성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시사 주간 신문	시민의신문	1	1			1					
	일요시사	2	2			2					
	일요신문	3	3			1		1		1	
	소계	6	6	0	0	4	0	1	0	1	
지 역 주 간 신 문	강남신문	1	1					1			
	저널동행매일신문	1	1			1					
	광주전남매일뉴스	2	2			2					
	구로오늘신문	1	1							1	
	군포신문	1	1					1			
	김포뉴스	1	1							1	
	김천신문	1	1			1					
	노원뉴스	1	1			1					
	당진시대	2			2	1				1	
	더부천	1	1			1					
신 문	동두천신문	1	1							1	
	부천신문	1	1							1	
	수원신문	2	2							2	
	여주신문	1	1					1			
	Weekly경남	1	1			1					
	장성군민신문	1	1			1					
	정읍신문	1	1			1					
	지리산투데이	1	1			1					
	신도타임스	1	1							1	
	파주타임스	1	1			1					
주 간 신 문	함평신문	1	1			1					
	홍천신문	1	1							1	
	소계	25	23	0	2	13	0	3	0	9	
	장흥사회복지신문	1	1			1					
	개령신문	1	1							1	
	교동신문	2	2			1				1	
	교동환경	1	1			1					
	교회복음신문	1	1					1			
	기독교신문	2	2			1				1	
	기독교타임스	1	1			1					
신 문	동북야신문	1	1			1					
	법률신문	1	1							1	
	복지연합신문	3	3			1	1			1	
	아이위클리	2	2			1				1	
	인문노보	1	1			1					
	여성신문	2	2			2					
	Weekly Friday	1		1						1	
	주간불교신문	1	1					1			

2003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신청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중재 재결정	중재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특수주간신문	주간조선경제	2	2								2
	중앙교육신문	1	1			1					
	크리스찬신문	1	1			1					
	한국교회신보	1	1			1					
	한국섬유경제	1	1			1					
	화학저널	1		1							1
	환경뉴스	1	1					1			
	소계	29	27	2	0	15	1	3	0	0	10
월간	고대교우회보	1	1								1
	레이디경향	2	2			1		1			
	스크린	1	1								1
	시사전북	1	1					1			
	신동아	2	2					1			1
	신토불이건강	1	1				1				
	양팡	1	1			1					
	월간말	1	1			1					
	월간목욕위생	1		1				1			
	월간전라도닷컴	2	2			2					
지	월간중앙	4	4			3					1
	월간조선	2	2								2
	인물과사상	1	1			1					
	참여사회	1	1								1
	폴라리스	1	1			1					
기타	소계	22	21	1	0	10	1	4	0	0	7
	복지21	1	1			1					
총계		724	698	10	16	287	30	101	27	3	276

Ⅳ. 중재대상 기사 현황

매체유형별 중재대상기사 내용 분류

매체유형	구분	기사 내용	신청 건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과학 환경	문화	종교	의료 건강	스포츠 연예	부고 및 인물동정	교육	언론	기타
일간신문·통신	중앙지		235	110	22	81	1	4		7		2	4	4	
	지방지		172	31	5	126	1	2		5				2	
	경제지		50	17	25	8									
	스포츠지		18			6			2		10				
	특수일간지		10	3	3	3	1								
	통신		13	1	2	7			1				1	1	
방송	소계		498	162	57	231	3	6	3	12	10	2	5	7	
	전국방송		96	7	2	62	3		4	7		1	4	5	1
	지역방송		25	2	2	21									
	CATV		12			6		1	1	2			2		
	소계		133	9	4	89	3	1	5	9		1	6	5	1
주간신문	기사종합지		6	1		5									
	지역생활정보지		25	4	4	13	2	1		1					
	종교지		9	1		5			2					1	
	교육/인터넷관련지		3		2	1									
	경제/산업관련지		4		2	2									
	인론관련지		1											1	
	환경/교통관련지		4			4									
	상해보지		3		1	2									
	여성지		2			2									
	기타		3	1		1			1						
잡지	소계		60	7	9	35	2	2	2	1				2	
	기사종합지		19	9		8							1		1
	지역생활정보지		3	1	2										
	문화/교육관련지		2			1			1						
	여성지		2						2						
	인론관련지		1									1			
시	건강관련지		1			1									
	기타		4			3				1					
	소계		32	10	2	13			3	1		1	1		1
	기타		1												1
총계		724	188	72	368	8	12	10	23	10	4	12	14	3	

매체유형별 중재대상 기사의 종류

매체 구분	기사 종류	신청건수(%)
일간신문·통신	스트레이트기사	425 (85,3)
	해설	4 (0,8)
	사설	18 (3,6)
	논단 및 칼럼	23 (4,6)
	가십 기사	5 (1,0)
	인물·동정	5 (1,0)
	인터뷰	2 (0,4)
	심층조사기사	13 (2,6)
	비평	2 (0,4)
	독자부고	1 (0,2)
계	498	
방송	뉴스·해설	89 (66,9)
	사사고발	21 (15,8)
	교양·정보	20 (15,0)
	다큐멘터리	3 (2,3)
	계	133

매체유형별 취재원 분류

()안은 %

매체유형	취재원						
	계	직접 인지 취재	민원 및 제보	민·형사 사건 기록	보도 자료 발표	통신· 타언론 매체	기타
일간신문·통신	498	93	218	35	97	20	35
방송	133	30	75	6	17	4	1
주간신문	60	10	28	4	12	1	5
잡지	32	12	14		1	2	3
기타	1		1				
계	724	145 (20,0)	336 (46,4)	45 (6,2)	127 (17,5)	27 (3,7)	44 (6,1)

V.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

()안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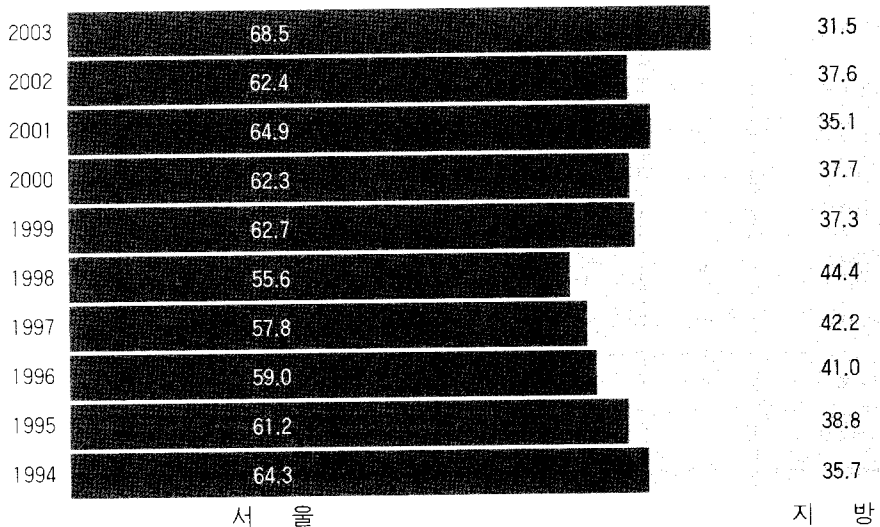
중재부	구분 신청 건수	처리결과							비고
		합의	중재결정		중재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서울중재부	496	195	15	12	67	25	1	181	
부산중재부	18	5			3			10	
대구중재부	20	8			3			9	
광주중재부	40	16			10			14	
대전중재부	20	8			3		1	8	
경기중재부	64	31			8			25	
강원중재부	10	5						5	
충북중재부	6	3					1	2	
전북중재부	25	11		3	2	1		8	
경남중재부	16	3			3	1		9	
제주중재부	9	2			2			5	
계	724	287 (39,6)	15 (2,1)	15 (2,1)	101 (14,0)	27 (3,7)	3 (0,4)	276 (38,1)	

중재부별 피해구제보도의 내용

()안은 %

구 분 중재부	신청 건수	보도 건수 (보도율)	피 해 구 제 내 용							
			반 론 보 도	반론 및 PR보도	정 정 보 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 후 보 도	P R 보 도
서울중재부	496	327 (65.9)	192	2	98	4	1	18	3	9
부산중재부	18	10 (55.6)	9		1					
대구중재부	20	15 (75.0)	9		6					
광주중재부	40	22 (55.0)	12		10					
대전중재부	20	14 (70.0)	5		9					
경기중재부	61	46 (71.9)	23	4	16	1		1		1
강원중재부	10	6 (60.0)	4		1					1
충북중재부	6	5 (83.3)	1		1					
전북중재부	25	14 (56.0)	7		4	1		1		1
경남중재부	16	10 (62.5)	5					1	2	2
제주중재부	9	2 (22.2)	2							
계	724	471 (65.1)	272	6	146	6	1	21	5	14

서울·지방간 중재신청 구성비율추이



VI.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법원제소현황

구 분 매 체 명	제소건수	1 심 결 과					
		인 용	기 각	각 하	화 해	취 하	계 류
동 아 일 보	1					1	
조 선 일 보	1	1					
매 일 경 제	1						1
강 남 신 문	1	1					
M B C - T V	2	2					
대 전 M B C - T V	1	1					
진 주 M B C - T V	1	1					
S B S - T V	1		1				
M B N	1						1
계	10	6	1			1	2

◇ 2003년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

매 체	시정권고 건수	침 해 유 형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사회 질서 침해	공중도덕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기 타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중 앙	경 향 신 문	4				3		1	
	국 민 일 보	1				4			
	내 일 신 문	2		1		1			
	대 한 매 일	5				4		1	
지	동 아 일 보	6		1		5			
	문 화 일 보	3				3			
	세 계 일 보	2				2			
	조 선 일 보	3				3			
지	중 앙 일 보	3				3			
	한 겨 레	4		1		3			
	한 국 일 보	5				5			

매체		침해유형	침해유형							공중도덕침해	
			병역훼손 및 사생활 침해				기타	사회질서 침해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중 앙 지	goodday	3				2				1	
	일간스포츠	2				1				1	
	스포츠서울	2				2					
	스포츠조선	0									
	스포츠투데이	1				1					
	매일경제	1				1					
	서울경제	2				2					
	한국경제	0									
	해럴드경제	0									
	소계	52	0	0	3	45	0	0		4	0
서울	시민일보	1			1						
	국제신문	2				1					1
부산	부산일보	4			2	2					
	경북매일	5	2			3					
대구· 경북	경북일보	2			1	1					
	경상매일	2					1			1	
	대구신문	6	1		1	3				1	
	대구일보	3	1		1	1					
영남	매일신문	6	1			5					
	영남일보	3			1	1	1				
광주	광주매일	1			1						
	광주일보	3			1	1				1	
	광주타임스	4	1		2	1					
광주· 전남	북포일보	0									
	대한일보	1	1								
	무등일보	4			2	2					
	선광일보	2			1	1					
	전남매일	1				1					
	전남일보	3				3					
	호남매일	1			1						
대전· 충남	호남신문	3			1	2					
	대전매일	1				1					
	대전일보	1				1					
	충도일보	1				1					

매체	시정권고 건수	침해유형	침해유형					공중도덕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병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기 타	사회 질서 침해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적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별출	충남일보	1	1							
	충청매일	2				1		1		
지	경기매일	2				2				
	경기신문	7		1	6					
	경기일보	8		2	5			1		
	경도일보	3			3					
	경인매일	1			1					
	경인일보	3		1	2					
	기호일보	6			6					
	서울일보	0								
	수도권일보	2			2					
	경	시대일보	4		1	1			2	
방	아세아일보	3		1	1				1	
	우리일보	1			1					
	인천일보	5	1	1	3					
	종합일보	1			1					
	충부매일	7		1	6					
	전국매일	4		1	3					
	현대일보	5		2	3					
	강원	강원도민일보	1			1				
		강원일보	2			2				
	충	동양일보	2			1			1	
충부매일		2			1			1		
충청일보		2			1			1		
한빛일보		0								
지	매일전북	0								
	새전북신문	0								
	전라일보	0								
	전민일보	1			1					
	전북도민일보	1	1							
북	전북일보	0								
	전북중앙신문	2		1				1		
	전주매일	0								
경남	경남매일	4		2	1			1		

매체		시정권고 건수	침해유형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기 타	공중도덕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회 질서 침해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지방 매체	경남도민일보	6	1		2	2				1
	경남신문	6	1	1	2	1				1
	경남일보	4			1	1			1	1
	경남제일신문	0								
	경상일보	5			2	3				
	울산매일	2	1			1				
	제민일보	0								
	제주일보	1				1				
	한라일보	1							1	
	소계	167	13	1	37	95	2	0	13	6
통신	연합뉴스	16			1	13			1	1
	소계	16	0	0	1	13	0	0	1	1
주간지 · 주간신문	뉴스메이커	0								
	시사저널	0								
	주간농아	0								
	주간조선	1							1	
	주간한국	0								
	한겨레21	0								
	월요신문	1							1	
	일요시사	0								
일요신문	0									
소계	2	0	0	0	0	0	0	2	0	
월간지	말	0								
	신동아	0								
	월간조선	0								
	월간중앙	0								
소계	0	0	0	0	0	0	0	0	0	
총계	237	13	1	41	153	2	0	20	7	

* 심의대상매체 : 일간지 85종, 주간지 6종, 주간신문 2종, 월간지 4종, 통신 1종

◇ 연도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

1. 언론중재신청 처리현황

연도별 중재처리결과

()안은 %

구 분 연 도	신 정 건 수	처 리 결 과							비 고
		합 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1981	44	9			12	1	2	20	
1982	50	19			19		2	10	
1983	71	21			22	1	1	26	
1984	54	12			29	3		10	
1985	59	12			28	4		15	
1986	49	14			10	1		24	
1987	47	10			9	1		27	
1988	55	16			12		1	26	
1989	121	29			35		6	51	
1990	159	42			43	1	2	71	
1991	220	52			48	3	1	116	
1992	381	81			79	19		202	
1993	423	132			96	8	2	185	
1994	541	162			127	7		245	
1995	528	111			150	26	3	238	
1996	556	129	2	7	169	9	1	239	
1997	490	161	10	5	79	8	4	223	
1998	602	226	14	10	97	5		250	
1999	641	244	11	18	102	24	5	237	
2000	607	198	10	15	66	14	2	302	
2001	659	229	6	23	132	18	2	249	
2002	511	182	18	17	62	8	1	223	
2003	724	287	15	15	101	27	3	276	
계	7,592	2,378 (31.3)	86 (1.1)	110 (1.4)	1,527 (20.1)	188 (2.5)	38 (0.5)	3,265 (43.0)	

연도별 실질적 피해구제율

연도	구분 신청 수	중재 수	처리 결과						피해구제율 (%)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취하	소계	
				동의	이의				
1981	41	41	9			12	20	41	39.0
1982	50	48	19			19	10	48	58.3
1983	71	69	21			22	26	69	52.2
1984	54	51	12			29	10	51	49.0
1985	59	55	12			28	15	55	43.6
1986	49	48	14			10	24	48	56.3
1987	47	46	10			9	27	46	34.8
1988	55	54	16			12	26	54	63.0
1989	121	115	29			35	51	115	52.2
1990	159	156	42			43	71	156	59.0
1991	220	216	52			48	116	216	48.1
1992	381	362	81			79	202	362	55.2
1993	423	413	132			96	185	413	56.2
1994	541	534	162			127	245	534	56.2
1995	528	499	111			150	238	499	52.1
1996	556	546	129	2	7	169	239	546	53.1
1997	490	478	161	10	5	79	223	478	61.3
1998	602	597	226	14	10	97	250	597	59.6
1999	641	612	244	11	18	102	237	612	59.6
2000	607	591	198	10	15	66	302	591	63.6
2001	659	639	229	6	23	132	249	639	62.3
2002	511	502	182	18	17	62	223	502	62.4
2003	724	694	287	15	15	101	276	694	68.0
계	7,592	7,366	2,378	86	110	1,527	3,265	7,366	58.6

중재부별 중재신청건수

()안은 %

연도 \ 구분	신청건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1981	44	37	5	1					1			
1982	50	41	3		1		1	1				
1983	71	61	8		1		1					
1984	54	46	3		1	2	1	1				
1985	59	48	3	2		1	1	1	1		2	
1986	49	38	3				1	3	2		2	
1987	47	42	1	1	1		1		1			
1988	55	41	2	1	3	1		2	3	1	1	
1989	121	78	14	2	8	1	6		3	2	4	3
1990	159	110	12	3	7	3	10	1	5	2	4	2
1991	220	137	20	7	9	5	10	3	3	10	12	4
1992	381	233	21	7	15	11	41	6	12	14	19	2
1993	423	236	32	25	23	15	37	9	9	16	19	2
1994	541	348	21	19	23	21	46	5	16	17	19	6
1995	528	323	27	9	15	23	55	14	16	25	13	8
1996	556	328	27	13	35	23	66	8	17	18	18	3
1997	490	283	29	24	23	15	46	14	22	11	20	3
1998	602	335	24	22	61	18	62	14	23	19	18	6
1999	641	402	27	18	43	13	62	10	16	28	16	6
2000	607	378	23	29	28	27	52	14	21	18	15	2
2001	659	428	21	18	32	19	62	9	16	36	17	1
2002	511	307	15	14	39	16	45	7	16	25	20	7
2003	724	496	18	20	40	20	64	10	6	25	16	9
계	7,592	4,779 (62.9)	359 (4.7)	235 (3.1)	408 (5.4)	234 (3.1)	670 (8.8)	132 (1.7)	209 (2.8)	267 (3.5)	235 (3.1)	64 (0.8)

II.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법원제소 현황 (1심)

(단위: 건)

연 도	제소건수	인 용	기 각	각 하	화 해	취 하	계 류
1981	4		2		2		
1982	3	2	1				
1983	7	4	2			1	
1984	8		1			4	
1985	12		2		1	9	
1986	2	1				1	
1987	4	1				3	
1988	7	3	1			3	
1989	10	7	1			2	
1990	12	3	2	2	1	4	
1991	6	3	1			2	
1992	33	4	11		3	15	
1993	20	9	2	3	1	5	
1994	30	14	1		2	13	
1995	53	20	14	1	4	14	
1996	30	9	1			20	
1997	10	5	3			2	
1998	22	15	2			5	
1999	31	21		2		8	
2000	8	4	1		1	2	
2001	37	17	9		2	9	
2002	12	8			1	3	
2003	10	6	1			1	2
계	371	156 (42.0)	61 (16.4)	8 (2.2)	18 (4.9)	126 (34.0)	2 (0.5)

III. 시정권고 현황

단위: 건

연도	구분 시정 권고 건수	침해 유형								간별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기 타	사회 질서 침해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침해		일간 신문	주간지 / 주간 신문	월 간 지	통 신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성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	109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7	219	2		16	
계	4,235	690 (16.3)	128 (3.0)	1,427 (33.7)	890 (21.0)	230 (5.4)	1 (0.1)	838 (19.8)	31 (0.7)	4,042 (95.4)	36 (0.9)	12 (0.3)	145 (3.4)	

언론보도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김 경 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은 자유로워야 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를 위해 언론의 자유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안타깝게도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등과 같은 인격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두 법익간의 충돌이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 역시 이러한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탈런트 홍석천이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것(coming-out)을 계기로 우리 언론은 성적 소수자

들에 대한 보도를 조심스레 시작했다. 그 동안 소외되었던 동성애를 소재로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들이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며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대안매체로 여겨지고 있는 인터넷 언론들도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기사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단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입법 예고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전반적인 언론의 관심은 아직 미미한 정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동성애자 전용 케이블방송국이 개국하고, 동성애자 고등학교가 설립될 정도로 동성애가 주요한 공공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토록 한 법을 위헌이

라고 판결한 것과, 샌프란시스코시가 동성애자의 결혼을 정식 인정하여 3천 쌍이 넘는 동성애 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부한 사건 등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하지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보도가 늘어날수록,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침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동성애자의 실명보도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발단은 일간신문 '익스프레스 뉴스'가 공공장소에서 과대노출 및 음란행위로 체포된 동성애자의 실명을 게재한 것이었다. 동성애자였던 42살의 베니 호건은 공원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

었고, '익스프레스 뉴스'는 호건을 포함한 마약복용자 및 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의 명단을 게재하였는데, 공개된 명단의 대부분은 동성애자들이었다. 자신의 이름이 보도되자 호건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가족은 '익스프레스 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성애 관련 인권단체들은 경찰과 신문을 상대로 항의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부주의한 보도가 극단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언론의 인격권 침해의 불가피성은 '언론의 속보성'(시간적 제약)을 비롯한 '언론보도의 권한 한계'(사실 확인에 따르는 한계), '경쟁적 미디어 환경'(보다 선정적인 스토리의 필요성), '언론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인식의 부족' 등과 같은 언론의 내·외적인 구조적 환경에 기인한다. 이러한 언론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짐작케 하며,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단순히 취재·보도상의 과실로만 취급할 수 없

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더구나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고립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 노출을 꺼려하고, 더 나아가 이들을 바라보는 언론인의 이해 부족은 공정한 보도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 보도의 대부분이 사건이나 사고, 행사, 특이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부주의한 보도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례 소개와 같은 단편적인 모습에 치우치게 되면서 본질적인 부분에는 접근조차 못한 채 피상적인 보도에 그치고 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인격권 침해의 논란을 증폭시켰던 한겨레신문의 동성애자 에이즈감염 기사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언론보도의 역할과 의미를

재점검해야 할 기회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사건의 분석을 토대로 언론보도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 보호의 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아직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가 인격권 침해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없는 관계로, 일반적 인격권 침해 판결의 기준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겨레 보도의 사건개요

한겨레는 지난 2004년 1월 8일 사회면(인터넷판 7일)에 '여성동성애 파트너 에이즈 감염 첫 보고,' '남성동성애자 28% 헌혈경험'이라는 제목의 두 에이즈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보건복지 전문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의뢰를 받은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팀의 동성애자 1,160명과 후천성면역결핍증(HIV) 감염자 258명을 대상으로 한 '고위험군 성행태 및 에이즈 의식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 연구는 동성애자 및 HIV 감염인의 성 행태에 대한 조사로써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향후 사업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최종 보고

서는 연구목적을 위해 사용하며,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연맹과 연구팀은 결정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기자에 의해 기사화 되었던 것이다.

보도는 여성동성애자 2명이 동성애 관계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되었고, 1985년 국내 첫 에이즈 감염인이 보고된 이후 여성동성애 관계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번 조사가 에이즈 감염인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을 감안한다면 동성애 관계로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또 "에이즈 감염인 5명 가운데 1명 꼴로 동성애를 자주 하고 있으며 콘돔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때때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들 감염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립보건원 전염병관리부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성동성애 관계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고, "에이즈 감염 경로는 은밀한 사생활과 관련돼 그동안 감염인들이 보건소 직원 등에게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거나 거짓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어 정

부의 감염경로 통계가 완벽하지 않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다.

기자는 "감염인들은 51.6%가 성생활을 하지 않으며, 24.0%는 배우자 또는 애인과 고정된 성생활을 한다고 밝혔으나, 22.1%는 다양한 동성과 잦은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여성 감염인 3명은 많은 여성과 자주 동성애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혀 여성동성애 관계를 통한 에이즈 전파가 우려"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확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기자는 "감염인들은 22.2%가 항문성교 따위를 할 때 콘돔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가끔 사용한다"라는 보고서를 인용하며, 에이즈가 동성애 집단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상당수 감염인들이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보도가 있는 뒤,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 관련단체들은 한겨레의 기사가 '동성애=에이즈'라는 편견을 부추기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공식사과문 게재, 인터넷판 삭제, 해당 기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성애가 곧 에이즈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여성동성애자들이 단지 성관계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법적 대응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한겨레 여론칼럼 <왜냐면>란에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이 있었고, 기자의 재반론으로 이어지면서 논쟁이 가열되었다. 반론문에서 기자는 "에이즈 감염인과 동성애자 성 행태 따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도는 에이즈 감염인과 동성애자들의 정확한 성 행태를 바탕으로 이 땅에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 한 명이라도 에이즈 감염인이 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반약 이 기사를 읽고 동성애자, 특히 에이즈 감염 동성애자들이 위험한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기사는 나름대로 에이즈 예방에 공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사의 어떤 내용이 인권을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밝

힐 것을 요구하며 반론을 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연구의 주관사인 에이즈퇴치연맹은, 기자가 기자의 신분이 아닌 자문위원 자격으로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었고, 보도용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기사화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로 양당사자간 정정보도문 게재에 합의하면서 일단락 이어졌다. 한겨레는 “한국 에이즈퇴치연맹과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팀은 해당 보고서를 발표한 바 없고, 해당 보고서에는 설문 수차 자료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22.2%의 응답자는 감염인들의 수치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정정 보도문을 실었다.

언론의 자유와 성적 소수자 인격권 보호 법익의 충돌

언론의 주요 기능이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

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는 기관으로서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공익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보호가 더욱 중요

사회적 소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의 보호 또한 간과될 수 없어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회적 소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의 보호 또한 간과될 수 없다.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경우,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

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위 대법원의 판결은 양보할 수 없는 두 중요한 법익을 중재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한겨레 보도에 적용, 법익을 형량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보도된 내용이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보도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인가? 둘째, 그 내용이 진실한 것, 혹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셋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졌는가?

논란의 대상이 된 한겨레 기사는 동성애와 에이즈 감염에 관한 공공의 관심사로써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에 속하는 것은 틀림없다. 또한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공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공익적 법익을 갖는다 하겠다. 그렇지만 한겨레 보도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다고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자는 자신의 기사가 “질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자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지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성애와 에이즈 자체가 갖는 선정성으로 인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왜 선정적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언론보도가 의도적으로 선정적일 수 있다. 이는 뉴스가치의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성애자와 에이즈 감염을 연계시켜 보도한 경우이다.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이즈 감염의 절대적 원인인 것처럼 두 변인을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동성애 관련 기사가 소수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선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성애자의 눈에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과 다른 존재로 보여지며, 이것이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적 관심사가 다른 동성애자들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자연히 선정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 비록 에이즈 감염에 대한 공공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기사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선정성은 공익을 위한 보도라는 주장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하고, 특히 성적 소수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알권리 충족이라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음으로 진실성에 대한 판단이다. 보도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도된 내용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토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기자는 조사결과가 연구팀에 의해 발표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보고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정정보도문에 명시된 것처럼, 해당 보고서가 연구팀에 의해 발표된 바 없고, 보고서에는 수치 자료만 있을 뿐 그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구팀이 이를 발표한 것처럼 보도하고, 수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통계수치의 분석은 그 정확성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기자의 자의적 해석은 보도의 진실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마지막으로, 취재와 보도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취재과정에서 사회전반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가 언론의 면책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취재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개별 기자들의 인식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취재보도가 어떤 것인지 단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겨레의 경우, 기자가 연구보고서 내용을 기자의 신분이 아닌 자문위원 신분으로 입수하게 되었고, 에이즈퇴치연맹의 비보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사화 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에이즈와 동성애는 공익적인 문제이고, 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의 판단이었다며 보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검증이 완료된 이후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보도는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을 주장했다. 보고서의 입수경

위야 어찌되었든, 보도의 이익이 비보도의 이익보다 크다고 여겨 기사화 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언론행위에 부합한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그러나, 동성애나 에이즈 감염처럼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의 취재 보도는 일반적인 언론행위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연구조사를 연구팀의 비보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도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걸친 언론 행위인지 반론의 여지가 있다.

나가는 말

성적 소수자란 단순히 숫자가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

가 없다. 취재경로가 제한되어 있고, 정부나 관련단체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동성애 취재원의 접촉이 어렵다라는 요인들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 소수자와 관련 보도는 그래서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특히 연구자료를 일반화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능한 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윤리적 비판에도 노출될 수 있어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가 정보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소수자를 단순히 알권리 충족을 위한 취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언론인들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어 진다. 보도의 내용이 진실

하고, 그 보도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져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윤리적 비판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행(2000). 언론부터 편견을 버려라. 『관훈저널』, 2002년 겨울호.
 박정희(2003). 의학보도가 공중의 인지·감성·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권 5호, 194~221쪽.
 최연진(1998). 기자로서 동성애 취재의 어려움과 문제점. 미디어와 동성애 정체성(심포지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2003). KSCRC 미디어 취재 가이드. <http://www.kscrc.org>.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Chapadeau v. Utica Observer-Dispatch, 45 AD2d 913 (1975).
 Gay & Lesbian Alliance Against Defamation (Media Guideline). <http://www.glaad.org>.

언론중재절차의 개선방안

조 관 행

서울제5중재부장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평소 언론분야에 관한 깊은 연구가 없어 언론중재위원이 되는 것이 주저되었던 본인도 위원으로 위촉된 지 2년이 되었다. 선배 중재부장들이 귀뜸해 준대로 언론중재위원으로서의 활동은 법관으로서는 알지 못했던 언론사의 메카니즘을 어렵웃이나마 깨닫게 해 주었고, 특히 언론전문학자나 언론인으로 활동하셨던 중재위원님들과의 만남은 20대 청년시절부터 법관의 길만 걸어와 편협할 수도 있는 본인의 시각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귀하고 보람된 직책이라고 생각하여 중재기일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중재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재심리절차에 관하여는 때때로 서초동 법정에서와 다른 답답함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그동안 개선되었으면 하고 생각하였던 몇 가지 중재절차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언론중재제도는 비록 중재결정에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일종의 준사법제도이고, 분쟁의 해결수단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민사재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절차는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다. 즉, 과거 우리의 재판기일은 사전에 그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면밀한 사전 준비 없이 이루어져 핵심쟁점에 대한 효율적인 심리가 어려웠다는 반성에서,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한 다음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쟁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집중심리방식으로 심리방식을 전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방식의 변화는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재판제도가 갖추어야 할 당위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그 변화의 필요성은 결코 민사소송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언론중재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개정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만일 현재의 언론중재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본인을 포함한 중재부장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중재부의 중재부장이 법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제언은 중재부장으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중재심리도 새로운 민사소송의 이념과 같이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한 후에 하였으면 좋겠다. 중재사건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 심리에 꽤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도 있다. 그런데 통상 중재신청서와 그에 첨부된 보도문만을 보고 중재법정에 들어가는 현실에서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피신청인에게는 중재기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권고하여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이 어렵다면 신청인과 다른 의견을 갖는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나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근거법규도 있다.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은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중재부장은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과 같은 답변서 제출의무가 명분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유추적용하여 중재부장의 명령이 없이도 사무처직원이 당사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양 당사자 모두 사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지도하는 실무를 정착시키면 좋겠다.

사전증거조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조항이 하나 있다. 언론중재규칙 제13조는 “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 및 증거조사와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는 중재부의 합의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에는 중재부장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권한행사요건 및 절차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가 없다. 민사소송절차에서도 재판장은 수명법관의 지정이 필요 없이 증거조사를 포함하여 증거조사를 포함한 변론준비절차를 주재할 권한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보거나 가뜩이나 짧은 중재처리기간을 감안한다면 위 언론중재규칙 제13조는 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법 제18조 4항에 규정된 신청처리기간 14일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조속히 개정되었으면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명예직으로서 위원 각자의 직업이 있으므로 중재업무에만 매달릴 수가 없다. 그래서 사건이 많은 서울중재부도 통상 1주일에 1회 중재기일을 열고 있다. 그에 따라 중재신청서의 접수 일자에 따라서는 속행기일을 열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최종적인 심판기관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첫 번째 만남에서 중재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 중재불성립으로 처리하면 되지 굳이 속행하면서까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위 14일의 처리기간도 큰 장애가 되지 않겠지만, 분쟁해결기관은 최종적이든 아니든 일단 사건을 담당하였다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처리기간은 1개월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 신청인으로서도 중재심리가 진지하고 중재위원들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2주가 더 소요된다고 하여 분쟁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종합적이지 못한 제언을 몇 가지 하였다. 중재심리절차에 민사소송법과 그 규칙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중재심리의 신속(迅速), 적정(適正)을 위하여 절차개선방안을 종합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홍악범죄 용의자 공개 수배의 경우 소년이라도 이름·얼굴사진 공표하기로

일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1일 신문협회의 방침과 연속선상에서 연쇄살인 등 홍악범죄의 용의자를 지명 수배할 경우, 소년일지라도 14세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사진, 봉타주, 주소, 이름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결정, 전국의 일선경찰에 시달렸다.

소년법 제61조는 소년 피의자의 이름 등 본인을 추지할 수 있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신문협회는 1958년 ①도주 중 방화, 살인 등의 홍악한 재범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지명수배중인 범인 검거에 협력하는 경우 등 “소년보호 보다는 사회적 이익의 옹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름, 사진의 게재를 인정하도록 당국에 요망하는 한편 이를 언론계의 관행으로 확립하고자 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경찰청의 방침은 소년이라도 ①홍악범인 경우 ②그 수단, 방법이 특히 악질적이고 재범의 우려가 큰 경우 ③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주는 경우 ④수사상 달리 취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청 및 관할 경찰국과 협의하여 공개수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愛知현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죄가 있는 성범죄사건 용의자’의 얼굴사진을 공표한다는 방침을 밝힌 후 처음으로 지난 2월 4일 강간혐의로 체포된 한 남성의 얼굴사진을 공표했다.

여러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체포된 남성은 강간

혐의 외에 10여 건의 여죄를 자백하고 있다. 신문업계로서는 中日, 毎日, 日經 등 세 신문사가, 해당지역 TV로서는 NHK, 중부일본방송, 동해TV, 東京TV가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신문협회보』, 2003년 12월 16일자, 2004년 2월 10일자) □

동경지방법원,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만화책에 최초로 ‘외설도화반포죄’ 인정

-일본 동경지방법원 판결-

노골적인 성 표현이 담겨있는 만화책을 판매하여 ‘외설도화(圖畫)반포죄’ 혐의로 피소된 출판사 〈松文館〉 대표 貴志原則 피고에 대한 재판에서 동경지방법원은 2004년 1월 13일 문제가 된 만화책에 대해 “이를 허용할만한 사회통념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만화가 외설도화반포죄의 적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피고인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2002년 4월 성교장면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만화책 〈蜜室〉을 약 2만부가량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외설물반포등의 죄’를 규정한 형법 제175조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사이버-포르노’ 규제입법화의 움직임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설물의 반포 등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확고하게 지지되고 있다”고 설시했다. 또한 “동 조에 의한 외설물의 규제는 성적 질서나 최소한의 성도덕, 건전한 성풍속의 유지가 보호

법익이므로 오늘날에도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재판 중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가 특정의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을 보호하여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며, 외설물의 반포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속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일정한 제약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위헌은 되지 않는다”고 판시, 대법원의 입장을 지지했다.

(『신문협회보』, 2001년 1월 20일자) □

최근 일본에서의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배상액, 점차 고액화 경향

일본에서는 최근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인용 손해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언론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회에서는 고액 배상경향의 타당성 등에 관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2003년 10월 일본 규슈(九州)에 있는 한 의료법이 사진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동경고등법원은 1심의 1,320만엔보다 증액된 1,980만엔(약 2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판결을 내렸다. 이 금액은 지금까지 인용된 손해배상액 중 최고액으로, 지난 1년 동안 언론사의 명예훼손 배상액은 대부분 150~700만엔 사이에서 결정되었다.

최근의 이 같은 고액배상판결은 2001년 봄 동경지법과 고법이 내린 2건의 판결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같은 해 2월 한 여성주간지의 보도에 대해 모

여배우가 제기한 소송의 1심판결에서는 배상액 500만엔(6천만원 상당)이 인용되었고, 출판사의 항소에 대해 동경고법은 기각한 바 있다. 이어 3월에는 2심에서 원고인 프로야구선수에게 600만엔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1심에서는 1,000만엔).

여배우가 제기한 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상액을 높인 이유에 대해 ①근래에 와서 인격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낮은 위자료를 선고해 온 과거의 판례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 ②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정신적 고통 뿐만 아니라 보도의 악영향으로 입은 무형의 재산적 피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여배우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위자료로는 “1,000만엔을 하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 1심의 500만엔을 상회하는 액수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 이후 100만엔을 상회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배상액은 차츰 증가하기 시작했다.

일련의 고액 배상화 경향의 또다른 원인으로는 정치적 배경을 들 수 있다. 1999년 자민당은 보도와 인권에 관한 보고서에서 명예훼손의 배상액이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바 있고, 이를 전후하여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직접 거론된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2001년 5월 동경고등법원판사를 지낸 榎崎勤 변호사는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손해배상액의 평균기준액을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의 25%에 상당하는 500만엔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사법연수소의 손해배상 실무연구회가 '명예훼손에 의한 위자료산정의 정액화를 위한 산정기준'을 발표. 가해자의 기사내용, 진실성과 상당성 유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평가저하의 정도 등을 산정요소로 한 점수표를 만들어 1점당 10만엔씩 배상액을 높여 가자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동경변호사회는 2003년 11월 20일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프라이버시...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갖고 동 변호사회 인권옹호위원회가 2003년 3월 토의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한 소책자 <명예훼손에 있어서 500만엔 기준과 점수표 산정에 관하여>라는 의제에 관해 토론을 벌인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회의 논점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배상액 기준 '500만엔'의 타당성 여부(변호사회가 마련한 토의자료에서는 1건의 보도에 대해 기본배상액을 300만엔으로 하고 그 밖의 증액요소를 가산하여 500만엔 정도로 높여가자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이고, 두 번째는 '명예'에 관한 판단에서 공인과 사인의 구별, 사회적 지위와의 관련을 어떻게 볼 것이며 이를 손해배상액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문제였다.

(『신문연구』, 2004년 1월호, 『신문협회보』, 2003년 12월 2일자) □

캐나다 법원, WP지 명예훼손 재판관할권 주장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2월 말 한 UN 전직 관리

가 워싱턴 포스트(WP)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재판관할권은 캐나다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케냐 주재 UN 마약단속반의 전직 책임자였던 체이크 방구라 씨는 지난 1997년 WP지가 보도한 3건의 온라인 기사 때문에 자신이 사임하게 되었다고 항의했다. 이 기사들은 "관리 부실과 잘못된 대처"라는 제목 하에 성적 학대와 회계부정, 친척 편중 인사 등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UN심판위원회는 보도기사는 사실무근이므로 UN은 방구라 씨에게 사과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WP지는 이 웹사이트 기사가 발행된 워싱턴 DC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며 로만 피트(Roman Pitt) 판사에게 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사는 또 방구라 씨가 온타리오에 거주 2년밖에 살지 않아 캐나다와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아무런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트 판사는 두 가지 주장을 모두 일축, "방구라 씨는 온타리오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일하는 국제 공인(公人)이며, 그곳에서 그의 명성에 대해 가장 큰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또한 지난 2002년의 다우존스 대 거트닉(Dow Jones & Co. v. Gutnick) 명예훼손 소송을 예로 들었는데, 이 소송은 뉴욕에 본사를 둔 바론스(Baron's)지가 보도한 온라인 기사에 대해 호주 법원이 관할권을 주장했던 사안이었다. 피트 판사는 "피고 측은 원고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보도기사는 그 곳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살피야 했다."라고 밝히면서 결국 온타리오가 명예훼손이 이뤄진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 곳이 적당한 공론장이라고 결론지었다.

WP지는 미국 법원이 국가 간 상이한 법률체제

때문에 이 판결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 “미국 법원이 국제의례(comity)를 무시하고 캐나다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피트 판사는 말했다. 또한 “국제의례는 타국 법원의 법집행과 관할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발적 인정이므로 이것이 캐나다의 가치에 영향을 주게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WP지 측 폴 사바스 변호사는 현재 판결내용의 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RCFP(자유언론기자회) 홈페이지 3월 3일) □

대만, 신문사·방송국 급증에 따라 명예훼손소송 증가

1987년 계엄령 해제와 1988년 신문규제의 해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대만에서는 신문사와 TV방송국의 급증과 이에 따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신문기자협회는 신문규제 해제 15주년을 맞아 2003년 8월 출판한 보고서 〈회고와 전망〉을 통해 규제가 풀리기 직전인 1988년 1월, 44개였던 신문사는 규제가 해제된 후 급증하여 1999년에는 367개사로, TV방송사는 지상파 3개사에서 5개사로, 위성방송 프로그램 제공사는 57개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매체수의 증가는 매체간의 과당경쟁과 상업화를 가져와 결국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의 증가를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과 윤리에 위배되는 취재·보도행위도 크

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언론이 건전하게 육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고서 집필진의 한사람이었던 중앙통신사 사장 호원휘(胡元輝) 씨는 이러한 마스크 현상에 대해 한마디로 ‘난’(亂)이라고 표현했다.

실례로 1997년에 있었던 한 유괴사건 보도에서 언론사들은 인질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괴사건 발생을 공개했는가 하면,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하고 도주 중인 용의자와 전화통화를 경쟁적으로 시도한 바 있다.

또 1998년 ‘華航大園 항공기 사고’ 때에는 시체에 올라서서 보도사진을 촬영했는가 하면, 1999년 ‘어린이 강간살인 사건’에서는 용의자와 인터뷰를 시도하다가 도주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했다.

2001년에는 잡지사인 〈獨家報道〉가 전 대북시의 원의 성생활을 몰래 촬영한 비디오 CD를 부록으로 배포한 사건도 있었다.

씨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 핵심은 저널리즘의 주체성 결여에 있다”고 판단하고 “계엄령 해제는 정부규제의 철폐였으나 언론 ‘시장’에는 적절한 제재장치가 없어 마스크 산업이 본래 갖고 있는 문화성과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언론계에서는 자율적인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1996년 기자협회가 ‘신문윤리공약’을 제정한 바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2003년에 ‘국가기밀보호법’을 제정하여 국가기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법과 함께 입법화 되어야 할 정보공개법은 2004년 1월 현재 입법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신문연구』, 2003년 12월호) □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병원이 환자들에게 간병인 채용을
권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4경기중재1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힘찬병원(원장 이○○)
피신청인 : 연수타임즈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4. 1. 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연수타임즈 : 『간병인 권유에 환자들 난감』 제하의 기
사 (2003년 12월 24일자 7면)

내 용 : 정형외과 치료로 유명한 관내 한 병원이
환자들에게 간병인 채용을 권해 환자들이 난감해 하
고 있다.

연수동 H병원은 인공관절 등의 수술을 한 보호자
들에게 “전문적인 간병인이 도와줘야 환자들의 재활
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면서 간병인을 채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에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대부
분의 보호자들은 병원 측에서 하는 말을 듣고 하루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간병인을 채용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H병원의 수술 환자 대부분은 병원 측의 설
명에 따라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 간병인들은 환자
들의 수발이나 물리 치료실로의 이동 등을 돕고 있
다.

병원 측의 말에 따라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김
아무개씨는 “병원측에서 전문 간병인 채용이 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을 무시할 보
호자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병원 측의 처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병원 측에서는 “보호자들은 바쁘고 가족
은 환자들이 아파하면 재활치료 등 간병에 소홀해지
기 쉽다”며 “따라서 전문적인 간병인들의 꾸준한 간
호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병원과 환자들의 오해만큼 더 이
상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힘찬병원은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내과·척추·관절염 전문병원이다. 지난 2002년 11월
25일 개원한 이래 신청인 병원은 온 직원이 친절운동
및 원가절감 운동 등을 벌여 환자치료와 불황타개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좋은 인상을 심어왔다. 그런데 신청인은 연수타임즈 12월 24일자 7면 『간병인 권유에 환자들 난감』이라는 제목의 편파적인 기사로 인해 심각한 이미지의 손상을 입고 있다.

1. 제목에서 “간병인 권유 환자들 난감”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간병인은 직업적으로 환자 곁에서 숙식을 하며 환자의 손과 발이 되어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서 간병인협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간병인은 많은 병원의 환자들에게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병원에서 몇 개의 협회와 관리상의 계약을 맺는다. 간병인은 병원의 직원이 아니며 병원은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간병인을 권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 환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 도중에 협회에 연결을 해 드려야 하는 애로와 전화요금 부담만 있을 뿐이다. 또한 간병인들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병원의 시설물과 물, 전기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에 금전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

2. “연수동 H병원은 인공관절 등의 수술을 한 보호자들에게 ‘전문적인 간병인이 도와줘야 환자들의 재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간병인을 채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간병인이 환자의 치료나 재활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며 그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도 없고 확인된 사실도 없다. 힘찬병원에서는 정형외과, 특히 무릎인공관절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지방 환자들이 많은 관계로 여타 병원에 비해 간병인의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간병인 문제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알아서 선택할 일이지 병원 측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간병료에 대해서도 사용자와 간병인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있다.

3. “병원 측의 말에 따라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김아무개 씨는 ‘병원 측에서 전문 간병인 채용이 환

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을 무시할 보호자가 벗어나 되겠느냐’며 병원 측의 처사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간병인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전혀 확인된 바 없고, 병원 측에서 이를 설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환자나 보호자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간병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피신청인은 기사에서 마치 힘찬병원이 전문 지식을 내세워 간병인 채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사실을 게재했다. 간병인 제도에 대해 생소한 일부 환자나 보호자들은 간병인을 병원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간병료나 간병인 이용 등 여러 사항을 문의해오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병원 측에서는 간병인 이용을 의뢰할 경우에 한해서만 간병인 협회와의 연결을 주선해 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보 2003년 12월 24일자 7면 기사에서 “연수동 H병원은 인공관절 등의 수술을 한 보호자들에게 ‘전문적인 간병인이 도와줘야 환자들의 재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면서 간병인 채용을 권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무근으로 잘못 보도된 기사이며, H병원은 환자나 환자보호자들에게 간병인 채용에 대해 그 어떤 요구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3년 12월 24일자 7면 『간병인 권유에 환자들 난감』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H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간병인을 채용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병원 측에서는

간병인 이용을 의뢰할 경우에 협회와의 연결을 주선 해준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연수타임즈 2004년 1월 31일 7면에 상자기사로 게재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연수동 H병원, 간병인 채용 권유 구설수)과 같게 하고, 내용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수타임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1월 28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기사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1. 한 ○ ○ 2. 이 ○ ○

피신청인 : 세븐데이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4. 1. 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세븐데이즈 : 『‘Sex Column’ 원나이트 스탠드를 위한 매너』 (2004년 1월 7일자 133면)

내 용 : 남자들은 나이트클럽에 관한 성적 판타지를 품는다. 우연히 만난 매력적인 여자와 하룻밤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은밀한 상상은 나이트클럽에서

지불하는 만만찮은 비용과 그것을 통해 얻는 짜릿한 유희 사이에서 고민하게 한다.

아주 우연히 ‘원나이트 스탠드’를 경험한 친구들의 쿨한 경험담은 자신의 매력이 아직 시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의 승부욕과 정복욕을 자극한다. (중략)

부킹에 실패한 한 마리 삐꾸기가 되어 초췌한 얼굴과 텅 빈 지갑을 들고 나이트클럽 문을 나서고 싶지 않다면 한번쯤 되새겨봐야 한다. 원나이트 스탠드는 당신의 매력이나 능력 따위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한○○, 이○○은 1990년 슈퍼 모델 입상, 2000 엘리트 탤런트 수상 경력의 공인으로서 세븐데이즈 창간 준비호 133면 『‘Sex Column’ 원나이트 스탠드를 위한 매너』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을 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남자들은 나이트클럽에 관한 성적 판타지를 품는다. 우연히 만난 매력적인 여자와 하룻밤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은밀한 상상은 나이트클럽에서 ... 지불하는 만만찮은 비용과 그것을 통해 얻는 짜릿한 유희 사이에서 고민하게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위 보도내용과 함께 실린 신청인들의 사진은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 기사와 사진이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 한마디 일체 없었을 뿐더러 장소 역시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서 사전에 통보와 동의 없이 사진도 찍고 사실무근인 자료를 게재했다. 이는 여성으로서 이러한 기사 보도문 하나로 충분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일 뿐더러 현재 활동 중인 신청인들로서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 기사에 실린 사진 하나

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될 위기에 놓여 있어 정신적인 피해와 압박이 크기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창간호(준비호) 133면의 『Sex Column』 원나이트 스탠드를 위한 매너. 제하의 기사에서 "남자들은 나이트클럽에 관한 성적 환타지를 품는다 ... 중략 ... 원나이트 스탠드는 당신의 매력이나 능력 따위와는 상관 없다는 것을."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 기사에 실린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진속 두 분께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창간준비호 133면의 『Sex Column』 원나이트 스탠드를 위한 매너. 제하의 기사에서 "남자들은 나이트클럽에 관한 성적 환타지를 품는다 ... 중략 ... 원나이트 스탠드는 당신의 매력이나 능력 따위와는 상관없다는 것을."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기사에 첨부된 사진속의 인물은 위 기사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세븐데이즈 2004. 2. 11.자 칼럼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세븐데이즈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11일자 10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국세청(청장 이용섭)

피신청인 : 동아일보

종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4. 1. 12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불법 정치자금 준 기업 국세청 "곧 세무조사"』 제하의 기사 (2004년 1월 10일 A1면)

내 용 : 국세청은 2002년 대선 때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주요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9일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대선 때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기업들에 대해 조만간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드러난 기업은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삼성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어느 기업도 (불법 자금을 건넸다면) 예외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검찰수사 결과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난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 이외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이 청장이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

조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비자금 제공 기업을 겨냥해 한 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국세청으로서 동아일보 2004년 1월 10일자 A1면 『불법 정치자금 준 기업 국세청 “곧 세무조사”』 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기사의 원인이 된 2004년 1월 9일 기자들과의 오찬장에서 국세청장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으며 특히 그 자리를 같이 한 다른 기자들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어 세무조사 책임자인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무조사 계획이 없다는 오지의 공식적인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하고 국세청 공보관 등과 함께 사실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며, 주요 언론사인 연합뉴스에서도 국세청장, 조사국장, 주요 간부 및 국세공무원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오보를 막기 위해 즉시 사실무근이라고 보도했음에도 『불법 정치자금 준 기업 국세청 곧 세무조사』라는 제하의 A1면 3단 기사를 게재한 것은 보도된 발언 사실의 진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검찰 수사로 경영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세무조사 준비 등으로 기업에게 이중적 부담을 지우게 되고 이는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을 통해 창출되는 생산, 고용 등 국민경제에 평가 요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사회 불안을 조성하게 되며, 현실적으로도 불법 정치자금 제공 기업의 주요 관련자가 검찰에 소환되고 장부 증빙 등이 검찰에 압수되거나 제출된 상황에서 관련인에 대한 질문과 장

부에 의한 조사를 위주로 하는 세무조사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오직 추측에 의해 잘못 보도함으로써 해당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국세행정 나아가 국정운영의 신뢰성을 훼손시킴은 물론 참여정부와 함께 열심히 세정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 및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등 명백한 허위보도에 해당된다.

이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4년 1월 10일자 A1면의 『불법 정치자금 준 기업, 국세청 “곧 세무조사”』 제하의 기사에서 국세청은 2002년 대선 때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지난 대선 때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기업들에 대해 조만간 세무조사를 착수할 것이며 검찰 조사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드러난 기업은 예외 없이 조사대상이 될 것이다. 삼성을 포함한 어느 기업도 예외는 없다”라는 이용섭 국세청장의 9일자 발언을 소개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검찰 수사 결과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난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1월 말까지 10대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 중인 사실과 관련 수사 결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국세청장은 2004년 1월 9일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국세청에서도 불법 정치자금 제공기업에 대해 보도 내용과 같은 조사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에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월 10일자 A1, A3면 『삼성 등 불법 정치자금 준 기업, 국세청 “곧 세무조사”』 제하의 기사와 관련, 국세청은 “이용섭 청장은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불법 정치자금 제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004년 1월 31일까지 오피니언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반론보도문)는 중재대상기사의 소재목(이용섭청장...)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동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1월 29일자 A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교육공무원의 교장 승진 임용에 있어 금품상납이 만연해 있다는 취지의 러위고백 기사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25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감 김 장 환)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4. 1.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문화일보 : 『돈으로 '교장직' 을 샀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4년 1월 9일자 1면, 5면)

내 용 : 교육자로서 촌지거부운동을 벌였던 제가 승진을 위해 금품 상납을 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려니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그간의 마음 고생을 위로받고 싶군요.

저는 전라남도에서 40년째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 권철진(61·가명)입니다. 지난해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처음 수백만원의 금품을 '상납' 했습니다.

지난 65년 2월 S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교단에 선 아래 촌지나 인사청탁 거부운동을 벌여온 저이지만, 현직에 몸을 담고 있는 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음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선학교 교장에 대한 인사권은 각 시·군 교육장이나 시·도 교육감이 쥐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만 해서 교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돈으로 교장을 산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에게, 교감이나 교장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상납'을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먹이사슬구조를 저 역시 두 눈 질끈 감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중략)

교사의 인사권은 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사는 빠른 승진을 위해 철새처럼 학교를 옮겨다니며 기회를 엿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평소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살 길을 찾기도 하지요. 그러나 촌지를 애교(?) 정도로 생각하는 교육계의 관행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이겠습니까.

96년 저는 4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초등학교에서 30

학급에 직원이 120명이나 되는 큰 학교로 반강제 발령이 났습니다. 초임교감 시절이었는데 “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사의 촌지 부스러기를 교장이 얻어먹지 말아야 한다”고 공공연히 입바른 소리를 하고 다닌 것이 화근이었죠. 순천 시내 교장단이 들고 일어나 교육장에게 저의 좌천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은 “그 사람 참, 50세가 넘는 사람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라며 도리어 전남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로 보냈습니다. 소위 볼 좋은 곳(?)에서 제대로 촌지맛을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소문대로 ‘그 밭’을 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임 첫 해 추석, 상상을 초월하는 촌지가 들어왔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주면 교사들은 이중 일부를 교감, 교장에게 상납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교감인 저에게 들어온 촌지만 해도 1,0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중략)

지난 40년간 교육자로서 제 모습을 되돌아 보면 머리와 가슴은 참교육에 대한 원칙과 소신으로 가득차 있었지만 현실은 그런 저를 용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교육생활 내내 갈등과 번민 속에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촌지거부운동을 벌였던 제가 승진을 위해 금품 상납을 할 때도 저는 이같은 갈등으로 봄부림했습니다. 교장이 되어서 제가 맡은 학교만큼은 촌지 없는 깨끗한 학교로 만들고 싶었고, 평소 생각해온 여러가지 교육개혁 방안을 몸소 실천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는 오히려 교육계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상납과 촌지 문화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장교사나 교장, 교육장, 교육감이 되는 것이 지상목표인 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육현장의 왜곡된 현실을 몸소 실천한 꼴이 돼버렸다는 것이 못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전라남도교육감으로서 문화일보 2004년 1월 9일자 1면과 5면 『돈으로 ‘교장직’을 샀습니다 (가자, 부패없는 세계로⑥)』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교장의 인사권은 각 시·군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쥐고 있어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해서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현실 ... 2003년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할 때 생전 처음으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상납했음 ... 그러나 1996년 교감 때, 촌지를 없애기 위해 촌지 부스러기를 교장이 얻어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자 교장단이 교육장에게 건의해 80학급의 대규모 학교로 전근되었고, 그 학교에서 추석이 되어 1,000만원의 촌지를 받아...”라고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실과 다르다.

첫째, 교장·교감의 승진 임용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근 25년 동안의 경력 평정점, 근무 성적, 연수 성적,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 공개한 후 교육공무원법 제14조에 의거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된 직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임용하고 있어 승진 임용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으며, 부장 교사 임용의 경우에는 많은 학교에서 희망자가 적어 권유에 의해 젊은 교사들이 맡고 있고, 경합이 있는 경우에도 대다수의 학교장이 교내 인사 자문위원회 개최 등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임용하고 있다.

둘째, 본 기사는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과 어울리지 않게 권철진(61세)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우리 도에서 2003년도에 교장으로 승진한 106명 중 1994년도에 순천 관내 교감으로 승진한 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1996년 당시 전라남도에도 80학급 규모 120명의 직원이 있는 초등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는 점 등에서

는 보는 바와 같이 권철진(가명)이 제시한 내용들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셋째, 기사 중 1996년 명절 때 교사들로부터 1,000여 만원을 받았다는, 교직원들이 공감할 수 없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 사람의 허구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뜨거운 교육애로 2세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20,000여 전남 교원들의 명예를 손상하고 사기를 떨어뜨림은 물론, 공정한 인사 행정을 통해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 공무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판단되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1월 9일자 1면과 5면에 게재 된 『돈으로 ‘교장직’을 샀습니다』 제하의 기사는 다음 사실에 따라 잘못된 기사임을 알립니다.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사실확인 결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점, 근무성적, 연수 성적 및 가산점을 합산한 다점자 순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 그 명부를 사전에 공개한 후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 있으며, 다만 정년이 1년 남은 자나 교장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된 자에 한해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하고 있어 정실 임용이나 돈으로 사고 팔 수 없으며, 제보자가 제시한 인적사항과 학교 정황 등이 허구로 드러나 오보였음을 인정하고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1월 9일자 1면과 5면의 초등학교 교장 승진과 관련 『돈으로 교장직을 샀습니다』라는 보

도내용에 대해서 전남교육청은 “교장 승진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하고 있으며, '99년 교원 정년 단축 이후 교장승진 임용대상 자원이 부족하여 2001년 교장자격 취득자부터는 모두 1년 이내에 승진 임용되는 실정이므로 지난해 교장 승진과 관련한 금품제공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오피니언면에 2004년 2월 11일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7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들이 성희롱에 가까운 글을 게시판에 게재해 강제퇴출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28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이 ○ ○ 외 17명

피신청인 : 스포츠조선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4. 1.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스포츠조선 : 『김래원 “성희롱 못참아”』 제하의 기사 (2004년 1월 8일자 40면)

내 용 : 톱스타 김래원이 극성팬들의 성희롱에 대해 법적 대응이란 칼을 빼들었다.

김래원은 최근 자신의 인터넷 공식 팬카페인 '미르' 회원 중 일부 여성팬들이 남기고 있는 성희롱성 음해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래원은 이러한 극성팬들의 횡포를 사이버테러로 보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8일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팬사랑이 각별한 김래원이 이처럼 강한 대응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극성팬들의 도에 지나친 사생활 침해 때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일부 '아줌마팬'들은 김래원의 집 앞까지 찾아가 일거수 일투족을 '취재'한 뒤 사생활을 여과 없이 인터넷에 올리고, 신체 일부를 언급하며 진한 성적 농담을 남기는 등 성희롱에 가까운 수준의 글들로 게시판에 도배했다.

이에 대해 김래원 측은 지난 1일 30여명의 극성팬을 팬클럽에서 강제 퇴출시키는 등의 대응을 했으나 불상사가 끊이지 않자 부득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됐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들은 김래원 공식 팬클럽인 미르에서 강제 퇴출당한 회원들로서, 2004년 1월 8일자 스포츠조선신문 40면 『김래원 성희롱 못참아』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아줌마팬들이 김래원 팬카페에서 성희롱 성 글을 게시하여 강제퇴출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소속사와 소속사의 지배를 받는 공식팬클럽 운영진의 잘못된 운영형태에 대해 개선의견을 적극 개진한 30여 명의 회원을 강제퇴출 시킨 것이며, 김래원을 성희롱한 사실은 전혀 없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

해 성희롱범으로 오인받게 되어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1월 8일자 40면에 게재한 『김래원, 성희롱 못참아』 제하의 기사에서 김래원 팬클럽의 일부 팬들이 성희롱과 스토킹을 일삼아 30명을 팬클럽에서 강제퇴출 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강제퇴출 당한 30여 명은 성희롱 및 스토킹과 관련하여 강제퇴출 당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팬클럽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다 운영진에 의해 강제퇴출 당한 것으로 성희롱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이 밝혀져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 1월 8일자 40면 『김래원 “성희롱 못참아”』 제하의 기사에서 김래원 팬클럽의 일부 팬들이 김래원에 대해 성희롱과 스토킹을 일삼아 팬클럽에서 강제 퇴출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제퇴출된 30여 명의 팬들은 성희롱과 스토킹을 한 사실이 없으며, 비정상적인 팬클럽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다가 운영진에 의해 강제퇴출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스포츠조선 2004. 2. 6.자 연예면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스포츠조선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6일자 2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양평 TPC골프장을 인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4서울중재2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동원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상 교)

피신청인 : 뉴스메이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4. 1.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뉴스메이커 : 『썬앤문 양평골프장 이렇게 '접수' 했다』
 제하의 기사 (2004년 1월 1일자 22~23면)
 내 용 : 문○○·동원캐피탈 치밀한 사전 공모 소
 유주 '시내산개발' 권리상실 유도

(전략) 이런 가운데 썬앤문그룹이 주력사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양평 TPC골프장 사업을 둘러싼 의혹도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현재 양평 TPC골프장 사업은 문 회장의 친동생 문○○ 사장이 대표로 돼 있는 대지개발이 맡고 있다.

썬앤문에서는 대지개발을 2001년 동원파이낸스(현 동원캐피탈)로부터 인수했다. 문○○ 회장이 대지개발을 인수한 과정에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뉴스메이커>가 입수한 검찰 기록에 이같은 사실이 상세히 드러나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썬앤문이 대지개발을 인수하는 과정은 한 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원파이낸스와 썬앤문은 사전에 치밀한 공모를 통해 시내산개발에서 보유하고 있던 양평 골프장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손에 넣었다는 것이다. 시

내산개발 관계자는 "문○○은 수백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몇백만원도 안 되는 돈에 인수한 셈"이라며 아직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중략)

문제는 골프장을 낙찰받은 시내산개발이 동원파이낸스에 계약금 19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경락잔금 1백75억원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시내산개발에서 납부기일을 넘기자 동원파이낸스측에서는 1999년 10월 28일 재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다급해진 시내산개발에서는 동원파이낸스측에 "경매기일의 연기와 잔금 1백75억5천만원의 대출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원에서는 이를 선뜻 승락했다. 다만 재경매 기일을 12월 28일로 연기하는 대신 재경매 기일 5일 전까지 경락잔금에 대한 이자 등 제반비용 35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할 것을 시내산개발에 요구했다.

동원파이낸스는 또 시내산개발이 향후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거나 골프장 사업승인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시내산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 사업승인서와 영영권 포기각서 등을 받아들였다. 물론 동원 측에서는 시내산개발이 35억원을 준비하면 이 서류를 반환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일이 꼬이려고 했는지 시내산개발 측에서는 재경매 기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35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시내산개발에서는 아예 골프장을 매각해 동원 측에 빌린 돈을 갚을 요량으로 새주인을 수소문하게 됐다.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문○○ 회장이다. 골프장 매수자를 찾던 시내산개발에 접근한 문 회장은 협상 끝에 4백60억원에 골프장을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목에서 문 회장 측과 동원파이낸스 측의 '환상적인 콤비플레이'가 시작됐다.

먼저 동원파이낸스 측에서는 만약 시내산개발이 약속한 경락잔금을 납부할 경우 애초 영아트개발에 대출해준 2백59억원 가운데 1백95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걸렸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동원은 앉아서 64억원의 대출 손실을 입는 셈이었다. 대신 다른 사람이 1백9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골프장을 낙찰받는다면 그 초과 금액만큼 대출금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세워졌다. (중략)

결과적으로 동원파이낸스는 시내산개발이 납입한 19억5천만원의 계약금과, 썬앤문의 응찰금액 2백25억원, 시내산개발의 응찰금액 1백95억원의 차액인 30억원을 합해 모두 49억5천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문 회장 역시 애초 시내산개발과의 매매 약정금액인 4백60억원 대신 2백25억원에 낙찰받은 만큼 2백35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대지개발을 썬앤문에 넘겨준 동원캐피탈 전 대표이사 등 2명과 문 회장, 그의 동생 문OO 사장을 각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의혹의 핵심은 문 회장과 동원파이낸스의 결탁이 단순한 금전적 이해관계 이외의 다른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진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동원캐피탈(주)로서 뉴스메이커 2004년 1월 1일자(555호) 22면과 23면 『썬앤문 양평골프장 이렇게 '접수' 했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의 보도들은 모두 허위이며, 그 허위사실 보도로 인하여 동원캐피탈이 마치 썬앤문과 공모, 음모를 꾸며 시내산개발에 피해를 입히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처럼 인식되는 등 회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은 검찰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검찰수사기록은 현재 법원이 원본을 소지하고 있고, 변호인 측에서 변론준비를 위해서 사본을 교부받은 상태이다. 그리고 수사기록에는 동원파이낸스 측에서는 시종일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도내용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동원파이낸스 측의 주장은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시내산개발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뉴스메이커 555호(2004. 1. 1.자) 제22면, 제23면에 게재된 『썬앤문 양평골프장 이렇게 '접수' 했다』는 제목의 기사 중 동원캐피탈과 관련된 다음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제22면 제목 아래 '문OO·동원캐피탈 치밀한 사전 공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원캐피탈은 양평골프장과 관련하여 문OO와 사전에 어떠한 공모도 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23면 제1단 아래 부분에 '동원파이낸스와 썬앤문은 사전에 치밀한 공모를 통해 시내산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던 양평 골프장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손에 넣었다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원파이낸스는 썬앤문과 어떠한 공모도 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23면 제1단 중간 부분에 '동원파이낸스는 또 시내산개발이 향후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거나 골프장 사업승인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시내산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 사업승인서와 경영권 포기각서 등을 받아들였다. 물론 동원 측에서는 시내산개발이 35억원을 준비

하면 이 서류를 반환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골프장 사업승인서와 경영권 포기각서는 시내산개발이 경락대금의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진행된 재경매기일을 2차에 걸쳐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동원파이낸스로서는 더 이상 경매를 지연시킬 수 없어 재경매연기시 경락잔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보장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따라서 시내산개발이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여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반환하기로 한 것이 지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거나 사업승인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않을 약속에 대한 담보로 교부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23면 제2단 중간 부분에 '만약 시내산개발이 약속한 경락잔금을 납부할 경우 애초 영아트개발에 대출해준 2백59억원 가운데 1백95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걸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원파이낸스의 영아트개발에 대한 채무는 원금만 2백59억 원이며, 위 사업권양도가 거론될 당시까지의 연체이자는 1백54억원으로 총채무액은 원리금 합계 4백13억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제23면 제3단 아래 부분에 '의혹의 핵심은 문 회장과 동원파이낸스의 결탁이 단순한 금전적 이해관계 이외의 다른 커백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의혹의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뉴스메이커 555호(2004. 1. 1.자) 22~23면 『썬앤문 양평골프장 이렇게 '집수' 했다』 기사와 관련,

동원캐피탈(주)(구 동원파이낸스)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뉴스메이커는 위 기사의 소제목(문○○·동원캐피탈 치밀한 사전공모) 등에서 썬앤문 그룹이 시내산개발이 소유하고 있던 양평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 동원캐피탈과 썬앤문 측사이의 치밀한 사전공모가 있었다고 보도하였으나 동원캐피탈은 썬앤문 측과 어떠한 사전공모도 한 바 없다.

또한 뉴스메이커는 '(썬앤문의) 문 회장과 동원파이낸스의 결탁이 단순한 금전적 이해관계 이외의 다른 커백션이 있지 않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한편 동원캐피탈이 시내산개발에 골프장 사업승인서와 경영권 포기각서를 요구한 것은 위 기사내용처럼 시내산개발이 향후 골프장회원권을 분양하거나 사업승인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않을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개발로부터 미납된 경락대금의 잔금 납부 약속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며, 동원캐피탈의 영아트개발에 대한 채무는 원금만 2백59억원이며 골프장 사업권양도가 거론될 당시까지의 연체이자를 포함하면 총채무액은 4백13억원이다.

반론보도신청인 동원캐피탈(주) 대표이사 한상교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2004년 2월 19일자 '뉴스메이커' 22면 또는 2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스메이커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19일자 2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최근의 국내언론관계 판결

*단주가 주·사건관계인의 일적권을 무탈케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 판결을 통한 공정한 경우 사건관계인과 언론·수사기관이 조그 차등행위 등을 그 습관·행방서러하고, 다른 경우 언론·수사기관 및 법원이 단주행위와 일적권을 그중 또는 그 가해를 줄여도 된다.

판결 1

이 사건 기사내용의 의혹제기부분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3. 10. 16.자 판결(2002나49998)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2003년 10월 16일 현직 검찰 간부가 동아일보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우리나라 사정기관의 중추적 대검찰청의 간부로 재직 중에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의 당사자로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이용호와 전화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있었는데, 비록 피고들이 원고와 이용호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원고가 이용호의 비호세력으로서 소위 ‘이용호 게이트’에도 깊이 개입한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기사에서 적시한 내용은 그 기초적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직접 통화를 시도할 만큼 원고와 이용호 사이

가 밀접한 관계일 개연성이 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및 업무처리의 공정성여부에 관한 국민과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동아일보는 2001년 9월 18일자 31면 『국정원-대검-청와대 간부...여 의원...이씨 권력층과 수사통화』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가 이용호와 수시로 통화하며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사 건 : 2002나4999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의 겸 피항소인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김 학 준

2.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훈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2. 7. 26. 선고

2001가합65620 판결

변 론 종 결 : 2003. 9. 25.

판 결 선 고 : 2003. 10. 16.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억원 및 이에 대한 2001. 9. 18.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억8,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1. 9. 18.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82. 검사로 임명되어 1999. 5.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과장을 역임하였고 소재기 당시에는 ○○지방검찰청 형사○부장검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지방검찰청 제○차장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회사이며, 피고 ○○○은 피고 동아일보사의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피고 ○○○은 거액의 횡령 및 주가조작과 관련된 소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을 취재하다가 별지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동아일보는 2001. 9. 18.자 동아일보 31면에 별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공지의 사실

2. 피고들의 부제소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가.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1) 판단기준

신문등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존재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신문 등 언론 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이 사건 기사의 경우

(가)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내용

①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국정원 - 대검 - 청와대 간부... 여 의원... 이씨 권력층과 수시통화”라는 것이고, 기사 본문 중간에 삽입된 본문보다 큰 고딕체 활자부분은 “○○○, ○○○, ○○○ 씨 등 99년 4~6월 전화 메모남겨”라 하여 원고의 실명을 적시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기사 첫머리에 “600억원대 횡령 및 주가조작으로 구속된 G&G 회장 이용호씨는 99년을 전후로 국가정보원, 검찰, 청와대, 국회의원 등 권력기관 고위 인사들과 폭넓게 ‘교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적시한 뒤, 그 근거로서 이용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부재 등으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전화한 사람, 일시, 용건 등을 이용호의 여직원이 기록하여 둔 소위 ‘전화리스트’를 피고 동아일보사에서 단독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전화리스트에 원고가 1999. 5. 11. 이용호에게 전화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 ○○○ 당시 국가정보원 경제단장, ○○○ 당시 청와대 국장, ○○○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이 이용호에게 전화한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기사에 언급된 인물들 중 1999. 당시 대검찰청 간부는 원고밖에 없어 이 사건 기사 중의

검찰 간부는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사를 위에서 본 기준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는 이를 접한 독자들에게 원고가 이용호와 수시로 통화하며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기사에 언급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용호의 비호세력으로서 소위 ‘이용호 케이트’에도 깊이 개입한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로서, 피고 동아일보사는 피고 ○○○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2) 판단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

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 63558 판결).

(가) 공익성

원고는 1999년 및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대검찰청 및 서울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공직자이었는데,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소위 '이용호 게이트'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며 공직자등 고위층에 대한 로비 의혹을 받던 이용호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실성

피고들은 원고가 이용호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용호에게 1회 전화를 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단지 원고가 이용호에게 전화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용호와 원고가 수시로 통화하며 교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상당성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우리나라 사정기관의 중추인 대검검찰의 간부로 재직중에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의 당사자로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이용호와 전화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있었는데, 비

록 피고들이 원고와 이용호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원고가 이용호의 변호세력으로서 소위 '이용호 게이트'에도 깊이 개입한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기사에서 적시한 내용은 그 기초적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직접 통화를 시도할 만큼 원고와 이용호 사이가 밀접한 관계일 개연성이 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및 업무처리의 공정성여부에 관한 국민과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신문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중 찬
판사 고 충 정
판사 문 중 식

<별지기사 생략>





진실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 정황 없이 이루어진
무분별하거나 경솔한 의혹제기 보도는
허용될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3. 11. 2.자 판결(2002가합81643)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2003년 11월 12일 한나라당과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이재오 씨가 오마이뉴스 편집자 겸 발행인인 오모 씨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해 보도가 공적인 영역에 관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정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의 정치 관련 활동에 대한 의혹 제기에 관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므로, 그러한 의혹 제기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악의적인 보도이거나, 진실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 정황 없이 이루어진 무분별하거나 경솔한 즉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의혹 제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보도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의혹제기로 판단되는바, 결국 피고들의 항변도 이유 없다.”라고 판결했다.

오마이뉴스사가 주간 오마이뉴스 2002년 12월 3일자

제16, 17면, 인터넷 오마이뉴스 2002년 12월 4일자 『‘김○○ 테이프 조작 거짓증언’ 대가로 이재오 의원 측에서 3,500만원 받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K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나라당이 이재오 의원을 통하여 금원지급을 대가로 K모 씨의 조작진술을 청탁하고 실제로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하자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 사
원
 건 : 2002가합81643 손해배상(기)
 고 : 1.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대표자 대표최고위원 최병렬
 2. 이재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 피
고 : 1. ○○○
 2. ○○○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이지은
 3. ○○○
- 변
론
종
결 : 2003. 10. 22.
판
결
선
고 : 2003. 11. 12.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2. 4.부터 2003.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한나라당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소외 이회창을 후보로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였던 정당(政黨)이고, 원고 이재오는 원고 한나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위 선거를 전후하여 원고 한나라당에서 조직한 '김 ○○ 정치공작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었다.

(2) 피고 ○○○는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이하 '오마이뉴스'라고만 한다)가 발행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주간신문 오마이뉴스 2002의 편집자 겸 발행인이고, 피고 ○○은 오마이뉴스 2002의 별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기재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당시 오마이뉴스의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기사를 취재·작성하였으며, 피고 ○○○는 2002. 11. 14.경 피고 ○○에게 이 사건 기사의 토대가

된 내용을 제보하였다.

나. 이 사건 보도 전의 정황

(1) 소외 김 ○○의 병풍 의혹 제기

소외 김 ○○은 2002. 8. 초순경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인 이 ○○, 이 ○○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1997. 7.부터 9.경까지 열렸으며, 위 이회창 후보의 처인 한 ○○이 1990년경 위 이○○의 병역면제를 위해 병역관계자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물증으로 소외 ○○○이 위 한 ○○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녹음되었다는 녹음테이프(이하 '병풍 테이프'라고 한다)를 검찰에 제시하였고, 원고 한나라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고 이재오를 단장으로 한 '김 ○○ 정치공작 진상조사단'을 조직하였다.

(2) 피고 ○○○의 원고 한나라당에 대한 최초 제보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2002. 8. 5. 병무특별수사만을 편성하여 위와 같은 병역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고, 소외 김 ○○이 제시한 병풍 테이프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인 2002. 9. 30. 피고 ○○○는 원고 한나라당 ○○시지부 사무처장인 소외 ○○○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친구인 소외 ○○○가 함께 병풍 관련 김 ○○ 테이프 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있고, 위 김 ○○으로부터 받은 돈 중 쓰지 않은 50만원권 수표 3장과 병풍 테이프와 동일한 테이프사본 등의 증거를 보관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테이프조작 가담행위에 대해서 구속되지 않도록 한나라당에서 신변보장을 해준다면 양심선언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보하였다.

(3) 원고 한나라당, 이재오 등의 대응

(가) 이와 같은 피고 ○○○의 제보를 접한 원고 한나라당은 제보 다음날인 2002. 10. 1. 08:35경 김 ○○ 정치공작 진상조사단장인 원고 이재오, 원고 이재오

의 비서인 소외 ○○○. 원고 한나라당의 당직자인 소외 ○○○을 대구로 내려보내 같은 날 (9:50경 피고 ○○○를 만나보게 하였고, 한나라당 ○○시지부의 직원을 통해 피고 ○○○의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는 한편, 같은 날 13:00경 피고 ○○○와 동거녀인 소외 ○○○을 설득하여 동인들을 서울로 데려와 양심선언을 할 것을 부탁하였다.

(나) 원고 한나라당 소속 김분수, 정형근 의원은 위와 같이 상경한 피고 ○○○에게 병풍 테이프 조작과 관련된 전후 사정에 대해 다시 질문하면서 기자회견을 부탁하였으나, 피고 ○○○는 대구에 내려가 병풍 테이프 조작에 참여한 친구인 소외 ○○○를 설득하여 증거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여, 같은 날 17:00경 앞서 대구에서 올라온 일행에 소외 김분수, 정형근 의원과 운전자 2명을 포함한 8명이 승용차 2대를 나누어 타고 대구로 내려갔다.

(다) 그러나 피고 ○○○와 동거녀인 소외 ○○○은 대구에 도착한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원고 한나라당 소속 일행을 약속장소인 그랜드 호텔 밖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를 통해 다른 장소에서 친구 ○○○를 만나 설득중이라고 하다가 내일 아침 친구와 서울에 올라가 검찰에 가서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연락을 끊어 버렸다.

(라) 한편, 원고 한나라당은 위와 같이 피고 ○○○ 등의 일행이 상경한 2002. 10. 1. 사무총장 김영일 의원을 통해 기자들에게 소위 병풍 논란과 관련 소외 김 ○○의 병풍 테이프 조작과정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제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을 공개할 것을 설득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이후의 조사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고 ○○○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피고 ○○○의 주장에 의문점들이 발견되자, 병풍 테이프가 조작되었다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하지는 못하였다.

(4)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그 후 소위 병풍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2002. 10. 25. 소외 김 ○○이 제출한 병풍 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한편, 위와 같은 병풍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도 경위

(1) 피고 ○○○는 2002. 11. 14. 소외 새천년민주당 (이하 '민주당' 이라고만 한다)에 전화를 걸어 김 ○○ 병풍 테이프 조작진술과 관련하여 양심선언할 것이 있으니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18:30경 약속장소인 여의도 한 일식당에서 당시 민주당 대변인 이낙연 의원의 보좌관 소외 ○○○과 오마이뉴스 기자 피고 ○○○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이하 '이 사건 진술' 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양심선언을 하게 된 동기는 한나라당이 나를 형사처벌받지 않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의 신원을 공개하여 생활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2002. 9. 26. 처음으로 대구에서 한나라당 당직을 맡고 있는 선배가 나에게 병풍 테이프를 김 ○○의 부탁으로 김 ○○과 함께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그 후 2002. 9. 30. 이재오 의원 비서관을 대구공항 커피숍에서 위 선배와 함께 만났고, 2002. 10. 1. 오전 이재오 의원, 비서관 등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대구공항 커피숍에서 다시 만나 같은 날 13:00경 위 선배 및 처인 소외 ○○○ 등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는데,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한나라당이 기자회견을 요청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국회의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김분수, 정형근 의원 등이 기자회견할 것을 설득하였으며, 결국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고 같은 날 18:00경 대구로 내려왔다.

(라) 그런데 조작증언을 하기로 한 뒤 기자회견

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을 통해 2002. 10. 2경 언론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고, 다음날인 2002. 10. 3. 17:00경 대구공항 근처 한 음식점에서 선배와 함께 이재오 의원 보좌관을 만났는데, 위 보좌관이 나에게 1,000만원권 수표 3장, 500만원권 수표 1장 합계 금 3,500만원을 주었고, 선배에게는 금 5천만원 가량을 준 것으로 안다.

(마) 위와 같이 받은 돈은 전혀 쓰지 않았고, 현재 수표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 검찰 기자실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수표 사본을 공개하겠다.

(2) 그러나 피고 ○○○는 2002. 11. 15. 위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대구로 내려가 버렸고, 위와 같은 제보를 접한 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일체의 논평을 하지 않았던 반면, 피고 ○○○은 2002. 10. 1.자 대한항공 탑승자 명단 확인, 동거녀 소외 ○○○을 통한 당시 피고 ○○○의 상경사실 확인, 피고 ○○○와 원고 이재오 등의 면담사실 확인 등 나름의 확인작업을 거쳐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으나, 원고 이재오의 보좌관이 피고 금사구에게 조작증언의 대가로 위와 같은 금원을 주었는지에 대하여는 원고 한나라당의 당직자인 소외 ○○○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음에도, 피고 ○○○의 위와 같은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한 바는 없었다.

라. 이 사건 보도

위와 같이 작성된 이 사건 기사는 피고 ○○의 특별취재 형식으로 「'김 ○○ 테이프 조작 거짓증언' 대가로 이재오 의원측에서 3,500만원 받았다」이라는 제목과 “병풍 확산 막기 위한 거짓증언 유도 및 매수공작?”, “정형근 의원 곧 한반도가 뒤집어질 것”, “한나라당 의원 4명이 '테이프 조작 양심선언' 요구”, “금 씨, 기자회견 약속 번복”, “1억원 주기로 했는데 3,500만원 받았다”, “3,500만원 수표 4장 보관중이다” 등의

소제목 아래 피고 ○○○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 한나라당이 원고 이재오 의원을 통하여 금원지급을 대가로 피고 ○○○의 조작진술을 청탁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부분과 피고 ○○○와의 대화내용 등을 정리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2. 12. 3. 오마이뉴스 2002주간 제31호(2002. 12. 3.~2002. 12. 12.) 제16, 17번 및 2002. 12. 4. 인터넷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어 보도되었다.

마. 이 사건 보도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2002. 12. 4.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위와 같은 오마이뉴스 보도가 놀랍다면서, 이재오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함은 물론 응분의 책임도 져야 하고, 한나라당 역시 이렇게 부도덕하고 야비한 뒷공작으로 이회창후보 두 아들의 병역비리를 호도하려 했던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으므로, 이회창 후보가 직접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이후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제16대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노부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의 경우 원고들이 동인에게 금원제공을 대가로 조작증언을 부탁하거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원고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김 ○○ 정치공작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던 원고 이재오를 통해 동인에게 조작증언을 부탁하고 조작증언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피고 ○○○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이 사건 보도의 바탕을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 ○○

○, ○○은 신빙성 없는 피고 ○○○의 진술만을 믿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기사를 오마이뉴스 2002에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 원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낙선하는 등 원고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서 각 금 5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오연호, 김 당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 ○○○는 형식상 오마이뉴스의 발행인 겸 편집자로 되어 있으나, 오마이뉴스에는 편집장이 따로 있어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편집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별도의 법인인 오마이뉴스에게 사용자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또한, 피고 ○○○, ○○은 이 사건 보도 중 원고들과 관련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결국 위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불법행위의 성부

가. 명예훼손의 성부

(1)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와 시청자가 기사

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 ○○○의 이 사건 진술의 명예훼손 여부

먼저, 피고 ○○○가 2002. 11. 14. 피고 ○○ 등에게 제보한 내용인 이 사건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진술은 원고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피고 ○○○에게 금원지급을 대가로 김 ○○ 병풍 테이프가 조작되었다는 기자회견을 강권하는 한편, 신변 비공개 약속을 어기고 언론에 위 ○○○의 신변을 공개하였으며, 원고 이재오를 통해 약속한 금원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으로써, 이로 인해 정당인 원고 한나라당과 그 소속 의원인 원고 이재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

다음으로,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기사를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① 「김○○ 테이프 조작 거짓증언」 대가로 이재오 의원측에서 3,500만원 받았다」는 제목 부분, ② 원고 한나라당의 원내 사령탑을 맡고 있는 이재오 「김○○ 정치공작 진상조사단장」의 보좌관이 ○아부개씨에게 「김○○ 테이프」가 조작되었다는 거짓진술을 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부분, ③ 이와 같은 금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인을 매수해 「테이프 조작설」을 유포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부분, ④ ○씨는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데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측의 요구로 당시 거짓증언을 한 대가로 3,500만원을 받았고, 그 일을 처음 제

안한 선배는 한나라당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으며, 자기가 받은 3,500만원은 1,000만원짜리 수표 3장과 500만원짜리 수표 1장인데 아직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부분, ⑤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김○○ 테이프 조작설'을 유포해 '병풍'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한 거짓 증언 유도 및 매수공작이 당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한 부분, ⑥ 2002. 10. 1. 피고 ○○○의 제보를 접한 원고 한나라당의 대응을 소개하면서, 이를 피고 ○○○의 이 사건 진술과 대비하여 비교한 부분, ⑦ 이후 ○씨는 거짓증언의 대가로 한나라당으로부터 1억원을 기대했지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 3,500만원밖에 받지 못한데다가, 신변 보장을 약속했던 한나라당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해 전과까지 공개되고 협박전화에 시달려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단란주점)까지 팔게 된 데에 대한 불만으로 '양심선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한 부분, ⑧ 2002. 11. 14. ○씨와 나눈 대화 내용과 그 후 추가로 전화통화한 내용을 일문일답 식으로 정리한 부분이라 할 것인바, 이를 요약하면 원고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김○○ 정치공작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던 원고 이재오를 통해 피고 ○○○에게 기자회견을 강요하는 한편, 조작증언의 대가로 피고 ○○○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 ○○○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위 사실을 전제로 의견표명을 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기사가 "...의혹이 제기되었다", "...라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이다", "...로 보인다"라고 하여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고, 그 말미에 원고 한나라당이 피고 ○○○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은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표현들과 위 표현들이 사

건 기사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보도 전까지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독자들에게 원고들은 지금까지 소외 김 ○○의 병풍 테이프가 조작되었고, 이에 관한 물증과 체보자까지 확보하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원고 한나라당에 위와 같은 제보를 한 피고 ○○○가 이 사건 기사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원고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의 병풍확산을 막기 위해 김○○ 정치공작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던 원고 이재오 등을 통해 피고 ○○○에게 기자회견을 강요하는 한편, 조작증언의 대가로 원고 이재오의 비서관이 피고 ○○○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작정치를 하였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의견표명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한나라당 및 실명이 거론된 원고 이재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편집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가 오마이뉴스의 발행인 겸 편집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오마이뉴스의 이 사건 보도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 ○○○는 적어도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 ○○의 위법성 조각 항변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 ○○○,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판단기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정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표현의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2) 공익성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소위 병풍 의혹과 관련하여 김○○ 병풍 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으나, 그것이 조작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밝혀진 바가 없는 시점에 보도된 것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의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한 것인바,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오마이뉴스 기자인 피고 ○○ ○이 민주당과 공조하여 피고 ○○○를 접촉한 점, 이 사건 기사는 불과 대통령 선거를 보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보도된 점,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민주당의 논평 시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는 특정정당과 특정후보의 이익에 부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이 소위 병풍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치공작을 벌인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다소 엿보이기는 하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 사유로서의 공익 목적성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거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거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한데, 이 사건 기사는 부도덕한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진실성 내지 상당성

(가) 진실성

먼저,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가 2002. 11. 14. 피고 ○○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진술을 한 사실 및 피고 ○○이 피고 ○○○가 원고 이재오를 만나 서울로 상경한 것을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가 원고 이재오 등과 만났고, 원고 이재오를 따라 서울로 올라간 것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 ○○○에게 병풍 테이프 조작진술을 강요하거나, 조작진술의 대가로 금원을 주었다는 부분을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 ○○○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당성

다음으로, 피고 ○○○, ○○○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피고 ○○이 피고

○○○의 이 사건 진술을 직접 들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② 이후 이를 바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확인작업을 거쳤으며, ③ 정치적 의혹사건의 경우 완벽한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은 거대한 정치권력의 비리를 감시해야 하는 언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혹제기 기사는 악의적으로 확인 사실마저도 왜곡하거나 허위로 날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 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당해 보도가 공적인 영역에 관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정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의 정치관련 활동에 대한 의혹제기에 관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므로, 그러한 의혹 제기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악의적인 보도이거나, 진실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 정황 없이 이루어진 무분별하거나 경솔한 즉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의혹 제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이 피고

○○○의 이 사건 진술을 직접 들었고, 이후 이를 바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확인작업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그 진실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 정황하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함에 있어 그 진실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 정황을 기초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오마이뉴스는 주간지로서 신속 보도의 필요성은 떨어지는 반면, 정확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은 일간지에 비해 더욱 요청되는 점, 이 사건 보도가 나간 시점은 불과 대통령 선거를 보름 남짓 남겨둔 시점으로서, 이 사건 보도가 나가게 되면 원고 한나라당의 이미지가 실추됨은 물론, 그로 인해 그 소속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커 원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었던 점, 피고 ○○○의 이 사건 진술 자체로 보아서도, 원고들이 동인에게 금원지급을 대가로 병풍 테이프 조작진술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동인이 서울까지 왔지만, 동인이 그와 같은 기자회견이나 양심선언을 하지 않고 대구로 내려갔음에도 원고 이제 오가 동인에게 3,500만원이나 되는 금원을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동인의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 ○○○는 위와 같이 받은 수표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되었던 점, 피고 ○○ 역시 위와 같은 물증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원고 한나라당의 당직자로부터 피고 ○○○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거나 조작진술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 ○○의 이 사건 보도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의혹제기로 판단되는바, 결국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 ○○○는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이 사건

보도의 바탕을 제공한 자로서, 피고 ○○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로서, 피고 ○○○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오마이뉴스의 발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4. 피고들의 책임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신문이 배포됨으로써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사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보름 남짓 남기고 게재되었던 점, 원고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점, 원고 한나라당의 당직자가 피고 ○○○의 이 사건 진술이 허위라고 확인했음에도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점 등과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내용, 신문 게재 시점 및 신문 게재 부분,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오마이뉴스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및 이 사건 보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들

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의 게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2. 4.부터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11.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 중 윤

판사 정 경 인

판사 최 정 인

<별지기사 생략>



언론보도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언론사 상호간에
상대방 기사의 진실 여부에 대한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2003. 12. 5.자 판결(2002가합70858)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

사)는 2003년 12월 5일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그 보도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언론사 상호간에 상대방 기사의 진실 여부에 대한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설사 비판의 대상이 된 상대방 기사가 사후에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악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기사에 대한 비판으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등에 비추어 ... 사실들을 기초로 한 ... 의견표명은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2002년 9월 27일자 제3면 『한나라 4억달러 북지원』 주장 어떻게 나왔나/근거 없는 '설' 주고받기 의혹 키워』 제하의 기사에서 “현대가 북한에 추가로 4억달러를 더 지급했다”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주장은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은 2001년 2월 26일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근거한 것인데도, 조선일보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자매지인 월간조선을 통해 위 보고서의 내용을 대서특필하게 하고, 한나라당이 여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덧붙여 국회에서 공론화하면 다시 이를 크게 보도함으로써,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보도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2가합70858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피 고 : 1.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학래

2. 강 ○ ○

피고들 주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길 기 관, 송 난 근,
신 태 호, 오 민 석, 장 유 식

변 론 종 결 : 2003. 10. 17.

판 결 선 고 : 2003. 12. 5.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2. 9.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간신문 '한겨레' 제3면 우측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지면 크기는 가로 20cm×20cm로, 기사 제목은 사진식자 62급 고딕체 활자로, 기사 본문은 사진식자 14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라. 만약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위 기간 안에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원고 조선일보사라고 한다)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와 월간지인 '월간조선'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겨레신문사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겨레신문사라고 한다)는 일간신문인 '한겨레'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강○○는 피고 한겨레신문사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피고 강○○는 “한나라 ‘4억달러 복지원’ 주장 어떻게 나왔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근거 없는 ‘설’ 주고받기 의혹 키워”라는 큰 제목하에, “조선일보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 미의회보고서 ‘조선일보에 따르면’ → 월간조선 ‘미의회보고서에 따르면’ → 미 보고서 잘못 인정 의혹 부분 삭제”라는 요약과 함께 ①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현대의 북한에 대한 4억달러 추가지원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월간조선> 2002년 5월호를 제시하였지만 위 2002. 3. 5.자 『한미관계보고서』가 발단이었고, <월간조선> 또한 위 보고서를 토대로 ‘현대에는 왜 4억달러를 비밀리에 주었을까’라는 식으로 비밀지급을 기정사실화하는 논조를 폈으나, 위 보고서에 대하여는 닉시 연구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 2002. 4. 3.자 수정보고서에서 위 의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는 내용, ② “문제는 한나라당이 의도했던 아니건설을 만들고 그 설을 근거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엄호성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미국 의회보고서에서 4억달러 추가제공과 군사비전용을 제기하는 의혹의 근거는 <조선일보> 등 국내 언론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도”라는 내용, ③ “닉시 연구원이 인용한 <조선일보> 2001. 2. 25.자 기사의 출처가 ‘워싱턴의 외교소식통’, ‘다른 외교소식통’으로 되어 있어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도 불분명하다”는 내용, ④ “확인되지 않은 국내의 의혹보도를 미국의 한 보고서가 인용하였을 뿐인데 국내 일부 언론이 이를 대서 특필하고 한나라당이 여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덧붙여 국회에서 공론화하면 다시 의혹으로 증폭되는 이른바 핑퐁식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한겨레

신문사는 이 사건 기사를 2002. 9. 27.자 <한겨레> 제3면에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 보도 전의 상황

(1) 원고는 2001. 2. 26.자 ‘조선일보’ 2면에 “대북 지원금 군비전용가능성, 미, 한국정부에 우려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한국을 포함한 외부의 경제지원이 북한의 군사력강화를 돕는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한국정부관계자에게 전달하였고,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은 북한의 해외 무기구입과 관련된 비밀보고서를 한국정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2) 미국 의회조사국(CRS) 소속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래리 닉시 선임연구원은 2002. 3. 5.경 한국과 미국의 현황문제에 관한 『한미관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미국 의회에 보고하였는데, 래리 닉시는 위 2002. 3. 5.자 보고서에서 “주한 미군사령부와 미 중앙정보국은 1998년이래 현대가 북한에 금강산관광사업 대가로 지불한 4억달러가 넘는 금액의 현금을 북한이 무기구입에 사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여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의 군사비전용 의혹과 “소식통(informed sources)에 따르면 현대는 북한에 비밀리에 자금을 제공했고 그 전체 액수가 거의 8억달러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하여 현대가 북한에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 이외에 추가로 4억달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한국정부가 위 2002. 3. 5.자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관계의 오류, 추측성 내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자, 다시 2002. 4. 3.경 위 2002. 3. 5.자 보고서의 내용을 “주한 미군사령부와 미중앙정보국은 북한이 1999~2001 사이에 현대로부터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로 받은 약 4억달러 때문에 무기구입에 재정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는 북한에 비밀리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현대는 위 비밀자금제공을 부인했다”고 수정하고, “조선일보의 2001. 2. 25.자 기사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2001. 2.경 미국을 방문한 한국 국정원장에게 위와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미중앙정보국은 한국정부에 북한이 최근 해외에서 구입한 무기 목록이 포함된 비밀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3) 원고는 ‘월간조선’ 2002년 5월호에 “래리 닉시 작성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와 금강산관광”, “현대는 정말 북한에 4억달러를 비밀리에 주었을까”라는 제목하에, “현대와 북한은 금강산관광 대가지급과 관련 이면계약 맺었을 가능성 있다”. “현대는 관광특구 지정시 구역확대 요구 중 : 이면계약서 있다면 금강산 관광 대가 더 내야 할 듯”, “한 대북사업가 : 웃돈 주지 않고는 대북사업 어렵다”, “래리 닉시 : 한국측 정보 소스로부터 들었고 믿을 만하다”라는 요약과 함께, “현대, 소문에 신경 안쓴다”라는 소재목으로, “미의회조사국은 지난 3. 25. 위 『한미관계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위 보고서에는 현대가 지금까지의 공식지원금 4억달러 외에 비밀리에 4억달러를 웃돈으로 주었고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되었을지 모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위 보고서에 대하여 현대측이 항의하여 위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되었다”는 내용,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금강산 투자용역보고서』”라는 소재목으로, “래리 닉시는 월간조선측과의 전화통화에서 ‘비밀자금 제공 정보는 한국측 소스로부터 들었으며 믿을 만하다. 수정본에서 액수는 삭제하였지만 한국 국회에서 조사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금강산관광에 대한 투자여건을 분석한 『금강산 투자용역보고서』에 보면 현대와 북한이 맺은 관광사업대가지불에 관한 합의서의 이면

계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 “끊이지 않는 비밀자금 제공설”이라는 소재목으로, “공식적인 사업비 이외에 다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대북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인데,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 내용과 미당국이 한국정부에 대한 현대의 비밀자금지원설을 비망록으로 전달한 것은 미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4) 한나라당 소속 엄호성 의원은 2002. 9. 25.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낙용 전 산업은행총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월간조선』 2002년 5월호에 의하면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이면계약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위 2002년 5월호의 기사에서 미 의회조사국은 2002. 3. 25. 래리 닉시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한미관계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대가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대가로 지급한 4억 달러 외에 비밀리에 4억달러를 북한에게 웃돈으로 주었고,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기사 보도 후의 정황

(1) 그 후 대북 비밀송금 의혹은 우리 정치권의 주요 문제가 되었고, 2003. 3. 14. 에는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임명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위 법에 따라 특별검사팀이 구성되어 대북 비밀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대북 비밀송금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3,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명예훼손 성립여부

(1) 어떤 보도행위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의 적시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판결 등 다수).

(2)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한나라당과 엄호성 의원이 제기한 현대의 북한에 대한 4억 달러 추가지원 의혹의 근거 또는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 '조선일보'나 '월간조선'을 발행하는 원고가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을 추려내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위 ① "...〈월간조선〉 2002년 5월호 또한 위 2002. 3. 5.자 『한미관계보고서』를 토대로 '현대에는 왜 4억달러를 비밀리에 주었을까'라는 식으로 비밀지급을 기정사실화하는 논조를 폈으나, 위 보고서에 대하여는 닥시 연구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 2002. 4. 3.자 수정보고서에서 위 의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는 내용 부분은 닥시연구원은 위 2002. 3. 5.자 『한미관계보고서』에서 제기한 현대의 북한에 대한 4억달러 추가지원 의혹 부분을 위 2002. 4. 3.자 수정보고서에서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월간조선〉 2002년 5월호에서 위 2002. 3. 5.자 『한미관계보고서』만을 토대로 추가지원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논조를 폈다는 사실의 적시이고, 위 ② "...엄호성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미국 의회보고

서에서 4억달러 추가제공과 군사비전용을 제기하는 의혹의 근거는 〈조선일보〉 등 국내 언론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도"라는 내용 부분은 엄호성 의원의 의혹의 근거는 닥시 연구원의 위 2002. 3. 5.자 『한미관계보고서』이고, 위 2002. 3. 5.자 『한미관계보고서』에서의 의혹의 근거는 원고의 〈조선일보〉 위 2001. 2. 26.자 기사인데, 원고는 〈조선일보〉 위 2001. 2. 26.자 기사에서 대북지원금 군비전용의혹을 제기하면서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는 등 그 출처를 불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사실의 적시이며, 위 ③ "닥시 연구원이 인용한 〈조선일보〉 2001. 2. 26.자 기사의 출처가 '워싱턴의 외교소식통', '다른 외교소식통'으로 되어 있어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도 불분명하다"는 내용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도 미 중앙정보국이 언제 어떤 내용이 담긴 비밀보고서를 한국정부의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하여 불분명하다는 사실의 적시이고, 위 "조선일보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 미의회보고서 '조선일보에 따르면' → 월간조선 '미의회보고서에 따르면', 미 보고서 잘못 인정 의혹 부분 삭제"라는 요약 부분은 〈조선일보〉 위 2001. 2. 26.자 기사 중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 또는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 닥시가 작성한 2002. 4. 3.자 수정보고서 중 〈조선일보〉 위 2001. 2. 26.자 기사를 인용한 부분, 〈월간조선〉 2002년 5월호 기사 중 래리가 작성한 위 2002. 3. 5.자 보고서와 2002. 4. 3.자 수정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이 순차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의 적시이며, 위 "근거 없는 '설' 주고받기 의혹 키워"라는 큰 제목 부분과 위 ④ "확인되지 않은 국내의 의혹보도를 미국의 한 보고서가 인용하였을 뿐인데 국내 일부 언론이 이를 대서 특필하고 한나라당이 여기에 확인되지 않

은 사실들을 덧붙여 국회에서 공론화하면 다시 의혹으로 증폭되는 이른바 핑퐁식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전제로 한나라당의 의혹제가 방식이 근거 없는 ‘설’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이에 원고 등 국내 일부 언론이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전제로 한 비판 내지는 의견표명이라고 할 것인바, 비록 이 사건 기사는 그 주된 내용이 한나라당과 엄호성 의원이 제기한 현대의 북한에 대한 4억달러 추가지원 의혹에 관한 것이고 부수적으로 ‘조선일보’나 ‘월간조선’의 보도 내용에 관한 것이나,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위 2002. 3. 5.자 『한미관계보고서』에서 제기한 현대의 북한에 대한 4억달러 추가지원 의혹 부분이 위 2002. 4. 3.자 수정보고서에서 삭제되었음에도 원고가 <월간조선> 2002년 5월호에서 위 2002. 3. 5.자 『한미관계보고서』만을 토대로 추가지원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논조를 폈고, 또 원고가 <조선일보> 위 2001. 2. 26.자 기사에서 대북지원금 군비전용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출처를 불분명하게 제시하였으며, 원고의 <조선일보>, <월간조선>과 닉시연구원의 위 보고서에서 근거 없는 설을 서로 주고 받아 결국 의혹을 키웠다는 취지의 보도를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마치 원고가 <조선일보>, <월간조선>의 위 기사를 통하여 현대의 북한에 대한 4억달러 추가지원 의혹을 키워 왔고 분명한 근거 없이 ‘설’을 토대로 4억 달러 추가지원 의혹을 기사화하였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언론기관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강○○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로서, 피고 한겨레신문사는 피고 강○○의 사용자 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명예 및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공익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현대의 북한에 대한 4억달러 추가지원 의혹에 대한 기사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원고는 여론형성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2) 진실성 내지는 상당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중 위 ① “...<월간조선> 2002년 5월호 또한 위 2002. 3. 5.자 『한미관계보고서』를 토대로 ‘현대에는 왜 4억달러를 비밀리에 주었을까’라는 식으로 비밀지금을 기정사실화하는 논조를 폈으나, 위 보고서에 대하여는 닉시 연구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 2002. 4. 3.자 수정보고서에서 위 의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는 내용 부분은 <월간조선> 2002년 5월호에서의 실제 표현은 “... ‘정말’ 4억달러를 비밀리에 주었을까”라고 되어 있어 의문제가 형태인데 반하여 이 사건 기사에서는 “... ‘왜’ 4억달러를 비밀리에 주었을까”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월간조선> 2002년 5월호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그 논조가 현대가 4억달러를 비밀리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므로, 문구 자체의 표현상의 문제가 있으나 그 내용이 진실에 기초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여지고, 또 닉시 연구원은 위 2002. 3. 5.자 보고

서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수정하면서 위 2002. 4. 3.자 수정보고서상의 의혹의 출처 중 하나로서 조선일보의 2001. 2. 25.자 기사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진실에 기초한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며, 위 ② “...엄호성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미국 의회보고서에서 4억달러 추가제공과 군사비전용을 제기하는 의혹의 근거는 <조선일보> 등 국내 언론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도”라는 내용 부분은 엄호성 의원의 의혹의 근거는 닉시 연구원의 위 2002. 3. 5.자 『한미관계보고서』이고, 위 2002. 3. 5.자 『한미관계보고서』에서의 의혹의 출처 중의 하나는 원고의 <조선일보> 위 2001. 2. 26.자 기사인데, 원고는 <조선일보> 위 2001. 2. 26.자 기사에서 대북지원금 군비전용의혹을 제기하면서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는 등 그 출처를 불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월간조선> 2002년 5월호에서도 “한 대북사업가 : 웃돈 주지 않고는 대북사업 어렵다”, “래리 닉시 : 한국측 정보 소스로부터 들었고 믿을 만하다”라는 내용에서 보듯이 정보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면이 있으므로, 위 내용의 대부분이 진실에 기초한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고, 위 ③ “닉시 연구원이 인용한 <조선일보> 2001. 2. 26.자 기사의 출처가 ‘워싱턴의 외교소식통’, ‘다른 외교소식통’으로 되어 있어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도 불분명하다”는 내용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도 미 중앙정보국이 언제 어떤 내용이 담긴 비밀보고서를 한국정부의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면이 있으므로, 진실에 기초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여지며, 위 “조선일보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 미의회보고서 ‘조선일보에 따르면’ → 월간조선 ‘미의회보고서에 따르면’, 미 보고서 잘못된 인정 의혹 부분 삭제”라는 요약 부분은 <조선일보>

위 2001. 2. 26.자 기사 중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 또는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 위 2002. 4. 3.자 수정보고서 중 <조선일보> 위 2001. 2. 26.자 기사를 인용한 부분, <월간조선> 2002년 5월호 기사 중 닉시가 작성한 위 2002. 3. 5.자 보고서와 2002. 4. 3.자 수정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을 순차로 연결하여 보면 다소 연결이 안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 대부분의 내용이 진실에 기초한 사실의 적시로 보여지고, 위 “근거 없는 ‘설’ 주고받기 의혹키워”라는 큰 제목 부분과 위 ④ “확인되지 않은 국내의 의혹보도를 미국의 한 보고서가 인용하였을 뿐인데 국내 일부 언론이 이를 대서 특필하고 한나라당이 여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덧붙여 국회에서 공론화하면 다시 의혹으로 증폭되는 이른바 핑퐁식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 부분은 그 전제되는 사실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으나 그 주된 부분이 진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나아가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그 보도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언론사 상호간에 상대방 기사의 진실 여부에 대한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설사 비판의 대상이 된 상대방 기사가 사후에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악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기사에 대한 비판으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들을 기초로 한 위 의견표명은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전체 내용 중 적시된 구체적 사실 및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하거나 그러한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범위 내의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 경 진
판사 민 성 철
판사 최 석 규

〈별 지 1〉 정정보도문

〈한겨레〉가 2002년 9월 27일자 제3면에 게재한 『한나라 '4억달러 북지원' 주장 어떻게 나왔나/ 근거 없는 '설' 주고받기 의혹키워』라는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현대가 북한에 추가로 4억달러를 더 지급했다”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주장은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은 2001년 2월 26일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근거한 것인데도, 〈조선일보〉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자매지인 〈월간조선〉을 통해 위 보고서의 내용을 대서특필하게 하고, 한나라당이 여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덧붙여 국회에서 공론화하면 다시 이를 크게 보도함으로써,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01년 2월 26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단지 위 성탄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하여 ‘대북지원금의 군

비전용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 ‘현대의 4억달러 추가지원’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출처불명의 취재원을 근거로 4억달러 추가지원 의혹을 제기하자, 미국 의회보고서가 이를 인용하여 같은 의혹을 다시 제기하였고, 〈월간조선〉이 이를 기사화하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주장하고, 조선일보가 다시 이를 보도하는 식으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한 위 날짜 〈한겨레〉는 우선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어서 나머지 부분 역시 모두 허위에 귀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가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서 제기한 ‘현대의 4억달러 대북지원설’의 발단이 〈조선일보〉의 보도였음을 전제로, 마치 위 〈조선일보〉 기사가 전혀 근거 없이 조선일보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조선일보사가 한나라당과 짜고 근거 없는 ‘설’ 주고받기를 통하여 공연히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어낸 말임이 확인됐다.

한겨레신문사와 관련 기사들은 위 오보사건과 관련하여 2000년 0월 0일 관할법원으로부터 조선일보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그 명예 회복 조치로서 정정보도 기사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한겨레〉 독자 및 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 정정보도기사를 게재한다.〈한겨레 임직원 일동〉 끝.

〈별지2 기사 생략〉

□

일본 판결

고고학자가 동굴유적을 날조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원 고 : 甲野花子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문예춘추 대표 白石 勝 외 2인
사죄광고등 청구사건, 大分지법 2001(7)610호,
2003. 5. 15. 민사1부 판결, 일부인용, 일부기각(항소)

주 문

1.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 甲野花子에게 330만엔, 원고 甲野一郎 및 甲野二郎에게 각 165만엔,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 2001년 3월 8일부터 지급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피고 등은 연대하여 문예춘추 발행의 주간지 <주간문춘>에, 별지1 기재의 사죄광고를 별지2 기재의 게재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3. 원고 등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3분의 2는 원고 등의, 나머지는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 1.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의 취지

1.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 甲野花子에게 2,750만엔, 동 甲野一郎과 甲野二郎에게 각 1,375만엔을 지급하라.

2. 피고 등은 연대하여 문예춘추 발행의 주간지 <주간문춘>에, 별지3 기재의 사죄광고를 동4 기재의 게재조건으로 3회 게재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4. 가집행선언

제2. 사실의 개요

본건은 피고 문예춘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발행의 주간지에 게재된 기사가 甲野太郎(이하 '甲野 전 교수'라 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며, 집필기자인 피고 乙山과 편집자인 피고 木保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게는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주장, 甲野 전 교수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피고 등에 대해 사죄광고의 게재 및 각 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한 사안이다.

1. 다툼이 없는 사실 등

- (1) 원고 등은 甲野 전 교수의 상속인으로 원고 花子は 처, 원고 一郎과 二郎은 자식으로 각각의 법정상

속분은 처가 2분의 1이고, 자식 등은 각 4분의 1이다.

(2) 甲野 전 교수는 別府대학장을 지냈으며 고고학 연구업적 등으로 많은 수상경력이 있는 저명한 학자이다.

(3) 1961년 10월 오오이따현(大分縣) 南海部郡 소재 성악(聖嶽)동굴 내에서 사람의 뼈 조각 다수와 조약돌 조각이 박힌 약간의 석기가 출토되자, 일본고고학협회의 사업일환으로 1962년 가을 甲野 전 교수를 책임자로 한 10여 명의 조사단에 의한 발굴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가 행해졌다.

또 1999년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제1차 조사결과를 기초로 석기와 인골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한편, 유적의 성격, 연대 등을 밝혀낼 목적으로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에 의해 성악동굴의 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 한다)가 행해졌다.

(4) 피고 회사는 2001년 1월 18일 발매의 <주간분춘>(88만부 발행) 동월 25일호(이하 '1월 25일호'라 한다)의 160면부터 163면에 별지5의 1과 같이 "고고학자들이 입에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 없는 '제2의 신의 손'이 大分 '聖嶽人' 주변에 있다?!"는 제목의 기사(이하 '본건 기사 1'로 한다)를, 동년 1월 25일 발매의 2월 1일호(이하 '2월 1일호'라 한다)의 169면과 170면에 별지5의 2의 "小誌 스푸트를 권위도 추인, 大分 '聖嶽人'은 역시 날조이다"라는 제목을 붙인 기사(이하 '본건 기사 2'라 한다)를, 동년 3월 8일 발매의 3월 15일호(이하 '3월 15일호'라 한다)의 179면부터 181면에 별지5의 3과 같이 "'聖嶽遺跡'은 다른 4유적으로부터 수집되었다"는 제목을 붙인 기사(이하 '본건 기사 3'으로 한다)를 각각 게재하여 발행했다(이하, 본건 기사 1~3을 '본건 각 기사'라 한다).

2. 쟁점

(1) 본건 각 기사가 甲野 전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의 여부

(2) 본건 각 기사의 기술이 진실인지의 여부

(3) 피고 등이 본건 각 기사의 기술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4) 손해액 및 사죄광고의 필요성 여부

제3 당 법원의 판단

1. 쟁점(1)에 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 기사 등에 대한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한다. 그리고 기사의 게재가 연재되었을 경우에는 각 회마다 기사의 의미내용을 판단한다음 그 이전의 연재기사의 의미내용까지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하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본건 기사 1(1월 25일호의 기사)의 체재,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고 인정된다.

가) 본건 기사 160, 161면 상부에는 "고고학자들이 입에 담으려 해도 담을 수 없는 '제2의 신의 손'이 오오이따(大分) '聖嶽人' 주변에 있다?!"는 제목이 있으며 그 오른쪽에는 丁川 夫가 오른손을 가린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원조 '신의 손'도 깜짝 놀래?"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기사 중앙의 앞부분에는 "'신의 손' 발굴날조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물밑에서만 제기되던 '의혹'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구석기시대의 인골(人骨), 大分 '성악인'은 지층, 뼈의 연대, 동시에 발굴된 구석기의 산지, 그 어느 것을 봐도 이상한 것 뿐. 이것은 제2의 '신의 손' 사건인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60면 본문 모두에는 "'아주 부자연스럽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입장을 정리하느라 고민하고 있다', '어찌할 수가 없다', '난처하게 됐군...'. '국립역사박물관 乙野 연구부장의 입에서는 곤혹스럽다는 말 뿐' 성악동굴유적에 관해 붙었을 때의 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어 일본고고학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성골인

은 구석기시대 보다 훨씬 이전의 인골이라고 과학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또 출토된 구석기는 모 대학이 九洲 서북부의 유적에서 발굴한 석기를 누군가가 성악(甕嶽)에 뿌렸다고 발한 사람이 있다”고 인용한 다음 “만일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계2의 신의 손’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일본 최초의 신의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사건”이라고 기재했다.

다) 161면에는 조사단 부단장의 말을 인용, “전문가들의 복수 감정에서는 성악동굴에서 발견된 석기는 모두 구석기의 유적이라고 하기에는 ... 곤혹스럽다”. “성악동굴의 석기는 시대가 다른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62면에는 제1회 조사에서 발견된 인골에 대해 “1原 선생이 일찍이 지적한 산정동인(山頂洞人) 101과의 유사성을 검증해 보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중략) 자료에 의하면, 발견된 흑요석(黑曜石)의 석기는 26점인데 벳부(別府)대학에 전시된 성악동굴 출토 석기는 왜 27점인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62면에서 163면에 걸쳐서는 “이렇게 이상한 유적이 생기게 된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①腰岳의 흑요석만을 사용한 인간이 3만년 전, 1만4천년 전, 繩文시대의 3시대에 이곳에 살았다. 그 후 누군가가 지층을 뒤죽박죽 해 놓았기 때문에 우연히 같은 깊이의 지층속에서 나왔다. ②어느 시대인지는 알 수 없으나 3시대의 석기를 누군가가 ‘신의 손’을 사용하여 동굴 안에 놓았다”고 기재했다.

이어 전화 발굴단장인 甲野太郎 전 別府대학장의 말을 인용, “실제로 발굴해 보아도 이것 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이를 믿을 수밖에 없다. 유적을 발굴해 보니 같은 돌이 무더기로 나오기도 한다”. “작년 말 讀賣新聞사가 전화로 ‘누군가 묻은 것 아니냐’고 물어왔으며 어떤 매스컴에서는 나를 범인 취급 했다. ... 그 유적에 관해 나는 전혀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고 기재했다.

(2) 본건 기사 2 (2월 1일호의 기사)의 체재,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고 인정된다.

가) 169면 오른쪽에는 “‘본지 스쿠프를 권위도 추인’ 大分 ‘성악인’은 역시 날조이다”라는 제목 아래 민속박물관의 乙野 부장의 말을 인용, “공식적으로 (성악동굴유적은) 고고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유적으로서는)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大分の 구석기 연구자들도 성악의 취급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어 연구에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까지 말했다. ‘날조’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고고학적으로는 쓸 수 없는’ 유적이라고까지 언급된 것은 전문적으로는 “유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 즉 공식적으로 ‘날조’를 인정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기재했다.

나) 또 한 심포지엄에서 국립과학박물관의 戊原 인류연구부장은 인류학적 입장에서 견해를 피력했는데 “성악의 인골은 ... 최근 그 특징을 조사해 본 결과 江戸시대의 인골과 닮은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했다.

다) 그리고 “또 인골과 석기가 나온 지층은 목탄속의 방사성탄소동위원체의 측정으로 ‘380년 전’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기재했다.

라) 이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언제 ‘신의 손’을 구사한 것인가. 39년 전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別府대학 甲野太郎 명예교수와 戊田春夫는 본지의 취재에 대해,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물론 그들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 발굴상태로 보아 江戸시대의 인간일 가능성도 있는데...”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본건 기사 3 (3월 15일호의 기사)의 체재,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고 인정된다.

가) “‘성악유적’은 다른 4유적으로부터 모아진 것이다”라는 제목 아래 성악의 석기를 본 구석기 전문가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 보도했다.

“이곳의 석기는 2만년 이상 전의 나이프형, 1만4천년 이상 전의 세석인(細石刀), 3천년~5천년 전의 승문(繩文)시대의 박편(剝片)이 있다...”, “세석인은 세석핵이라는 흑요석(黑曜石) 덩어리로 만들어 진다. 그런데 성악의 세석핵은 반원추형의 옛시대의 것인 반면 세석인은 그보다 새로운 시대의 선저형(船底形)도 혼합되어 있었다...”, “모두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누군지는 모르나 '제2의 신의 손'에 의해 어느 시기에가 가져다 놓았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나) 또 다른 고고학자의 말도 다음과 같이 인용. 기재했다. “성악의 석기에는 峠山유적(福岡縣)에서 출토된 태형양(台形樣)석기와 세석핵이 들어 있었다. 또한 선야(船野)유적(宮城縣)의 세석인도 2점 있었다.”, “... 양 유적에서 출토된 흑요석의 석기는 연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악유적(62년)의 발굴 후에 섞인 것이다. 그렇다면 성악에서 최초로 발견된 석기는 어느 유적에서 출토된 것인가.”

다) 이어 “취재를 하던 중 別府대학 관계자가 놀라운 증언을 시작했다”면서 동 관계자의 말을 인용.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성악유적 발굴에 참가한 인물을 그의 연구실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는 서랍에서 석기를 끄집어 내 '이 세석인(細石刀)은 福井동굴에서 나온 거야'라고 말하면서 내 손바닥에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성악의 발굴 전 別府대학 관계자의 수중에는 福井동굴의 세석인이 있었던 것이 된다. 즉 성악유적의 석기는 4개소의 유적으로부터 모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4) 상기(1) 내지 (3)에서 인정된 바에 근거하여 앞에서 설시한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본건 각 기사에 대해 검토한다. 우선 (1) 가) 내지 라), (2)가) 내지 다), (3) 가) 및 나)의 기재는, 특히 동북구석기문화연구소의 丁川·夫 씨에 의한 구석기발굴날조사건에서 사용된 '신의 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서 명백히 밝혀진 바와 같이 別府대학을 중심으로 행해진 제1차 조사에서 발굴된 석기는 다른 유적에

서 발굴된 석기를 미리 묻어 둔 날조에 의한 것이라는 인상을 일반독자에게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본건 기사 1의 제목 부분에는 “고고학자들이 입에 담으려 해도 담을 수 없는 '제2의 신의 손'”이라는 기술이 있어 날조자가 고고학자라는 인상을 독자에게 주고, 상기 (1) 및 (2)에 있어서는 누가 했느냐는 점을 고찰하는 기술을 하는 가운데 甲野 전 교수 및 戊田 교수만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청취함으로써 독자에 대해 두 사람이 날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인상을 암암리에 심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본건 기사 1에서 상기(1) 나)의 기사 및 본건 기사 3에서 상기(3) 가) 및 나)에 있어서는, 성악동굴유적 발굴 전에 福井동굴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를 그 연구실에서 소지하고 있었다고 기술되어 당해 別府대학 관계자가 날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제1차 조사관계자들의 실명을 기재하면서 甲野 전 교수에 대해서만 別府대학 관계자라는 직함이 기재되어 甲野 전 교수가 날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서 본건 각 기사는 고고학자인 甲野 전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인정된다.

2. 쟁점(2)에 관하여

(1) 본건 각 기사는 甲野 전 교수가 날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와는 관계에서는 사실에 관한 합리적인 의혹의 존재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존재 그 자체를 증명해야만 비로소 진실성이 증명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본건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존재하는 자료에 의해 진실성의 증명이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가) 전기 다툼이 없는 사실 등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 등의 주장에 관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㉔ 제1차 조사에서는 5구에서 흑요석기 7점, 3구에 서 2점이 채취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2차 조사에서는 석기가 무더기로 매장된 장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㉕ 제2차 조사에서는 사람의 치아, 손가락뼈 등은 150점 정도 수집할 수 있었으나 흑요석 석기는 1점의 제품, 박편(剝片)도 채취되지 않았다.

㉖ 제1차 조사에서 채취됐다는 석기는 흑요석이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그 산지는 성악동굴로부터 180Km 이상 떨어져 있다.

㉗ 제1차 조사에서 채취된 석기에는 굽혀져 결손된 흔적이 4분의 1가량 보였다.

㉘ 戊原 1.夫에 의하면 제1차 조사에서 발견된 인골에는 에도(江戸)시대의 인골과 유사한 것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이 뼈 조각들은 갱신세(更新世) 또는 繩文시대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는(증거력)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㉙ 요악산(腰岳産) 흑요석이 사용된 구석기시대의 유적에는 요악으로부터의 거리가 성악동굴을 넘어 200Km, 190Km, 235Km 떨어진 곳도 존재한다.

㉚ 제2차 조사에서 채취된 석기 2점 중 1점은 제1차 조사에서 검출된 석기군과 같은 석재라고 생각된다.

㉛ 제1차 조사 전후에 성악동굴이 난굴(亂掘)된 흔적이 제2차 조사 때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㉜ 甲野 전 교수는 <동굴유적조사회보>에 “본 동굴에서의 인골의 존재나, 세석기의 출토상황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 조사의 필요성이 통감된다”고 기고했다.

㉝ 別府대학부속박물관과 甲野 전 교수가 개최한 「성악동굴 제1차 조사 출토석기 및 동유적 출토석기 검토회」에서 성악동굴유적에 관해 ①서북九州산 흑요석만으로 구성된 석기군의 모양이 석재분포로 보아 이질적이다. ②시기가 다른데 동일한 조성(組成)을 갖는 석기군이 적어도 3회에 걸쳐 연속하여 동일한 상황으로 출토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 상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제1차 조사 때 성악동굴유적에서 채취된 석기가 날조이고, 이에 甲野 전 교수가 관여한 것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1차 조사에서 발굴된 석기에 굽혀진 흔적이 많았다고 했는데 고고학의 전문가인 甲野 전 교수가 그러한 석기를 이용하여 유적을 날조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상기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3. 쟁점(3)에 관하여

취재, 보도를 함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피고 乙山은 집필 전에 본건 기사의 내용대로 乙野 부장, 丙山 및 戊原 으로부터 들었고, 심포지엄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전기 2 (2) 가)인정의 각 사실이 인정되며 성악동굴유적에 어떤 인위적 작위가 가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된 데에는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고고학자에게 유적날조의 의혹을 갖게 하는 일은 그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건 각 기사에서 甲野 전 교수가 날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적시함에 있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조사 및 사실에 상응한 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채용될 수 없다.

4. 쟁점(4)에 관하여

(1) 본건 각 기사의 게재는 甲野 전 교수의 명예를 침해했으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기사의 내용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적에서 발견된 석기가 날조된 것이고 이에 甲野 전 교수가 관여했다고 오신케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게재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

또 본건 각 기사는 고고학자로서의 甲野 전 교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켰으며, 그가 자살을 결의할 만큼 다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더욱이 본건 각 기사는 약 88만부에 이르는 많은 발행 부수를 갖고 있는 <주간문춘>에 3회에 걸쳐 게재되었다.

본건 각 기사를 게재한 동기에는 제1차 조사 때 채취된 석기가 인위적으로 매장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고고학적 가치를 밝히려는데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전기 2 (2) 가)에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상기 석기가 날조되거나 작위적으로 놓여졌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한 인물이 제1차 조사단 관계자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비록 甲野 전 교수가 날조에 관여했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론의 과정에는 일단 합리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본건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할 때 甲野 전 교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600만엔으로 정함이 상당하며, 상속분에 따라 원고 花子は 300만엔, 원고 一郎과 二郎은 각 150만엔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피고 등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원고 花子에게 30만엔, 원고 一郎과 二郎에게는 각 15만엔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 花子에게 330만엔, 원고 一郎과 二郎에게 각 165만엔 및 지급이 끝날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건 각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의 저하 등 본건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의 지불만으로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본건 각 기사를 게재한 주간지 「주간문춘」지상에 별지1 내용의 사죄광고를, 별지2의 게재조건으로 게재할 의무가 있다.

<별지1> : (사죄광고 내용 생략)

<별지2> : (게재조건) 1. 사용하는 활자 : ①제목은 10.5포인트 고딕체 ②본문은 10.5포인트 명조체.

2. 게재장소 : 광고, 그라비아를 제외하고 앞쪽 표지로부터 최초의 페이지 또는 이에 준하는 페이지.

출처 : 『판례시보』, 1826호 pp103~116

번역 :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프랑스 판결

초상권은 당사자의 명시적이고 특정적인 동의가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게재할 수 없다

판례명 : Arielle Dombasle c/ SA Conception de Presse

판결법원 및 판결일자 : 프랑스 파리지방법원 민사17부

2003년 7월 7일 판결

사실관계

월간잡지 '앙트르브' (Entreuve, 대담이라는 뜻)는 2001년 8월호에서 "아리엘(Arielle Dombasle)이 '플랭 소레이' (Plein Soleil, 가득한 태양 또는 의역하면 태양은 가득하다는 뜻)에서 흥분하는 동안에 '프랑스2'

(France2, 국영 텔레비전방송국) 방송국은 여기자를 내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사건 청구인인 아리엘이 명백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2에서 2001년 6월 15일 방영한 성적 교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여기자가 며칠 후 좌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프랑스’ 방영에 따른 제재를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아리엘과 관련하여, 앙트르브 지는 “아리엘의 폭행이 방정 할 때”라는 기사에서 아리엘이 남자배우 클라우스 킨스키(Klaus Kinski)와 공연한 ‘열정의 과실’(Les Fruits de la Passion)이라는 영화에서 매우 에로틱한 포즈로 완전 누드로 된 장면을 게재하면서, “아리엘은 성적 교류에 대하여 매우 불쾌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데, 실제로 아리엘은 경솔할 뿐만 아니라 정숙하지 못하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에 아리엘은 앙트르브 지의 기사는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시사항

첫째, 아리엘은 앙트르브 지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은 잡지사가 영화의 극히 일부분을 발췌하여 그녀의 나체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이는 민법전 제9조에 규정된 사생활보호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직업적인 여배우의 영화장면에서 연출된 나체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민법전 제9조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사생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둘째, 반면에 앙트르브 지에 의한 아리엘의 초상권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앙트르브 지는 1981년 칸영화제에 출품된 ‘열정의 과실’이라는 영화에서 청구인인 아리엘의 완전 누드 장면을 아리엘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잡지에 게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잡지에 게재된 사진은 영화의 일부 장면에 불과하며, 영화의 매우 작은 일부 장면을 게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침해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민법전 제9조에서 예견하고 있는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장면의 게재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발행하는 잡지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비평 및 정보의 자유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잡지에 게재된 사진을 살펴보면 아리엘이 매우 음탕하고 부정한 여자처럼 보이게 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논평 또한 매우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결과적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영화가 마치 포르노영화처럼 오인될 소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만일 아리엘이 이를 사전에 알았다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사진의 게재를 거부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생각건대 개인의 인격권의 일부인 초상권은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것으로서, 초상권은 당사자의 명시적이고 특정한 동의가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재할 수 없으며, 각 개인은 자신의 초상과 관련된 내용의 배포 여부에 관하여 궁극적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사진의 주체가 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진은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한다. 비록 청구인인 아리엘이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요염한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의 게재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리엘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인 아리엘에게 금 1500유로의 손해배상을 명한다.

평 석

이 사건에서 청구인인 아리엘은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런데 파리 지방법원은 분제의 사진은 직업적인 영화배우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생활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에 이와 같은 사진의

게재가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영화의 배우 작은 일부분을 인용한 것은 저작권침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인용이 비평이나 논쟁 또는 교육적이고 과학적이거나 혹은 정보제공의 성격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강변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점이 제기된다.

첫째, 지적소유권의 대상인 저작물(작품)의 인용에 있어서 초상권을 어디까지 인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저작물을 인용함에 있어서 매우 간단하고 짧은 인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문학작품의 간단하고 짧은 인용은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문학작품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널리 일반화되어 있어서 특별히 저작권이나 사생활 등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시청각작품의 인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서 다소 미묘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뮤지컬작품의 경우 개인의 저작권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시청각작품의 발췌물 그 자체가 저작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인용이 금지된다. 예컨대 연재만화의 각 삽화는 인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영화장면의 인용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일의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영화의 한 컷 즉 각 장면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쟁적 사안이다. 사실 영화란 그 전체가 하나의 총체적인 흐름에 기초해 있으며 영화의 각 컷은 뮤지컬과 같이 하나의 독자적인 저작권성을 부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시청각작품에서 사진작가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하여 시청각작품에서 사진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

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화의 각 장면은 흔히 공개적으로 재생되고 있어서 문제되고 있다. 어쨌든 영화의 각 장면이 저작권의 대상이 될 것이냐의 문제는 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법원은 비록 영화의 각 장면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개인의 초상권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그렇다면 개인의 초상권은 한계가 없이 무제한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만일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개인의 초상권 보호는 저작권보호와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적인 영화의 한 장면을 게재하는 문제와, 게재된 사진이 개인의 초상권과 관련되는 문제는 별개의 법적인 논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사실 사생활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유럽인권선언 제8조와 제10조 및 민법전 제9조와 관련하여 모두 다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이들 권리의 균형적 적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 판결에서는 영화배우가 영화에 출연하여 촬영된 장면에 대하여 이를 개인의 사생활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이해한 것은 정당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이 비록 영화배우로서 영화에 출연한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전신나체 사진을 게재하고 이와 더불어 그에 대한 좋지 않은 평석까지 가하면서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판결에서는 개인의 초상권에 근거하여 이를 게재할 시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영화의 한 장면을 언론사에서 게재할 때마다 당사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영화의 특정 장면을 언

론에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언론지면에 연예인이 게재되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 대한 배려의 성격도 갖고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은 보도의 전반적인 맥락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처럼 매우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특정장면을 게재하는 것은 사후적인 법적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판결은 사전 동의를 일반화 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초상권을 보호하자는 데에 그 진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LEGIPRESSE 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통권 207호, 2003년 12월호, 196면 이하.

번역 및 평석 :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독일 판결

변호사인 피고인의 이름과 성을 줄여 표시하여 누구인지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시한 보도는 공익에 해당되는 보도로서 허용된다

2002년 10월 7일자 판결 - 21 W 2385/02 (퀀헨 지방상급법원)

참조조문 : 민법 제823조, 제1004조

판결요지

1. 법률구조기관인 변호사의 행위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면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누구인지 공표할 경우, 그의 이름과 성을 줄여 표시함으로써 누구인지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시했다면 이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되는 보도로서 허용된다.

2. 제2심에서 금지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법원이 그 변경을 사안에 유익한 것으로 볼 경우에만 허용된다.

판결이유

1. 신문이 법원의 소송사건에 대해 보도할 경우, 피고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보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4. Aufl. Rdn.

10,169과 비교하시오). 형사소송사건을 보도할 경우 피고가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게 보도하는 것은 피고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고, 독자들에게는 피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소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BVerfGE 35 S. 202[231] - Lebach). 따라서 판결문이 공표되기 전에는 일반인의 알권리가 피고 자신의 인격을 보호 받고 명예를 유지할 권리를 앞서는지 여부 및 피고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시한 보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본래 중대한 범죄사건에서만 또는 일반인과 관련이 많은 범죄행위에서만 고려된다. 만약 누구인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시한 보도가 비판보도의 중요성 때문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그 근거로서 제시된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변호사의 행위가 법률구조기관으로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법률구조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여하였다고 하는 범죄는 사법부와 관계가 있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대한 공익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예컨대 이익을 보면서 반대로 이익을 주기도 하는 불법행위(BGHZ 143 S.100 = AfP 2000 S.167 = NJW 2000 S.1036)의 경우처럼 피고인 및 범죄의 종류를 판단해 볼 때 중대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보도가 허용되는 더 높은 가치가 신문의 정보제공 역할에 추가 인정된다(Loeffler/Steffen, Presserecht, 1. Aufl. 6 LPG Rdn. 28과 비교하시오).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건의 전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신문의 정당한 보도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사단계에서의 혐의를 보도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소가 된 때 보도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적법하고 정당한 청구, 변론의 기회를 제공한 후에 법원이 혐의사실을 상세히 심리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03조)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보도에서 신청인의 성을 줄여 표시함으로써 신청인으로 알아 볼 가능성이 적도록 노력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보도에서 언급된 변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만이 변호사명부를 살펴보면서 “변호사 Hans-Dieter G”로 표시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도에서 언급된 변호사가 자신의 일에 관계된 변호사가 아니길 원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변호사명부에서 누구인지 밝혀낸다는 것은 상당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변호사를 찾기까지는 “G”로 시작되는 대략 250여 명이나 되는 다른 변호사의 이름을 거쳐 가야만 한다. BRAK-홈페이지 및 DAV의 사 이버상에서는 “Hans-Dieter G.”를 발견할 수 없었다. RAK Muenchen에서도 위의 표시로는 Miesbach 출신의 변호사를 찾을 수 없었다. “노란표시면”의 “G”에서

신청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형사법 담당 전문변호사 페이지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밖에 성이 표기되지 않은 수많은 변호사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II.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주장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신청은 이유가 없다.

만약 신청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적시되었다면 피신청인은 신문에서 특정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신청인의 보완 신청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구체적인 주장도 전파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본래의 신청 목적이었다면- 신청인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을 전파한 것은 사실의 주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금지청구는 결국 신청의 확대형태로 된 신청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보충 신청에서는 그것의 반복위험 또는 그것이 처음으로 시도된 위험이 있다는 것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본래 전파된 주장은 그것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Soehring, aa.O., Rdn. 307과 비교하시오). 그러나 이 사례에서의 특이한 점은 그 주장들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판결이 나기 전에 공표되었다는 것이다. 2002년 9월 25일에 내려진 판결은 다툼의 대상이 된 주장과 관련이 있고 -적어도 잠정적으로- 범죄행위를 비난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피신청인의 주장이 다시 전파될 수 있다는 추정은 2002년 9월 25일자 판결을 통해 제거되었다. 피신청인이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02년 9월 25일자 판결의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이 한 주장을 고수하면서 이를 공표했을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되었다.

출 처 : AfP(Zeitschrift fuer Medien- und Kommunikationsrecht, 34. Jahrgang, Heft5-2003), SS. 438-439

번 역 : 손 원 선 (법학박사)

□

영국사례 1

**반론권은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요건
하에서만 수용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불만신청은 이유 없어**

불만신청

한 여성이 2003년 9월 12일자 London Jewish News에 게재된 “유대인 학생과 시오니즘에 대한 맹세”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실천강령 제1조(정확성)를 위반하고 사적인 내용을 공표하여 보도실천강령 제3조(사생활침해)를 위반했다며 PCC에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신문사가 자신에게 문제의 기사내용에 대한 반론권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보도실천강령 제2조(반론권 보장)를 위반했다고 불만을 신청했다.

불만신청은 기각되었다.

불만신청인은 신문에 게재된 기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잘못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자신의 비평을 오

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사 중에 자신이 기자에게 보냈던 사적인 편지내용의 일부를 공표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불만신청인은 그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 반론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문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불만신청인의 견해가 담긴 많은 편지를 수 차례 게재해 주었으며, 다양한 입장을 가진 많은 사람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녀가 불만을 제기한 기사는 그녀 자신이 스스로 표현한 의견에 대한 정상적인 논박이었으며 기사내용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생활 침해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불만신청인은 그 기사가 그녀의 입장, 그리고 특히 그녀의 사적인 편지를 왜곡보도함으로써 그녀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왜곡보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자에게 보낸 그녀의 사적인 전자메일 전부를 신문사가 게재하여야 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그녀가 불만을 제기했던 부분은 반론기회를 갖지 못하고 게재된 기사가 왜곡된 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었다.

평결

PCC는 많은 신문들의 독자투고면에 게재된 다양한 주장들로부터,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자투고자가 그들에 대한 비평이나 그들의 입장표명에 대해 반드시 반론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경우에 있어서 기자가 불만신청인의 관점을 잘못 해석했으며, 그녀가 보낸 개인적인 전자우편 내용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신청인 주장은 인정했다. 그러나 보도실천강령 제1조의 '정확성'의 기준에 의거해 판단해 보건대, 위원회는 기자가 신청인의 관점을 재해석하여 게재한다는 점을 밝혔고, 신청인이 보낸 전자메일을 게재한 것이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천강령 제1조상의 '왜곡된 사항'이 아니므로 게재된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도실천강령 제1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한 '부정확한 보도에 대한 반론권' 조항인 보도실천강령 제2조

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 하건대, 합리적으로 요구되어질 때 수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비추어 본다면 기사가 제2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는 신문사가 독자들의 편지를 게재할 때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명백히 8월 1일자에 게재된 그녀 자신의 편지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사항으로서 전자메일의 내용이 이미 공적인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사에서 언급한 것이 보도실천강령 제3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

개의 별개 이미지를 합성해서 하나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문사는 그 사진이 두 개의 다른 이미지를 합성해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윤락녀처럼 포즈를 취한 여성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제 사진촬영에 응한 여성이 맞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사의 매춘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성 매매의 증가현상은 공적인 영역에서 비판되어야 할 사회문제이므로 이러한 사진의 사용은 설사 실제장면이 아닐지라도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신청인은 신문사가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기사목적에 맞게 사진을 왜곡·날조했다고 반박했다.

영국사례 2

합성사진을 게재하면서 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세히 알리지 않은 것은 보도실천강령 위배

불만신청

한 남자는 2003년 10월 12일자 Luton on Sunday지 "타락한 소녀들, 잘사는 동네로 가다" 제하의 기사에 게재된 사진이 왜곡되게 조작되어 보도실천강령 제1조를 위반했으며 PCC에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불만신청은 수용되었다.

불만신청인은 Luton거리에 증가하는 매춘실태 관련 기사에 첨부된 사진은 실제 장면을 그대로 현상·게재한 것이 아니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진에는 거리 코너와 도로 위에 타락한 분위기의 한 여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문제의 사진이 실제상황이 아니라 두

평 결

보도실천강령 제1조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이 사진을 포함해서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왜곡된 자료에 의한 기사를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PCC는 이번 사건에 있어 문제의 기사내용 자체는 정확했는지 몰라도 피신청인 신문사의 편집자가 실제 장면을 그대로 현상한 사진

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그 사진이 실천강령 제1조에 해당하는 중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결과 결론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제공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문사는 독자들이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진 설명을 하

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위원회는 편집자들에게 사진을 어떤 식으로든 변형할 때에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사진을 변형시키는 것이 중요한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이러한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이 사건에서처럼 사진을 변형한 정도가 아니라 합성해서 게재한 경우에도 사진이 변형되었고 인공적으로 조합된 것이라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복이 복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불기소 이유로서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증거 부족'과 더불어 여타의 요인들을 고려한 결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사는 토착민 대표자들에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얻을 수 없었다.

신청인 Trevor Jewell 씨는 제목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고는 보도된 것처럼 어떤 부족 법이나 보복과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Balgo 지역에서 헬스 센터를 운영하는 신청인은 "폭력 사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끔찍한 사고에 대한 대항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문사는 신청인이 보도 내용 중 한 남자가 원주민에 의해 잔인하게 공격당했고 경찰이 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결국 신문평의회는 McLean 씨의 진술에서 유래한 기사제목은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왜곡했다고 인정하여 이 범위 내에서 제목에 대한 불만신청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과 주장은 정확하게 보도되었다

호주사례 1

기사의 제목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므로 기사제목에 관한 불만신청만 일부수용

호주신문평의회는 Trevor Jewell 씨가 West Australian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 중 기사제목에 대한 불만신청 부분은 수용했지만, 기타 다른 불만신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문제의 보도는 'Balgo Hills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에 가담한 폭력형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경찰의 결정'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기사는 '부족법에 의해 자유를 얻은 원주민 폭동자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토착민 집단이 '부족 보복 폭동' 중 백인 노동자를 잔인하게 구타했

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없었다는 취지의 고발내용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6세의 어린이가 뒤집힌 연료탱크 차에 깔려 목숨을 잃은 사건 때문이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즉시 도망쳤고, 그 지역 노동자인 Peter McLean 씨는 탱크로리가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는 동안 원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McLean 씨는 그 공격은 부족의 보복이었고, 경찰이 그러한 폭력행위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백인에 대한 보

고 판단하여 기타의 불만신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신문평의회는 신청인

과 McLean 씨의 의견 차이는 사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

호주사례 2

기사내용이 일방적 입장만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균형한 기사가 되었으므로 불만신청 수용

호주신문평의회는 Robin Krieg 씨가 Adelaide시의 지역신문인 The Advertiser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수용했다.

문제의 기사는 South Australia에 있는 루터교회에 대한 어느 목사의 제소가 부당하게 각하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제3면에 게재된 기사내용은 교회가 그를 면직하고 Gawler 전 목사로 대체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자신의 면직사유가 루터교회에서 발생했던 아동 성추행법으로 경찰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역교구 앞에 있는 목사의 사진까지 크게 게재한 기사는 루터교회 평의회에 제출된 목사의 회중(會衆)의사록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서류에 의하면 그의 목사직을 명백하게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Krieg 씨는 문제의 기사가 절반

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결국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 내용으로는 “목사의 성추행 혐의는 적어도 그가 면직을 당하기 9개월 전에 있었다. 그리고 수사가 끝난 후에 경찰은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거의 1년에 가까운 사건진행 기간 동안, 심지어는 최근의 심리가 있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그의 주요한 면직사유로써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 목사의 전 교구는 그 당시 교회평의회에 있었던 위기상태를 조사한 후 즉시 해결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회중(會衆)의사록에는 목사에 대한 도덕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교회평의회가 그를 목사직에서 물러나게 할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세 가지 부분이다.

더 나아가 Krieg 씨는 해당 기사가 교회평의회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듣지 않고 단지 그 목사의 입장만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기사가 되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The Advertiser지는 강하게 불만신청을 거부했다. 기사의 유일한 취재원으로는 해당 목사와, 검사, 그리고 이들이 제공한(교회 회중의사록 사본이 포함된) 서류들뿐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The Advertiser지는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교회 책임자에 대해 취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보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의 원인이 목사와 교회평의회간의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신문사가 불충분하게 전달한 데 있다고 판단했다. 즉 신문사는 기사 보도시 각각 다른 관점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했어야만 했다. 만약 교회평의회나 회중의 대표자들이 어떠한 언급을 하고 싶지 않거나 접촉할 수 없었다면 문제의 기사는 이러한 부분까지 언급했어야 했다.

결국 신문평의회는 기사가 불균형하게 보도됨으로써 목사에 대한 사건이 각하된 것을 둘러싸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불만신청을 수용했다. □

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명예훼손 패소 신문사 가압류

경찰 출처로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신문사 기물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천지역 인터넷신문 인천뉴스(dailyincheon.com)는 지난 13일 인천지방법원이 이날 경인일보 인천지사에서 750만원 상당의 복사기, 프린터 등 신문제작 집기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인천일보와 기호일보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집

행됐다. 가압류 집행이 된 뒤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감정을 거쳐 경매에 부쳐지게 된다.

이OO 전 민주노총 민주택시노련 해고특위 위원장은 새 신문에 대해 2000년 12월 자신의 혐의사실을 경찰 발표에만 의존해 보도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 신문은 지난달 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1,0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내부 문

서를 열람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비공식적인 확인절차를 밟은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해당 혐의사실에 대해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경인일보 쪽은 "한국 언론의 취재관행 문제이기도 해 일단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2004. 1. 16.

오마이뉴스 등 병풍 잘못보도 1억 배상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제기한 김OO(구속 중) 씨와 이를 보도한 두 언론사는 한나라당에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는 15일 한나라당이 "오마이뉴스 등의 허위보도로 지난 대선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며 김OO 씨와 오마이뉴스 오연호 발행인, 일요시사 이용범 발행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한 김씨와 이를 보도한 기자 등은 한나라당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나라당에 일부 승소판결했다. 배상액은 김씨 5,000만원, 오마이뉴스 측 3,000만원, 일요시사 측 2,000만원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마이뉴스 측은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해들은 이야기나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보도했지만 기사 전체의 맥락이나 보도 경위에 비춰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가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인상을 강하게 줬다"며 "병역비리 은폐의혹 보도로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한나라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

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은 김OO 씨가 제보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김씨 진술의 신빙성으로 볼 때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등은 군검 합동 병역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재작년 5~6월 수사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던 김OO 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97년 이회창 후보의 장남 OO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 2004. 1. 16.

대법원, 기자실 폐쇄 공무원에 벌금 160만원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재운 대법관)는 3일 울산시청 기자실을 강제 폐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포함

한 울산 지역 공무원들이 시청 기자실을 폐쇄키로 공모, 기자실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기자들을 내보낸 후 자물쇠를 교체하고 출입문을 봉인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 울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

속 공무원들은 지난 2002년 8월 12일 기자실 폐쇄투쟁 다짐대회를 개최한 뒤 울산시청 내 기자실을 찾아가 업무 중인 기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각목과 테이프 등으로 출입문을 폐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일보, 2004. 2. 4.

청와대, 조선일보에 10억 손해소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두 번은 같아 마셨겠지만...”이라는 제하 기사를 지난 12일자에 게재한 조선일보사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안영배 청와대 부대변인이 16일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그 기사가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의 명백한 오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대통령의 검찰독립 의지를 훼손하는 한편 상상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판단했다”고 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

그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낼 계획이고 조선일보사 보도 및 편집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편집국장, 정치부장, 취재기자에게도 연대 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면서 “개별적 취재 불응조치는 조선일보가 명백한 오보임에도 사후 어떤 사과나 반성의 조치가 없었음에 유의, 언론사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부대변인은 “홍보수석실은 조선일보에 대해 기자의 청와대 기자실

출입, 공식자료 배포, 대변인 브리핑 참석, 대변인 상대 취재 등 공공적 차원의 서비스는 보장하되 개별적 취재는 불응토록 전 비서실에 공지할 계획”이라며 “취재불응 조치는 조선일보의 납득할만한 가시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각한 왜곡과 오보에 맞선 취재원의 합법적 대응과 개별적인 취재불응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고유한 자유이자 권리이며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언론과의 관계 정상화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4. 1. 16.

앵커 '모멸적 멘트' 3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신 아무개 변호사가 '인신공격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문화방송과 권 아무개 앵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화방송과 권씨는 신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뉴스를 진행하면서 신씨를 '순백의 법조인'과

대비시켜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라거나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잘못을 지나치게 과장한 의견 표명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이므로 이에 따른 신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진실성은 인정되므로 취재기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99년 '9시 뉴스 데스크'에서 지역 법관으로 자임한 변호사들의 '미담사례'에 뒤이어 재판 과정에서 위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자신의 과실이 앵커의 모멸적인 표현과 함께 소개되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겨레, 2004. 1. 26.

학술토론회 명예훼손 고소

대전법조비리사건 당사자인 이○○ 변호사가 인제대 김○○ 언론정치학부 교수와 대전MBC 김상기 사장을 대전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지난 2003년 7월 한국기자협회 제29회 기자회견에서 김 교수가 발표한 '대전법조비리사건과 한국언론, 표현자유 현실'이란 발제문의 일부 내용과 △대전

MBC가 김 교수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공방을 벌여봐야 알게 될 것"이라면서도 "학술토론회조차 문제삼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 변호사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법

조비리를 보도한 기자들이 2003년 12월 항소심에서 일부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목원대 이승선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해당 발표문의 경우 진실성과 공공성이 인정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사안일 뿐 아니라 인터넷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협회보, 2004. 2. 25.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 인정” 첫 배상판결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 판사는 5일 국내 최대 병역특례 취업안내 유료웹사이트 운영자인 이모 씨가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다”며 또 다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8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데이터베이스라도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 즉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모아 분류, 선택하고 배열한 창

작성이 있으면 편집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각 업체에 전화나 e-메일, 팩스 등을 이용해 직접 수집한 구인정보를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분류, 정돈했으므로 정보의 선택, 배열, 검색조건 등의 독창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상액과 관련, “피고는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기간과 전년도 같은 기간 원고가 웹사이트로 벌어들인 수입의 차액인 840만원을 배상하되 데이터베이스 불법복제로 인한 손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감안, 정신적 고통에 대해 3천만원의 위자료도 함께 배상하라”고 밝혔다.

원고는 2000년 4월 병역특례취업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인수받아 기업체에 문의해 자료를 얻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해 운영했으며 피고가 운영하는 유사 사이트 관리자인 김모 씨가 2001년 12월 원고의 웹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 자신의 사이트에 형식만 ‘살짝’ 바꿔 게재하자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4. 2. 5.

조선 ‘한겨레 선종개혁 비방’ 보도, 위법성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6일 한겨레신문사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취재기자, 심규철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위법성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 의원의 이른바 ‘처첩 발언’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한겨레가)언론개혁을 주도하는 정권에 연합하기 위해 언론개혁 시리즈 등을 보도했다는 인상을 주었으므로 명예 및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비판 내지는 의견

표명이라고 보여지며, 언론사 상호간 비판은 표현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언론사 상호간 활발한 비판의 필요성 등에 비춰 위법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언론장악저지특위의 발표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정부에서 일부 언론에 특정신문 공격자료 제공”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독자들에게 한겨레가 정권과 연합해 정부에서 자료를 받아 조선일보사 등을 공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으므로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언론에 대한 의혹제기는 다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판이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점에 비춰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겨레>쪽은 “정당과 정치인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을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것까지 언론자유의 영역이라며 면책해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의 책임을 다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세무조사 등 ‘언론개혁’이 진행되던 지난 2001년 조선일보가 한겨레의 언론개혁 주장과 관련 시리즈 기사에 대해 “개혁을 방자한 정권과 이를 옹호하는 신문간의 권언유착”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내자 한겨레신문사는 조선일보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겨레, 2004. 2. 7.

이삼삼 변호사, MBC 상대 실백 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8일 ‘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OO 변호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검사들에

대한 항응 제공, 비도덕적인 사건수입 및 부당한 변론활동 등에 대한 보도는 위법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소위 법조계의 전관예우 등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주된 기조였지만 원고 개인에 국한된 사항과 관련해 상당 시간이 할애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99년 MBC가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 법조비리를 보도한 뒤 이듬해 1월 모두 10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2004. 3. 8.

취재대상 '비이성적 진술'만 부각하면 명예훼손

취재대상의 비이성적 진술만 부각해 보도한 방송사는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남굴사) 회원 8명이 "편파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송사는 원고 1인당 150만원씩 1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방송사는 전체적으로 흥분한 상태에 있던 회원의 진술만 보도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회원의 진술은 생략해 남굴사 회원들이 이성적 판단력을 잃은 채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인상을 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굴사 회원들의 무단 행위로 예산상비와 주민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한 보도의 공익

성은 인정되지만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다소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고 방송사는 지난해 2월말 저녁 뉴스에서 '황당한 땅굴 찾기'라는 제목으로 남굴사 회원들의 땅굴주장을 확인하느라 국방부 예산이 낭비되고 아들이 허가 없이 남의 땅을 파헤치고 있다는 내용을 남굴사 회원 진술과 함께 보도했다.

연합뉴스, 2004. 2. 15.

경찰이 취재기자 강제연행, 국가가 배상

시위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이 강제로 연행한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기자 송모(33·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원고가 사진기를 갖고 있으면서 기자 신분임을 밝혔는데도 원고에게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해 사실여부를 가리지도 않고 강제로 연행했다"며 "현행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경찰이 강제로 체포하거나 연행한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2년 5월 서울 여의도 한나리당 앞에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미신고 항의집회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으나 경찰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기자임을 밝힌 송씨까지 연행, 두 차례나 경찰서에 유치했다 석방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4. 1. 20.

법원 "공직자, 언론이 제기한 의혹 적극 확산해줘야"

'공직자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전직 검사 조모 씨(42)가 문화방송(MBC)과 이 방송 이모 기자(35)를 상대로 "편파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검사였던 원고가 중복기소 여부를 확인하려 온 기자에게 '사소한 실수에 불과하다'고 되풀이하며 '기자가 무슨 사실을 확인하느냐, 당신이 수사관이냐'고 답변해 기자로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웠

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기자의 방송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되지만 취재과정상 기자가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상당하고,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조 전 검사는 1998년 제직 당시 박모 씨가 조모 씨를 사기죄로 경찰과 검찰 양쪽에 모두 고소한 사건을 맡았다가 조씨가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모른 채 다시 기소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재판정에 서게 된 조씨는 MBC에 이 같은 내용을 재보하면서 "'이리 재판 받은 판결문이 있다'고까지 말했다지만 검사가 믿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조 전 검사는 자신을 찾아온 이 기자에게 40여 분간 해명을 하면서도 "사소한 실수에 불과하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자 이 기자는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조 전 검사의 반론 내용과 함께 9시 뉴스에 내보냈다.

재판부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약의적이거나 상당성을 현저히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기사가 확인을 소홀히 해 당시 조 검사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동일일보, 2004. 3. 1.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출범

위원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에는 2명의 변호사와 6명의 직원이 상근하면서 민원의 방문 시 직접 상담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실시간 상담 등 언론피해와 관련된 법률

문제 전반에 걸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언론사·일반기업·각급 학교 등 각종 기관 및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피해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무실 이전, 전화번호 변경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출범으로 사무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지난 12월 기획실(기획팀, 총무팀, 조사연구팀)이 프레스센터빌딩 15층에서 9층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사무처 전화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됐다.

대표전화 : 397-3114 / 상담전화 : 397-3000, 3010, 3100

- 위원장실(프레스센터 16층) : 397-3001~2
- 사무총장실(프레스센터 15층) : 397-3003, 3006
- 기획실(프레스센터 9층)
 - 기획실장 397-3020, 3030
 - 기획팀 397-3021~4, Fax 397-3029

- 총무팀 397-3031~6, Fax 397-3029
- 조사연구팀 397-3041~5, Fax 397-3049

- 중재심의실(프레스센터 15층)
 - 중재심의실장 397-3050, 3060
 - 심의1팀 397-3051~7, Fax 397-3069
 - 심의2팀 397-3061~3, Fax 397-3069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프레스센터 15층)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실장 397-3070, 3080
 - 법무상담팀 397-3071~4, Fax 397-3089
 - 교육홍보팀 397-3081~4, Fax 397-3089
- 전문위원실(프레스센터 15층) : 397-3090~3

홈페이지 개편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가 4월 1일 개편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메뉴가 신설되며, 상담센터의 주요 기능인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실시간 상담'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온라인

실시간 상담'은 인터넷상에서 전문상담원과 1대1 채팅을 통해 이뤄지는 상담 서비스로서, 중재상담을 비롯한 각종 언론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무처 인사

위원회는 4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사무처 인사를 단행했다.

<p>■ 실 장</p> <p>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기획실 임 병 국 (전보)</p> <p>기 획 실 권 우 동 (승진)</p>	<p>전문위원 오 광 건 (전보)</p> <p>전문위원 황 정 근 (전보)</p>	<p>부 산</p> <p>여 종 국 (전보)</p>	<p>■ 직 원</p> <p>기 획 남 승 근 (신규)</p> <p>총 무 오 윤 미 (전직)</p> <p>박 경 미 (신규)</p>
<p>■ 팀 장</p> <p>기 획 권 오 근 (승진)</p> <p>총 무 정 희 성 (승진)</p> <p>조사연구 김 일 경 (전보)</p> <p>심의 1 장 원 상 (전보)</p> <p>심의 2 이 진 숙 (전보)</p> <p>법무상담 양 재 규 (신규)</p> <p>교육홍보 박 재 선 (신규)</p>	<p>■ 차 장</p> <p>기 획 손 정 배 (승진)</p> <p>총 무 이 마 경 (전보)</p> <p>조사연구 조 남 태 (전보)</p> <p>심의 1 강 현 석 (전보)</p> <p>법무상담 이 수 종 (승진)</p> <p>■ 지방사무소장</p> <p>경 기 심 영 진 (전보)</p>	<p>심의 1 김 윤 정 (전보)</p> <p>심의 2 이 진 아 (신규)</p> <p>법무상담 정 하 진 (신규)</p> <p>조 수 정 (신규)</p> <p>교육홍보 여 은 규 (전보)</p> <p>심 영 진 (전보) 최 은 진 (신규)</p>	<p>교육홍보</p> <p>심 영 진 (전보)</p> <p>최 은 진 (신규)</p>

위원회 창립 23주년 기념식 개최

위원회는 창립 23주년을 맞아 3월 31일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위원장은 장원상 중재심의실 심의2팀장, 손정배 기획실 기획팀 직원에게 장기근속상을, 박혜진 기획실 기획팀 직원,

안백수 기획실 총무팀 직원, 김윤정 기획실 총무팀 직원, 최승민 중재심의실 심의1팀 직원, 김형국 기획실 총무팀 직원, 윤은자 중재심의실 심의1팀 직원에게 유공직원표창을 각각 수여하고 격려했다.

신입직원 8명 채용

위원회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출범을 앞두고 상근 변호사 2명을 비롯, 총 8명의 신입 직원을

선발했다. 이들은 5일간의 신입직원 교육을 거쳐 4월 1일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 상근변호사

양 재 규 (31. 고려대 법학과 졸업/2019년 1월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박 재 선 (28. 연세대 법학과 졸업/2019년 1월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일반 직

남 승 근 (28. 서강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정 하 진 (26.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최 은 진 (23.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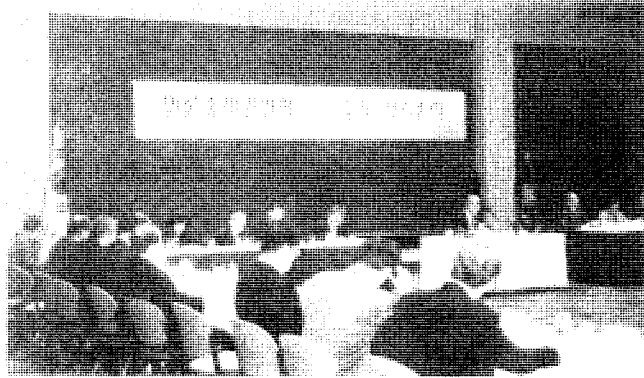
이 진 아 (23.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졸업)

□ 기 능 직

조 수 정 (28. 고려대 생명과학과 졸업)

박 경 미 (22.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2004년도 정기총회 개최



위원회는 2월 2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이달 3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9명의 운영위원과 7명의 시정권고위원을 새로 선출했다.

선출된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
위원장, 송 정 제 부위원장,
이 종 욱(1부), 양 삼 승(3부), 김 재 덕(5부),
박 기 성(대구), 이 문 욱(대전), 김 건 영(경기),
권 혁 남(전북) 위원
- 시정권고위원
위원장, 이 병 훈 부위원장,
변 화 석(2부), 주 길 치(2부), 윤 기(3부),
신 찬 군(4부), 박 봉 간(4부) 위원

2003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실시

2004년 1월 2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03년도 하반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내부 회계감사가 있었다. 최광일(서울제3중재위원), 임경숙(경남중재위원), 김사는 제반 증빙서류와 예산집행자료

등을 근거로 회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행예산 모두 적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물품 및 사무실 예치보증금, 퇴직적립금 등 자산도 적정하게 관리되었다고 밝혔다.

2004-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4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가 2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 200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승인 등 정기총회 상정안을 검토하고, 운영규칙 등 각종 규칙개정안들을 심의 의결했다.

일부 중재부장 새로 위촉

법원의사이동(2월 11일자, 18일자)으로 결원이 된 중재부장들이 지난 17일 새로 위촉됐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제3중재부 김상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광주 중재부 구광선 광주지법 부장판사
- 경기 중재부 한병의 수원지법 부장판사
- 강원 중재부 조용준 춘천지법 부장판사
- 충북 중재부 정형식 청주지법 부장판사
- 제주 중재부 김연경 제주지법 부장판사

2003년도 중재신청건수, 역대 최대 724건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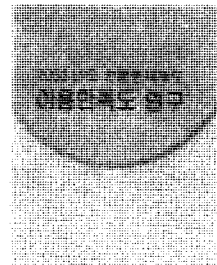
위원회는 2003년 한 해 동안 모두 724건의 중재신청을 접수 처리했다. 이는 전년보다 213건(41.7%)이나 증가한 것으로 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신청건수를 기록했다. 실제 피해구제율도 67.6%를 기록, 전년도(57.6%)보다 10% 높아졌다. 처리결과별로 보면 합의 286건(39.5%), 중재불성립결정 101건(14.0%), 중재결정 31건(4.3%), 취하 276건(38.1%), 기각 27건(3.7%), 각하 3건(0.4%)

등이다. 작년에 비해 합의율(35.6%→39.5%)이 다소 높아진 반면, 취하율은 조금 낮아졌다(43.6%→38.1%).

한편, 위원회는 정기간행물 98종에 대한 자체 심의를 통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237건의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시정권고건수는 전년에 비해 9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만족도 연구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최근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이용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03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위원회가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를 수록한 것이다. 조사는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언론중재를 받아본 적이 있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언론사)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평가와 만족도, 개선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묻은 것이다.



2003년도 연차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2003년도 언론중재신청사례 및 시정 권고사례 등을 수록한 『2003년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2003년도 한 해 동안 접수·처

리한 724건의 중재신청사례 및 시정권고사례, 통계분석,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 김옥조, 『미디어윤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김지운, 『글로벌 시대의 언론윤리』, 한울, 2004.
- 언론중재위원회, 『2003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연구』, 2003.
- 권오근, “미국·일본 신문사의 옴부즈맨제도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3년 겨울호.
- 김기석, “한국의 정치지형과 17대 총선보도”, 〈2004 총선 보도 이렇게 합시다〉, 한국언론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세미나, 2004. 2. 24.
- 김남석, “지역언론, 지역사회와 총선보도”, 〈2004년 총선보도 이렇게 합시다〉, 한국언론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토론회, 2004. 2. 20.
- 김명호,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조응하는 방송산업정책”, 〈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방송산업 발전 전략〉, 여의도연구소 주최 토론회, 2004. 3. 9.
- 김동규, “폭로성 정치보도와 따옴표 저널리즘”, 『신문과방송』, 2004년 3월호.
- 김성규, “공인에 대한 보도의 한계”, 『방송문화』, 2003년 12월호.
- 김성규, “기사제목으로 인한 명예훼손”, 『방송문화』, 2004년 1월호.
- 김성규, “인용보도와 명예훼손”, 『방송문화』, 2004년 2월호.
- 김재영, “인터넷 실명인증제 도입 논란”, 『신문과방송』, 2004년 3월호.
- 김재협, “낙선·낙선운동의 공정성과 합법성의 범위”, 『신문과방송』, 2004년 3월호.
- 김재협,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의 면책기준”, 『언론중재』, 2003년 겨울호.
- 류한호, “선거보도 관련 법·제도 쟁점”, 『신문과방송』, 2004년 3월호.
- 류한호, “선거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바람직한 총선보도 모색을 위한 광주지역 토론회〉, 한국언론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개최 토론회, 2004. 2. 25.
- 문재원, “정간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관련법 세미나〉,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재단 주최 세미나, 2003. 12. 30.
- 박용상, “미디어비평의 이상과 현실”, 『언론중재』, 2003년 겨울호.
- 박용상,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언론중재』, 2003년 겨울호.
- 박정의, “어른조사보도, 이것이 문제다”, 『신문과방송』, 2004년 3월호.
- 성선제, “인터넷, ‘파운 글의 법적 책임’”, 『신문과방송』, 2004년 3월호.
- 손혁재, “17대 총선과 언론보도의 방향”,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4 총선물갈이연대, 2004 총선시민연대 주최 토론회, 2004. 2. 3.
- 송경재, “인터넷언론과 17대 총선”, 〈인터넷 매체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 토론회, 2004. 1. 28.
- 송경재, “정치권 폭로정국과 언론보도의 문제”, 〈폭로정국, 언론 그리고 총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 토론회, 2004. 2. 24.
- 송종길, “개정 선거법과 TV토론”, 〈17대 총선과 미디어선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세미나, 2004. 3. 11.
- 송해룡, “스포츠신문과 청소년보호법개정안”, 『신문과방

- 송], 2004년 1월호.
- 신미희, "무료신문 경영 및 광고 현황과 전망", 〈무료신문 실태와 신문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재단 주최 세미나, 2003. 12. 26.
- 안병영,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 마련 시급", 『방송 문화』, 2003년 12월호.
- 양문석, "지역 민영방송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방송환경의 변화와 '공익적 민영방송'의 가능성〉,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세미나, 2004. 2. 25.
- 엄기열, "2004년 (대구·경북의) 총선보도 방향에 대하여", 〈2004 총선보도 이렇게 합시다〉, 한국언론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개최 토론회, 2004. 2. 24.
- 윤석년, "지상파 방송시간 규제와 문제점", 〈방송시간 규제와 자율화〉, 한국방송협회 주최 토론회, 2004. 1. 29.
- 윤영철, "한국 언론전문직주의를 말한다: 분열과 충돌", 〈우리사회 언론인의 집단적 정체성 : 그 충원방식과 직업적 경로〉, 한국언론학회 주최 언론학포럼 1차 세미나, 2003. 12. 12.
- 이수범, "바람직한 총선보도와 지역언론의 역할", 〈2004년 총선보도 이렇게 합시다〉, 한국언론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토론회, 2004. 2. 13.
- 이승선, "바람직한 총선보도 방향", 〈2004년 총선보도 이렇게 합시다〉, 한국언론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토론회, 2004. 2. 18.
- 이용성, "17대 총선보도와 시민단체의 당락운동",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 토론회, 2004. 2. 3.
- 이용성, "바람직한 총선 보도 방향과 올바른 선거보도 감시 준칙 마련을 위하여", 〈시민의 선거보도감시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토론회, 2004. 2. 12.
- 이진로, "바람직한 총선보도 방향", 〈2004년 총선보도 이렇게 합시다〉, 한국언론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토론회, 2004. 1. 28.-29.
- 장낙인, "총선보도 이렇게 합시다", 〈2004년 총선보도 이렇게 합시다〉, 한국언론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토론회, 2004. 2. 16.
- 장하용, "한국 언론인의 직업경로에 관한 연구: 편집국과 보도국의 구조분석", 〈우리사회 언론인의 집단적 정체성 : 그 충원방식과 직업적 경로〉, 한국언론학회 주최 언론학포럼 1차 세미나, 2003. 12. 12.
- 장호순, "무료신문이 신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무료신문 실태와 신문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재단 주최 세미나, 2003. 12. 26.
- 장호순, "신문산업진흥을 위한 법제도 연구", 〈언론관련법 세미나〉,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재단 주최 세미나, 2003. 12. 30.
- 정연규, "2004년 총선보도, 새로운 실험", 〈2004 총선보도 이렇게 합시다〉, 한국언론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세미나, 2004. 2. 24.
- 최경진, "무료신문 보도행태 분석", 〈무료신문 실태와 신문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재단 주최 세미나, 2003. 12. 26.
- 최충용,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과 실행방안", 〈방송시간 규제와 자율화〉, 한국방송협회 주최 토론회, 2004. 1. 29.
- 황용석, "선거보도, 새로운 의제 공간 만들기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보도의 방향", 〈2004총선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언론재단 주최 세미나, 2004. 2. 12.-13.

On-Line 중계상당실



특종에 눈멀어...

3월 8일 뉴스프로그램에서 '진료거부 하는 의원'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는데 무엇이 진료거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뉴스에서 진료거부라고 단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기자가 이러한 상황을 조작하여 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뉴스란 제보에 의해 사실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로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황을 조작하여 뉴스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는 것은 이미 기자이기를 포기한 파렴치한의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라면 뉴스프로그램에서 보도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나 병원간의 합의에 의해 진료할 사람은 진료하고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는데 취재전에 의해 연출된 상황 이기에 방송에서 "진료를 하네, 못하네" 등의 언쟁이 오가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내용을 방송에 담기 위해 취재진이 일부러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조작된 뉴스를 특종이라고 보도하는 것을 보니 마치 한편의 코메디를 보는 듯 하였습니다.

진정 방송국에서는 이 뉴스가 조작된 내용이라는 것을 몰랐는지 의문이며, 만약 몰랐다면 내용을 확인도 안하고 그대로 방송한 방송사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해 강력한 항의하며 시정방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정, 언론중재위원회(보도내용)가
공과 합리 원칙을 심한 상황의 정정일'

가정 언론중재위원회(보도내용)가
공과 합리 원칙을 심한 상황의 정정일'

그러나 상황을 조작했는지의 여부 등 주재과정
상에서 발생한 문제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 위원회가
무能为力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문
자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피해당사자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고
쳐줄 호복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월 24일 방송사들이 보도한 '공동주택 관리규
약중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뉴스내용입니다

'애완 동물 키우려면 입주민 동의 얻어야'

◎양자: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중
종 이웃들간에 마찰도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애완동
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자: 윤씨는 4년 전부터 애완견 두 마리를
가족처럼 기르고 있습니다.

◎윤모 씨(서울시 옥인동): 옆집에서도 저 집 강
아지가 좀 짙는구나, 이렇게 저 집은 강아지를
가족처럼 길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기자: 하지만 이웃집 애완동물을 불편하게
여기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모 씨(서울시 여의도동): 개가 돌아다니면
서 번을 아무 데나 놓으면 불쾌하죠, 제일 싫어
요, 시끄럽고...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

려면 이웃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자체 규약으로 애완동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20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 주택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때 계단식일 경우 같은 라인, 그리고 복도식의 경우 같은 층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시정권고와 경고를 거쳐 벌과금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뉴스 맨 처음에 앵커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종종 이웃들간에 마찰도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에서는 입주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건교부와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동물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동물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건교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보도내용을 비교한 결과 각 방송사와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동의의 의미는 잘못 보도된 것입니다. 또 건교부 공동주택 담당자도 언론매체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오보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매일 마음이 불안하고 심한 두통으로 인하여 약을 달고 삽니다. 또 이웃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있고 마치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죄인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뜻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해도 뉴스를 본 시청자 아니 온 국민이 그런 뜻으로 인식했다면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정보도를 하루빨리 요구합니다.



문의하신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도의 직접적 당사자라 볼 수 있는 주무부처인 건교부 등이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 시청자나 시민 개인은 보도의 직접 당사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중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오보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2월 25일자 스포츠 신문 기사 중 오보라 생각되는 부분을 정정, 혹은 반론보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문제가 된 기사 부분입니다.

“god 멤버 손OO이 24일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손OO은 이날 세관출입문을 나온 이후 수분 동안 휴대폰으로 통화를 계속하며 ‘팬들’과 보도진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묵살해 스타로서의 몸가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기사 중 ‘팬들’은 손OO 씨에게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팬들이 공항에 간 이유는 계약문제로 난항을 겪으며 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을 손OO 씨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저 힘이 되어주러 갔을 뿐입니다. 팬들이 외치는 응원소리에 손OO 씨는 밝은 미소로 화답해 주었으니 결코 어떤 경우에도 ‘팬들’은 의도적 묵살을 당한 적도 없었구요.

그럼에도 위와 같은 실제 상황을 왜곡하여 마치 ‘팬들’이 손OO 씨에게 질문하는 동안 손OO 씨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팬들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묵살한 듯이 표현하여 일반독자들에게 손씨가 ‘팬들’로부터 스타로서의 몸가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기사를 작성한 것에 분노합니다.

민감한 질문에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스포츠 신문 보도진이 자신들의 질문을 묵살했다고만 하기엔 수위가 약하므로, 현장에 있었던 (100여 명의) ‘팬들’을 의도적으로 기사에 삽입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팬들’은 손OO 씨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의도적인 묵살을 당한 적도 결코 없고, 또 결과적으로 스타로서의 몸가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팬들의 입장’을 ‘팬들’중 한사람으로서 반론 또는 정정보도청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만, 해당 보도에 대해 특정 개인이 팬의 한사람이라는 자격으로 중재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해당 기사에서 특정 개인을 지칭하거나 특

정인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보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둘째, 이 보도의 내용이 손OO 씨의 특정 개인 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과 달랐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OO 씨라 볼 수 있으며, 언론중재신청은 보도에 직접 언급된 피해당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하지도 않은 말을 신문에서...

저는 경찰관입니다. OO신문사에는 '독자와 함께'라는 제목에 독자들이 현장고발이나 문제점을 호소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독자와 함께'란에 단속 경찰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경찰관이 한 것처럼 기사제목을 작성하고 제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기사를 작성하여 OO신문을 보는 독자로 하여금 경찰관이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에는 단속경찰관의 이름이나 아니셜 등에 의해 특정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OO신문을 구독하는 시민들에게 경찰 전체의 안 좋은 인식을 심어 주었고 또 당사자인 저에게는 사건의 진실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하여 진실이 왜곡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언론중재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중재신청은 꼭 서울에서만 가능한지요.



신문 보도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볼 때, 특정인이 거명되지 않았으나 담당경찰관이 1명뿐이라거나 주변에서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재신청은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에 따라 각 지역 중재부에서 사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입

니다. 2004. 2. 17. 모 방송국 요청에 의해서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국 기자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할 경우 본인의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기자에게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본인은 업무특성상 외부에 얼굴이 노출될 경우 공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송사에서 본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송에 저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인터뷰 내용을 내보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초상어 등의 없이 방영되었을 경우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해당 기자나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이와는 별도로 만일 보도에서 귀하의 인터뷰 내용이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OO신문의 개인사이트 명예훼손

저는 특레넷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OO신문은 1월 16일자에 "특레넷이라는 사이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이버경찰의 수사대상"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그 내용에 대해 항의를 하고 나서 신문사는 1월 31일에 지면 모퉁이 한곳에(잘 알아보지도 못함)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정정보도를 게재했는데 1월 16일자에서는 특레넷(사이트주소명기 되었음)이라는 사이트가 금품을 요구하고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였고 또 특레넷이라는 사이트가 사이버경찰청의 수사대상인 것처럼 커다란 제목을 게재해 사이트의 명예를 짓밟아 놓고 단순히 몇 글자 "특레넷은 현재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로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수사 대상도 아니고 병역기피 조장사실도 없으며 또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병무청에서도 특레넷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 하였고 사이버 수사대 담당자도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한 개인의 사이트의 대해 허위사실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해서 개인의 명예를 이렇게 짓밟아 놓고 지프라이터 크기만 하게 현재는 수사사실이 없음이라 보도하면 다면책이 되는 건가요?



특정 인터넷 사이트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달리 피해를 일으켰고, 후에 정정보도가 게재되었으나 충분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사이트의 운영자는 저희 중재위원회에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관련자가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 기사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동 S아파트에서 김모(47·여) 씨가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을 아들 한모(25)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4년여 전 남편과 사별했으며, 2명의 자식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을 경우, (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만, 예로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소지역과 성별, 성씨, 연령, 가족사항 등으로 당사자 및 관련자의 주변사람들은 보도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남겨진 유족 및 고인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사칭한 기자의 질문으로 곤욕을 치렀으며, 분명히 “기사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고, 기자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청을 통한 자료 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이미 나간 기사의 경우 삭제요청 및 보도중지요청이 가능하지요. 피해보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 사고의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된 것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될 경우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사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면 저희 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의 삭제 등은 언론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신문의 횡포...

신문에 사전동의도 없이 제 실명과 정확한 주소, 나이까지 공개되었으며, 사실과 전혀 다른,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스러운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입니다. 해당 기사는 이미 형사 고발한 상태이고, 신문사에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인데, 제가 받은 모욕적인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문유포 하루 전에 기사내용이 인터넷상에 올라감으로서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재위원회에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내용의 진위여부가 아닌 실명의 공개 등에 의한 피해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저희 위원회가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 해당 신문사나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로 인한 피해의 범위

안녕하세요? 신문사의 오보기사 게재로 명예가 실추된 사람입니다. 중재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을 적시하라는 것은 피해의 범위나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요?

계량화될 수 없는 피해는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심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낀다는 수준으로 기술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아마 '중재신청 이유' 중에서 신청인이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부분에 해당 거래 상각됩니다. 이는 중재신청인이 실제로 해당 보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기술하는 것으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회사의 경우 금전적인 손실이 있거나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 주시면 된 것입니다. □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자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서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

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료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

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

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불복절차) ① 반론보

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

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 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

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 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법

제어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들,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혐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찾아가기: <http://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비용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드립니다.
- 언론중재 신청기간은 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청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14일(직권 중재결정의 경우 21일) 이내에 중재를 해 드립니다.
-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국 15개 중재부)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02)397-3000, 3010, 3100

<http://www.pac.or.kr>